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 5.



해양수산부



### < 일러두기 >

- 본 관리계획(도면포함)에 표기된 해양공간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역의 해양용도구역 등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관리계획의 도면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행정구역의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고, 어업권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 등 「해양공간계획법」의 소관사항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목 차 ●●●

<b>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b> .....	<b>3</b>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2. 목적 및 성격 .....	4
1) 계획의 목적 .....	4
2) 계획의 성격 .....	4
3. 범위 .....	5
1) 시간적 범위 .....	5
2) 내용적 범위 .....	5
3) 공간적 범위 .....	6
4. 수립 절차 .....	7
5. 추진 경과 .....	8
<b>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b> .....	<b>11</b>
1. 환경적·생태적 특성 .....	11
1) 조석 및 조류 .....	11
2) 해안선 및 연안습지 .....	11
3) 유·무인도서 .....	12
4) 보호구역 지정현황 .....	13
5) 특별관리해역 .....	13
6) 해양생태계 현황 .....	14
7) 해양수질 현황 .....	16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	18
1) 인구 .....	18
2) 사업체수 .....	19
3) 수산 .....	21
4) 바다골재 및 광업권 .....	23
5) 해양관광 .....	25

6) 항만·항행 .....	27
7) 군사활동 .....	35
8) 공유수면 점용·사용 .....	36
9) 안전관리 .....	37
<b>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b>	<b>38</b>
1) 수요 조사 개요 .....	38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	41
<b>4. 해양공간관리 현안 .....</b>	<b>52</b>
1) 일반주민 설문조사 .....	52
<b>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b>	<b>65</b>
<b>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b>	<b>71</b>
1. 해양공간특성평가 .....	71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	71
2) 기초자료 조사·수집 .....	73
3) 평가항목 .....	75
4) 해양공간특성평가 .....	77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	88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101
1) 어업활동보호구역 .....	104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111
3) 해양관광구역 .....	115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118
5) 연구·교육보전구역 .....	123
6) 항만·항행구역 .....	124
7) 군사활동구역 .....	128
8) 안전관리구역 .....	129
9) 에너지개발구역 .....	131
<b>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b>	<b>137</b>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37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	139

1)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19.06.03) .....	139
2) 울산시청 담당자 제2차 업무협의회('19.06.14) .....	140
3) 울산수협, 울산시청 담당자 업무협의회('19.11.22) .....	140
4)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19.12.23) .....	141
5)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20.02.14) .....	142
6)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20.11.13) .....	143
7)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21.03.05) .....	144
8)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21.06.07) .....	145
9) 울산 제1차 지역협의회('21.07.16) .....	146
10) 울산시 제2차 지역협의회('21.09.28-10.05) .....	147
<b>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b>	<b>148</b>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	148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	149
<b>부 록 : 1. 울산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수요 .....</b>	<b>155</b>
2.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	157
3.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	169
4. 울산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결과 .....	171
5.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	173
6. 울산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	175
<b>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설명서 .....</b>	<b>177</b>
<b>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도 .....</b>	<b>186</b>

## 표 목 차

〈표 2-1〉 울산광역시 자연·인공 해안선 길이 현황(2021년) .....	12
〈표 2-2〉 울산광역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	12
〈표 2-3〉 울산 해역의 해양환경(COD, DO, TN, TP) 현황(2011-2020 평균값) .....	17
〈표 2-4〉 울산연안 인구분포 및 변화 .....	18
〈표 2-5〉 울산연안 사업체 현황 .....	20
〈표 2-6〉 전국 및 울산광역시 어업생산량 비교 .....	21
〈표 2-7〉 울산연안 어항 현황 .....	22
〈표 2-8〉 어촌정주어항현황 .....	22
〈표 2-9〉 울산 소규모어항 .....	22
〈표 2-10〉 울산 인공어초 시설 현황 .....	23
〈표 2-11〉 울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	23
〈표 2-12〉 울산연안 광업권 분포 및 현황 .....	24
〈표 2-13〉 울산연안 광업권·채굴권 설정 현황 .....	24
〈표 2-14〉 울산연안 해수욕장 현황 .....	25
〈표 2-15〉 관광지 및 방문 관광객 현황 .....	25
〈표 2-16〉 울산연안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26
〈표 2-17〉 울산연안 어촌체험마을 현황 .....	26
〈표 2-18〉 울산연안 유어장 현황 .....	27
〈표 2-19〉 울산연안 해안누리길 현황 .....	27
〈표 2-20〉 울산 주변 해역 항만 현황 (2020년) .....	27
〈표 2-21〉 울산항 물동량 및 증가율 .....	28
〈표 2-22〉 울산 항만별 선박 입출항 현황(2017~2020) .....	28
〈표 2-23〉 울산권 컨테이너 처리 실적 .....	29
〈표 2-24〉 울산항 항만 현황 .....	29
〈표 2-25〉 울산 신항만 현황 .....	32
〈표 2-26〉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	36
〈표 2-27〉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	37
〈표 2-28〉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	39
〈표 2-29〉 울산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구역) .....	40
〈표 2-30〉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현황 .....	41
〈표 2-31〉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기능구 지정 현황 .....	41
〈표 2-32〉 울산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	47

〈표 2-33〉 울산연안 해역이용협의 실적 현황 .....	48
〈표 2-34〉 울산항 개발 계획 .....	48
〈표 2-35〉 울산신항 시설 개발계획 .....	49
〈표 2-36〉 해양공간 이용 관광개발 계획 .....	50
〈표 2-37〉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구축계획 .....	51
〈표 3-1〉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	73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	76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	89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	90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	94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	94
〈표 3-7〉 항만·항행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	95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	97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	98
〈표 3-10〉 해양관광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	99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	99
〈표 3-12〉 울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	101
〈표 3-13〉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	110
〈표 3-14〉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	114
〈표 3-15〉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	118
〈표 3-16〉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	121
〈표 3-17〉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	127
〈표 4-1〉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	139
〈표 4-2〉 울산시청 담당자 제2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	140
〈표 4-3〉 울산수협, 울산시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	141
〈표 4-4〉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	141
〈표 4-5〉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	142
〈표 4-6〉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	143
〈표 4-7〉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	144
〈표 4-8〉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	145
〈표 4-9〉 울산시 제1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	146
〈표 4-10〉 울산 제2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	147
〈표 4-11〉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	150
〈표 4-12〉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	151

〈부록 표 1-1〉 울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	155
〈부록 표 1-2〉 울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구역) .....	156
〈부록 표 3-1〉 2021년도 울산 지역협의회 위원(기준 : 2021년 10월 26일) .....	169
〈부록 표 4-1〉 제1차 울산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71
〈부록 표 4-2〉 제2차 울산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72
〈부록 표 5-1〉 공청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73
〈부록 표 5-2〉 관계기관 협의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74
〈부록 표 6-1〉 울산 지역위원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75

# 그림 목 차

<그림 1-1>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 6

<그림 1-2> 관리계획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 7

<그림 2-1> 울주 목도 상륙수립 지정 현황 ..... 13

<그림 2-2> 울산 특별관리해역 ..... 14

<그림 2-3> 울산연안 인구분포 및 변화 ..... 19

<그림 2-4> 전국 및 울산광역시 어업생산량 비교 ..... 21

<그림 2-5> 당사항마리나항 예정구역 위치도 ..... 26

<그림 2-6> 울산항 계획도 ..... 31

<그림 2-7> 울산신항 계획도 ..... 33

<그림 2-8> 울산연안 지정항로 위치도 ..... 34

<그림 2-9> 울산연안 교통안전특정해역 위치도 ..... 34

<그림 2-10> 울산연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 34

<그림 2-11> 울산연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 36

<그림 2-12>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 36

<그림 2-13>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위치도 ..... 37

<그림 2-14> 울산연안·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용도구역) ..... 40

<그림 2-15> 울산광역시 연안용도해역 지정 현황 ..... 42

<그림 2-16> 울산광역시 이용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 43

<그림 2-17> 울산광역시 특수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 44

<그림 2-18> 울산광역시 보전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 45

<그림 2-19> 울산광역시 관리연안해역 지정 현황 ..... 46

<그림 2-20> 울산연안 공유수면 매립지구 현황(좌), 매립면적 현황(우) ..... 47

<그림 2-21> 울산신항 단계별 향후 비전 ..... 49

<그림 2-22> 수산자원관리수면 ..... 51

<그림 2-23> 울산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 52

<그림 2-24> 울산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 53

<그림 2-25> 울산 바다와의 유대 정도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의견 ..... 54

<그림 2-26>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 54

<그림 2-27>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55

<그림 2-28>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 56

<그림 2-29> 지역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 56

〈그림 2-30〉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	57
〈그림 2-31〉 지역 공무원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	58
〈그림 2-32〉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해결 기여 여부 .....	58
〈그림 2-33〉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의 인지도 및 제도의 효율적 관리 기여 여부 .....	59
〈그림 2-34〉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의 중요도 .....	59
〈그림 2-35〉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	60
〈그림 2-36〉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갈등변화 정도 및 관리 필요성 .....	60
〈그림 2-37〉 울산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 현안 .....	61
〈그림 2-38〉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62
〈그림 2-39〉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62
〈그림 2-40〉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63
〈그림 2-41〉 울산연안 해양공간 현안 위치도 .....	64
〈그림 2-42〉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	65
〈그림 3-1〉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	71
〈그림 3-2〉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	72
〈그림 3-3〉 일반격자(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	77
〈그림 3-4〉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 .....	78
〈그림 3-5〉 울산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79
〈그림 3-6〉 울산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80
〈그림 3-7〉 울산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81
〈그림 3-8〉 울산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82
〈그림 3-9〉 울산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83
〈그림 3-10〉 울산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84
〈그림 3-11〉 울산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85
〈그림 3-12〉 울산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86
〈그림 3-13〉 울산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	87
〈그림 3-14〉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	93
〈그림 3-15〉 울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	102
〈그림 3-16〉 울산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	103
〈그림 3-17〉 어획량 분포 .....	105
〈그림 3-18〉 어선 활동 공간 .....	105
〈그림 3-19〉 특성 평가 결과 .....	105
〈그림 3-20〉 면허어업권의 1km 완충구역 .....	105
〈그림 3-21〉 어업활동보호구역 .....	105
〈그림 3-22〉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	106
〈그림 3-23〉 가자미 어획량 .....	107

〈그림 3-24〉 고등어 어획량 .....	107
〈그림 3-25〉 오징어 어획량 .....	108
〈그림 3-26〉 멸치 어획량 .....	108
〈그림 3-27〉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	109
〈그림 3-2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112
〈그림 3-29〉 광업 지적 .....	112
〈그림 3-30〉 특성평가 결과 .....	112
〈그림 3-3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	114
〈그림 3-32〉 해양관광 낚시 활동 현황 .....	115
〈그림 3-33〉 특성평가 결과 .....	116
〈그림 3-34〉 해양관광구역 .....	116
〈그림 3-35〉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	117
〈그림 3-36〉 해양생물다양성 지수 등 .....	119
〈그림 3-37〉 특성평가 결과 .....	119
〈그림 3-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119
〈그림 3-39〉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	121
〈그림 3-40〉 영해기점 .....	123
〈그림 3-41〉 해양관측부이 .....	123
〈그림 3-42〉 고래 출현지점 .....	123
〈그림 3-43〉 특성평가 결과 .....	123
〈그림 3-44〉 연구·교육보전구역 .....	123
〈그림 3-45〉 울산항 및 신항, 항로 등 .....	125
〈그림 3-46〉 GICOMS 데이터를 활용한 화물선(상), 탱크선(하) 밀집 공간 .....	125
〈그림 3-47〉 특성평가 결과 .....	125
〈그림 3-48〉 항만·항행구역 .....	125
〈그림 3-49〉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	127
〈그림 3-50〉 해상사격 훈련구역 .....	128
〈그림 3-51〉 특성평가 결과 .....	128
〈그림 3-52〉 군사활동구역 .....	128
〈그림 3-53〉 낚시어선과 대형선박 중첩지역 .....	130
〈그림 3-54〉 사고이력 현황 .....	130
〈그림 3-55〉 특성평가 결과 .....	130
〈그림 3-56〉 안전관리구역 .....	130
〈그림 3-57〉 특성평가 결과 .....	131
〈그림 3-58〉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산업시설구 .....	131
〈그림 3-59〉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발전사업허가 변경 .....	132

〈그림 4-1〉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 .....	140
〈그림 4-2〉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 .....	142
〈그림 4-3〉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 .....	143
〈그림 4-4〉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 .....	144
〈그림 4-5〉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 .....	145
〈그림 4-6〉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 .....	146
〈그림 4-7〉 울산시 제1차 지역협의회 .....	147



## 제1장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성격
3. 범위
4. 수립 절차
5. 추진 경과





## 제1장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이용개발의 다양화, 부처별 해양공간 선점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해양생태계 가치저하 및 이용-보전 간, 이용 간 갈등 심화
  - 해양자원은 공유재로 비합리적 입지선정은 타분야 활용 가능성 훼손
  - 바다골재 채취와 어민과 갈등, 양식어장과 선박 통행·해양에너지 간 갈등, 어로 활동과 해양레저 활동 간 충돌 등 해양공간 이용의 갈등 광범위
- 해양생태계의 가치, 개발잠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핵심활동과 관리방향을 사전 설정하는 실효적 계획체제 도입 필요
  - '17년 EU 해양수산국과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이하 "MSP")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MSP 목표(전 세계 해양의 1/3, 2025년까지 MSP 통해 관리)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 우리나라도 '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도입·시행
- 「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공간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명시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관리
    - 해양수산부 장관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시·도지사 :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
  - 다만,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5조)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제 등 해양공간의 객관적 평가 수단 도입 및 적용 필요
  - 해양용도구역제 도입으로 해양공간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핵심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보호
  -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2. 목적 및 성격

### 1) 계획의 목적

- 해양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 및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의 수립
-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연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의 장 마련

### 2)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임.
- 실천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임.
- 협력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민·관·산·학·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협력계획임.

### 3.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수시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
    - 향후 발생하는 해양공간에 대한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 \* 「해양공간계획법」제7조제7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2) 내용적 범위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
-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3항
    -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3) 공간적 범위

○ 대상 해양공간은 영해 1,376.6km<sup>2</sup>

\* 면적은 관할해역 주장 범위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해역이 포함되는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도면)과는 다를 수 있음.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12.6km<sup>2</sup>)
- 울산광역시 : 영해 중 항만구역 제외 해양공간(1,264.0km<sup>2</sup>)

〈그림 1-1〉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 4. 수립 절차

□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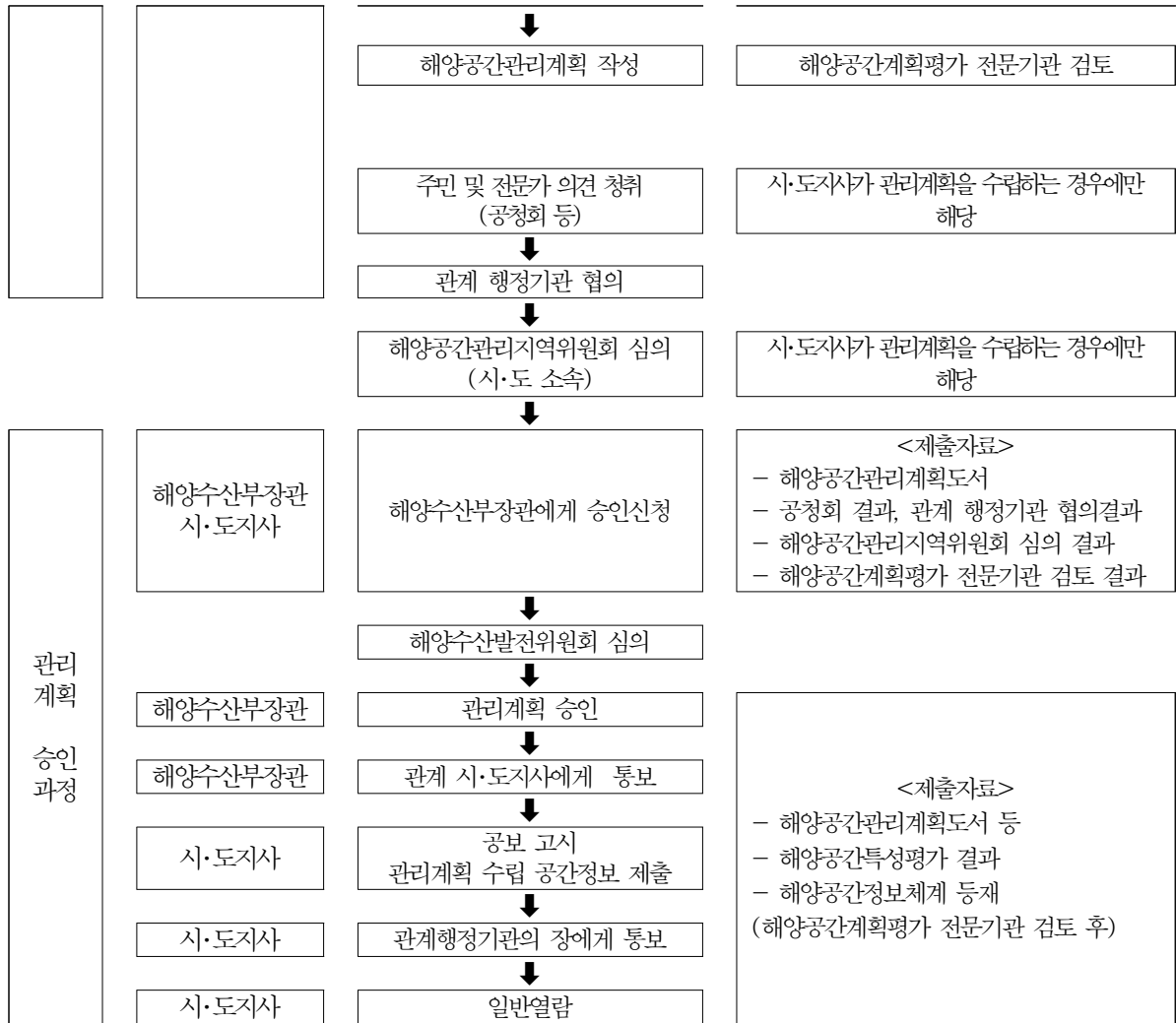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 마련
- 관리계획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 관리계획의 승인 과정

- 이후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소속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게 관리계획의 승인을 신청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승인

〈그림 1-2〉 관리계획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구분	주체	세부 절차	비고
관리 계획 작성 과정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사전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작성팀 구성과 작업 일정
		↓	
		이해관계자 분석 참여·협력 기반 마련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설정
		↓	
		대상 해양공간 범위 설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존 현황 분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미래 수요 분석</div> </div>	해양공간관리 현안 확인 핵심활동 분석 및 지도화 중요 생태지역 분석 및 지도화 향후계획 및 정책수요 분석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및 검토		
↓			
해양용도구역 구획			
↓			
해양용도구역 및 핵심 해양 활동 상충·조정			
↓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및 검토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 5. 추진 경과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착수 : '19. 3월
- 울산시청, 시·군구 담당자, 이해관계자 설명 및 의견수렴(총 8회) : '19. 6월(2회), 11월, 12월, '20. 2월, '11월, '21. 3월, '21. 6월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 마련 : '19. 12월
-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8월
-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총 2회) : '21. 7월, 9~10월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열람 : '21.10~11월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 '21.11월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역위원회 심의 : '22.3~4월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 '22.5월



## 제2장

#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 해양공간관리 현안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제2장 /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 1. 환경적·생태적 특성

#### 1) 조석 및 조류

- 울산 해안은 유·무인도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해안선이 상대적으로 단조롭게 형성
  - 다만, 울산 남구 주변의 태화강과 두암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곳에는 하구와 만이 존재
  - 황해와 다르게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며, 동해분지 바닥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인 냉수괴가 존재
- 조석은 황해, 남해보다 작게 나타나며, 간석지의 면적은 미미
  - 조석특성은 반일주조형으로 통상적으로 1일 2회조이고, 매우 작은 일조부등을 보유
- 남해 동부 해역은 조류 타원의 반장축과 반단축의 차이가 매우 작은 왕복성 조류가 주를 이루지만, 일부 해역에서는 유속이 약하며 복잡하게 발현
  - 창조류는 대체로 서향 또는 북서향, 낙조류는 남향 또는 남동향

#### 2) 해안선 및 연안습지

- 울산광역시의 해안선 길이는 총 150.23km이며, 전국 해안선의 0.98%를 차지
  - 연안 구·군별로는 자체별로는 울주군(53.89km), 동구(45.19km), 남구(33.05km), 북구(18.10km)순으로 해안선이 분포
  - 인공해안선의 길이는 총 98.36km로 울산 신항만 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체 해안선의 65.5%를 차지
    - 전국 평균(35.7%)에 비해 높은 인공화 경향을 보임
    - 연안 구·군별로는 울주군(33.11km), 동구(31.17km), 남구(27.71km), 북구(6.37km) 순으로 인공해안선이 분포
    - 인공해안선의 비율은 남구(83.8%), 동구(69.0%), 울주군(61.4%) 순으로 높으며, 북구(35.2%)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
    - 반면, 자연해안선 비율은 전국 평균(64.3%)에 비해 낮은 비율(34.5%)을 보임

〈표 2-1〉 울산광역시 자연·인공 해안선 길이 현황(2021년)

(단위 : km, %)

구분	총계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소계	비율	소계	비율
전국	15,281.7	9,821.8	64.3	5,459.9	35.7
울산광역시 전체	150.2	51.9	34.5	98.4	65.5
남구	33.1	5.3	16.2	27.7	83.8
동구	45.2	14.0	31.0	31.2	69.0
북구	18.1	11.7	64.8	6.4	35.2
울주군	53.9	20.8	38.6	33.1	61.4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21, 해안선 통계 공표 자료

### 3) 유·무인도서

□ 울산광역시에 유인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무인도서가 총 4개 존재<sup>1)</sup>

- 총 4개의 무인도서 모두에 관리유형이 지정되어 있으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중 절대·준보전 유형이 50.0%, 이용·개발가능 유형이 50.0%를 차지
- 면적을 기준으로 절대·준보전 유형이 88.5%,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11.5%
- 명선도, 목도, 처용암은 공유지이며, 선암은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도서
  - 울주군에 존재하는 목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처용암은 울산광역시 기념물에 해당

〈표 2-2〉 울산광역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순번	무인도	시군구	지번	토지소유현황	관리유형	면적(m <sup>2</sup> )	지정고시일
1	명선도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산60	공유지	이용가능	6,744	2014.10.08.
2	목도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공유지	절대보존	15,074	2014.10.08.
3	처용암	남구	황성동 668-1	공유지	준보전	622	2014.10.08.
4	선암	동구	일산동	미등록	이용가능	미등록	2014.10.08.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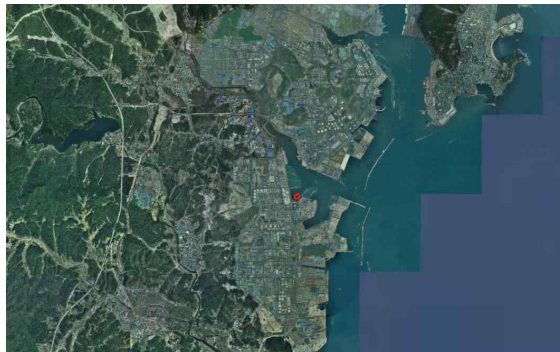
1) 해양수산부, 202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 4) 보호구역 지정현황

##### □ 울산의 해상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총 2개소

- 울주 목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65호, 1962년 지정)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 13번지, 면적 15,074㎡,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있는 유일한 상록수림으로,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주로 후박나무와 동백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해안 식생으로 갯메꽃군락, 반들가시나무 군락 등이 군집함
- 귀신고래 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6호, 1962년 지정)
  -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에 해당
  - 해면의 위치는 동해안일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미지정

〈그림 2-1〉 울주 목도 상록수림 지정 현황



자료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go.kr/lxmap/index.do>)

#### 5) 특별관리해역

##### □ 울산연안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해역 지정

- 지정면적은 총 200.85㎢로, 해역 56.56㎢, 육역 144.29㎢가 해당
  - 인근 행정구역은 울산광역시 동구, 중구, 남구,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청도군
  - 유입하천은 태화강, 회야강 외 15여개 하천
- 과거 태화강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
  -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복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수질 개선 등 달성
  -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8년 ~ 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주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를 관리<sup>2)</sup>

〈그림 2-2〉 울산 특별관리해역



자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https://ulsan.mof.go.kr/ko/page.do?menuIdx=821>)

## 6) 해양생태계 현황

### □ 해양생태계

- 우리나라 해역은 5개의 생태구역으로 구분가능하며, 울산 인근 해역은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에 해당3)
-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은 한반도 유일하게 한·난류가 교차하여 생물 다양성이 높은 주요 수산자원 서식·회유 해역으로, 관리 목표는 한반도 연안·해양생물 종 유지·관리를 위한 산란·성육장 보전·관리
-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은 북으로 강원고성에서 남으로 부산 남구까지 연결한 축으로, 대략 468.2km에 해당
- 거점 해역은 조도 주변해역, 용승 해역, 한·난류 교차해역이 해당

2) 해양수산부, 2018,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3) 해양환경공단, 2021,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통합)

## □ 해양생물다양성

- 울산지역 갯벌의 저서동물 출현 현황, 염생식물 군락 분포, 바닷새 서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sup>4)</sup>
  - 2015~2020년 울산 지역 갯벌에서의 저서동물 평균 출현 종수는 2종이며, 평균 출현 개체수는 54개체, 평균 생체량은  $0.2g \cdot wet \cdot wt \cdot m^{-2}$
  - 2017-2018년 울산지역 갯벌에서는  $1,324m^2$ 의 군락면적에서 16종의 염생식물이 출현 하였으나, 2019-2020년  $1,541m^2$ 의 면적에서 23종의 염생식물이 출현하여 출현 종수와 군락 면적이 증가
  - 동해권역의 바닷새 종수는 31종(2017년)에서 50종(2020년), 개체수는 11,605마리 (2017년)에서 15,123마리(2020년)로 증가하였으며, 3종의 법정보호종이 출현(큰기러기, 큰고니, 알락꼬리마도요)
- 동해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현황은 다음과 같음.<sup>5)</sup>
  - 2019-2020년의 동해해역의 미생물 생물량은 춘계 평균  $552.398cells \cdot mL^{-1}$ , 하계  $725.556cells \cdot mL^{-1}$ 으로, 2017-2018년에 비해 감소
  - 동해해역의 춘계 식물플랑크톤 개체수는  $3 \sim 464 cells \cdot mL^{-1}$ , 하계  $4 \sim 400 cells \cdot mL^{-1}$ 의 범위가 관찰(2015-2020년)
  - 동해해역의 춘계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33 \sim 3,927 ind. \cdot m^{-3}$ , 하계  $72 \sim 7,511 ind. \cdot m^{-3}$ 의 범위가 관찰(2015-2020년)
  - 울산해역의 현종지수(Whittaker's d)<sup>6)</sup>에 따른 대형저서동물 출현 종수는 26.3으로 전 해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서식밀도 또한  $643 \pm 603 ind. \cdot m^{-2}$ 로 낮은 밀도가 관찰(2015-2020년)
  - 동해 해역에서 어란은 춘계 37종, 하계 33종 관찰되며, 평균 출현량은 춘계  $91.9 \pm 162.8 ind. \cdot 100m^{-3}$ , 하계  $181.3 \pm 579.5 ind. \cdot 100m^{-3}$ 가 관찰(2015-2020년)
  - 우점하는 자치어종은 춘계 도화망둑, 하계 멸치로, 평균 출현량은 춘계  $1.9 \pm 9.2 ind. \cdot 100m^{-3}$ , 하계  $9.1 \pm 47.7 ind. \cdot 100m^{-3}$ 가 출현(2015-2020년)

4) 해양환경공단, 2021,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통합)

5) 해양환경공단, 2021,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 - 연근해생태계

6) 현종지수(Whittaker's d 지수)는 동일 채집면적에 대한 종수를 의미

### 7) 해양수질 현황

- 2020년 울산해역의 WQI<sup>7)</sup>는 I~III등급으로, 계절에 따른 편차가 관찰<sup>8)</sup>
  - 전반적으로 겨울(2월)과 가을(11월)에 수질이 좋으며, 봄(5월)과 여름(8월)에 수질이 좋지 않음.
  - 정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수질이 가장 좋은 울산3, 온산연안2, 온산연안3은 I등급이 2개씩 존재하는 반면,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울산 4는 III등급이 2개 관찰
- 2011-2020년의 울산 해역 수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sup>9)</sup>
  - DO<sup>10)</sup> 농도는 표층 7.9~8.7 mg/L, 저층 7.1~7.9 mg/L, COD<sup>11)</sup> 농도는 표층 1.0~1.7 mg/L, 저층 0.9~1.3 mg/L, TN<sup>12)</sup> 농도는 표층 191.1~736.6 µg/L, 저층 249.4~400.9 µg/L, TP<sup>13)</sup> 농도는 표층 19.3~59.2 µg/L, 저층 23.9~46.3 µg/L의 범위를 보임
  - 울산 해역의 해양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항 내측의 해양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며 외해는 양호한 수준
  - TN과 TP는 울산항 인근에서 높은 값을 보이며, COD 또한 높은 수치이나 2.0 mg/L 미만
  - DO는 전체 해역의 표층과 저층에서 모두 7 mg/L 이상으로 매우 양호

7) 해수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는 우리나라 종합적인 해역수질상태를 알기 위해 해역을 해류, 조석, 탁도, 수심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의 생태구(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 생태구)로 구분하고 부영양화의 원인항목(용존 무기질소(DIN), 용존 무기인(DIP)과 일차반응항목(클로로필(Chl-a), 투명도(SD))과 이차반응항목(저층 용존산소 포화도(DO))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으로 계산

※ 생태계기반 해수수질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등급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I(매우 좋음)	23 이하
II(좋음)	24 ~ 33
III(보통)	34 ~ 46
IV(나쁨)	47 ~ 59
V(아주 나쁨)	60 이상

8) 해양환경공단, 2021, 2020년 한국해양환경 조사연보(울산연안 1-5, 온산연안 1-3)

9) 해양환경측정망 조사정점 중 울산연안에 해당하는 정점은 울산항 H01, 울산1~12, 온산1~9로 총 22개로, 지난 10년간(2011년~2020년)의 자료가 해당하는 울산항 H01, 울산 1~5, 온산 1~3으로 총 9개를 분석

10) 용존산소(DO)는 물 속에 용해해 있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으로 유기물에 의하여 오염된 수역일수록 낮은 농도를 보임

11)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l로 나타낸 것임

12) 총질소(TN)는 유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및 질산성 질소 등 수중에 포함된 모든 질소화합물의 총량으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유입에 따라 증가함

13) 총인(TP)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함

〈표 2-3〉 울산 해역의 해양환경(COD, DO, TN, TP) 현황(2011-2020 평균값)

측정망 정점	DO		COD		TN		TP		비고
	mg/L				μg/L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울산항 H01	7.9	7.1	1.7	1.3	736.6	400.9	59.2	46.3	항만환경측정망
울산1	8.1	7.2	1.0	0.9	191.1	285.5	19.3	36.1	연안해양환경측정망
울산2	8.1	7.3	1.1	1.0	201.3	271.5	20.2	31.5	하천영향및반폐쇄성 해양환경측정망
울산3	8.7	7.8	1.3	1.0	347.4	249.4	31.6	25.3	하천영향및반폐쇄성 해양환경측정망
울산4	7.9	7.2	1.6	1.2	622.3	385.9	56.8	41.6	하천영향및반폐쇄성 해양환경측정망
울산5	8.5	7.9	1.5	1.2	432.9	298.2	39.3	29.6	하천영향및반폐쇄성 해양환경측정망
온산1	8.5	7.7	1.4	1.2	403.7	294.8	33.3	28.1	하천영향및반폐쇄성 해양환경측정망
온산2	8.1	7.9	1.1	1.1	227.0	253.3	21.8	23.9	하천영향및반폐쇄성 해양환경측정망
온산3	8.2	7.5	1.0	1.0	199.0	325.9	18.4	39.8	연안해양환경측정망

주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측정 자료가 있는 정점만 활용

자료 : 해양환경측정망(2011-2020) (<https://www.meis.go.kr/mei/observe/port.do>)

##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 1) 인구

- 울산연안의 인구는 2020년 기준 935천명으로, 지난 11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0%
  - 2020년 울산연안은 전국 인구의 1.80%인 935천명이 거주하며, 2009년 885천명에 비해 약 0.5% 증가
    - 울산연안 중 북구와 울주군의 인구는 지난 11년 동안 각각 2.30%, 1.47%로 증가했지만, 동구와 남구의 인구수는 각각 -0.76%, -0.52% 감소
  - 울산연안 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0.50%로, 전국 연평균증가율 0.37%보다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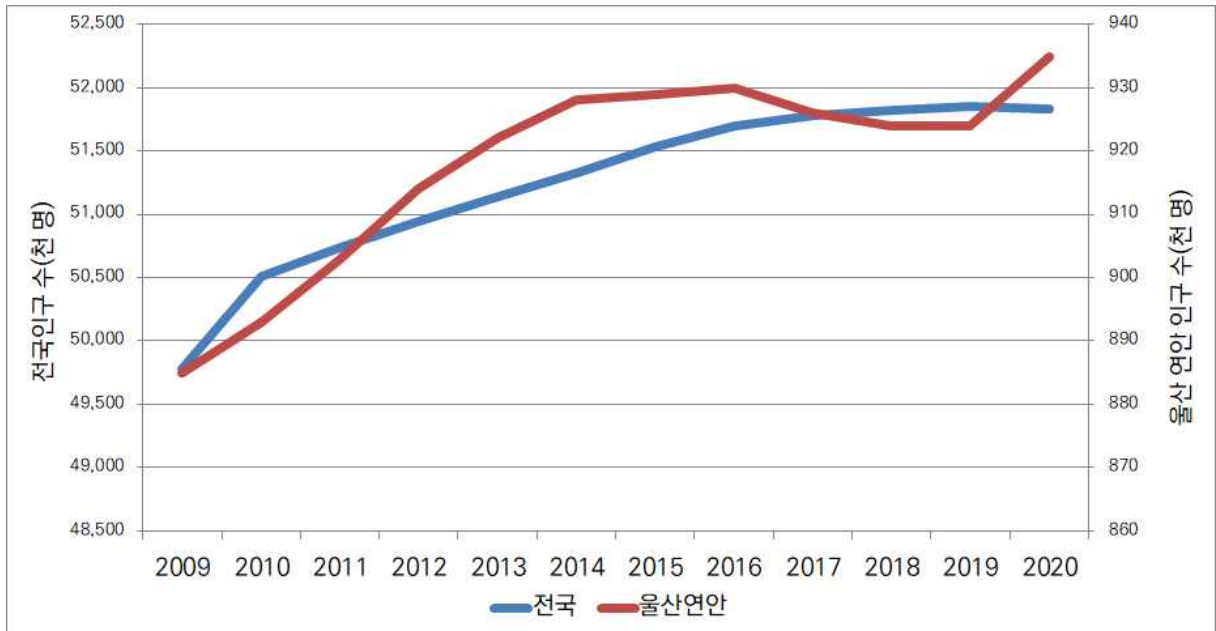
〈표 2-4〉 울산연안 인구분포 및 변화

(단위 : 천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인구 증가율
전국	49,773	50,516	50,734	50,948	51,141	51,328	51,529	51,696	51,779	51,826	51,850	51,829	0.37
연안인구	12,393	13,145	13,265	13,380	13,485	13,575	13,703	13,786	13,874	13,991	14,071	14,161	1.22
울산광역시	1,115	1,126	1,135	1,147	1,156	1,166	1,174	1,172	1,165	1,156	1,148	1,154	0.31
울산연안	885	893	903	914	922	928	929	930	926	924	924	935	0.50
남구	344	344	344	347	349	348	344	341	335	331	324	325	-0.52
동구	174	171	172	175	178	177	175	175	170	165	160	160	-0.76
북구	172	177	183	184	186	189	191	195	201	206	218	221	2.30
울주군	195	201	205	208	209	214	219	219	221	222	223	229	1.47
울산연안/ 전국	1.78	1.77	1.78	1.79	1.80	1.81	1.80	1.80	1.79	1.78	1.78	1.80	-

자료 : 통계청, 2009~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3〉 울산연안 인구분포 및 변화



자료 : 통계청, 2009~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 2) 사업체수

- 울산연안의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70,130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1.7%를 차지
  - 울산연안의 산업별 사업체수 구성을 전국 사업체수 구성과 비교해보면 숙박 및 음식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2.0%)를 보였으며, 농·임·어업(0.8%)에서 가장 낮은 수치
  - 2009년과 2019년의 사업체수 변화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역과 산업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울주군의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동구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경향
  - 전국 대비 울산연안의 비중 변화에서는 대부분의 산업이 증가하였고, 특히 농·임·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증가가 높게 관찰

〈표 2-5〉 울산연안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 산업		광업		기타		농·임·어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제조업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전국	3,293,558	4,176,549	1,840	1,776	1,135,157	1,506,168	2,302	4,522	861,736	1,028,323	628,078	785,706	344,071	409,288	320,374	440,766	
울산광역시	68,654	87,054	13	19	24,466	32,114	13	36	17,103	20,146	15,830	19,377	6,354	7,633	4,875	7,729	
울산연안	54,043	70,130	13	17	19,458	25,569	11	34	12,881	15,918	13,035	16,048	4,627	5,758	4,018	6,786	
울산	남구	26,563	31,770	4	4	10,335	12,650	2	7	6,643	7,762	6,193	7,040	2,173	2,645	1,213	1,662
	동구	8,368	8,936	-	-	2,825	3,077	2	2	2,189	2,060	2,461	2,570	489	670	402	557
	북구	8,319	12,316	1	1	2,777	4,265	1	4	1,874	2,735	1,690	2,569	888	1,041	1,088	1,701
	울주군	10,793	17,108	8	12	3,521	5,577	6	21	2,175	3,361	2,691	3,869	1,077	1,402	1,315	2,866
울산연안/전국	1.6	1.7	0.7	1.0	1.7	1.7	0.5	0.8	1.5	1.5	2.1	2.0	1.3	1.4	1.3	1.5	

자료 : 통계청, 2009-2019, 전국사업체조사; 울산광역시, 2009-2019, 사업체조사

## 3) 수산

- '20년 어업 생산량은 19천 톤으로 전국 어업 생산량(3,240천 톤)의 0.57%를 차지
  - 전국의 어업생산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울산은 2013년에 30,658톤으로 가장 높은 어업 생산량을 기록한 이래 계속적으로 감소

〈표 2-6〉 전국 및 울산광역시 어업생산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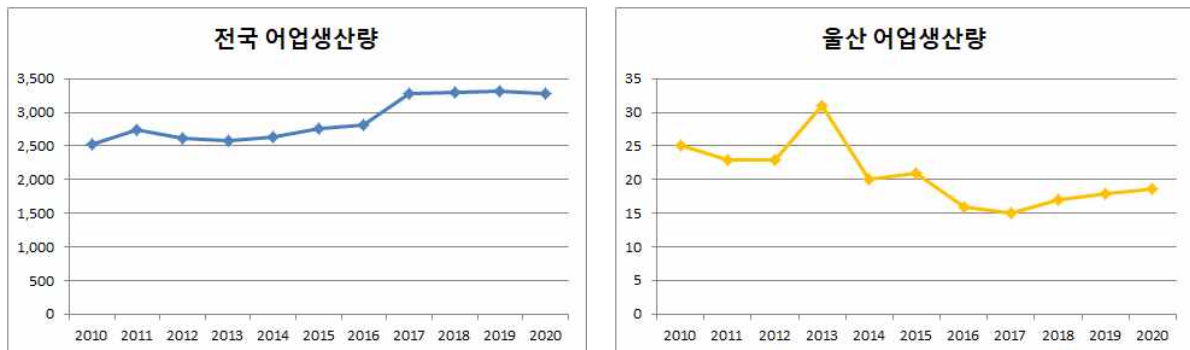
(단위 :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2,519	2,745	2,608	2,585	2,635	2,759	2,815	3,279	3,296	3,322	3,240
울산	25	23	23	31	20	21	16	15	17	18	19

자료 : 통계청, 2020, 어업생산동향

〈그림 2-4〉 전국 및 울산광역시 어업생산량 비교1

(단위 : 천 톤)



주 :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을 합한 값임  
 자료 : 통계청, 2020, 어업생산동향조사

- 울산연안의 면허어업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울산연안에 발급된 면허어업권 수는 81개, 총 면적은 1,272ha
  - 면허 건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면적은 2013년 증가한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국가어항 2개소를 포함하여 26개의 어항이 동구, 북구, 울주군에 분포
  - 국가어항 2개소를 비롯하여 지방어항 4개소, 어촌정주어항 13개소 및 소규모어항 7개소 등 총 26개 어항이 지정

- 울산 해역에 어항은 북구, 동구, 울주군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북구(10개소), 동구 및 울주군 각각 8개소 존재
- 국가어항은 울산 동구(방어진항)와 북구(정자항)에 지정되어 있음.
- 지방어항은 동구(주전항) 1개, 북구(당사항) 1개, 울주군 2개(나사항, 신암항) 존재

〈표 2-7〉 울산연안 어항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합계	비율
	연안	도서	소계					
동구	1	0	1	1	3	3	8	30.8
북구	1	0	1	1	4	4	10	38.5
울주군	0	0	0	2	6	0	8	30.8
합계	2	0	2	4	13	7	26	100.0
	7.7	0.0	7.7	15.4	50.0	26.9	100	

자료 : 울산광역시, 2021, 내부자료

〈표 2-8〉 어촌정주어항현황

(단위 : 개소)

울산광역시 군·구	어항수	어촌정주어항
동구	3	일산항, 남·상진항, 화암항
북구	4	굼바우항, 신명항, 어물항, 제전항
울주군	6	강양항, 대송항, 송정항, 신리항, 진하항, 평동항
합계	13	

자료 : 울산광역시, 2021, 내부자료

〈표 2-9〉 울산 소규모어항

(단위 : 개소)

울산광역시 군·구	어항수	소규모어항
동구	3	보밀항, 큰불항, 하리항
북구	4	우가항, 윗우가항, 판지항, 화암항
합계	7	

자료 : 울산광역시, 2021, 내부자료

- 울산연안에는 총 2,642개(20,473ha)의 인공어초 시설이 설치
  - 인공어초 시설은 남구를 제외한 동구, 북구, 중구에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이 북구에 집중

〈표 2-10〉 울산 인공어초 시설 현황

(단위 : 개, ha, 백만원)

구분		설치량	설치면적
울산	동구	648	6,104
	북구	1,674	12,626
	울주군	320	1,743
합계		2,642	20,473

주 : 1971~2019 총 설치비(군구별 확인 불가)는 17,325백만원, 2020 설치비는 북구에서 559백만원  
 자료 : 한국수자원공단, 1971~2019, 인공어초설치통계; 울산광역시, 2020, 지자체 내부자료

- 울산연안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1개소가 지정·관리 중이며 총 면적은 24ha
  - 동구 주전동에 24ha 규모의 바다숲이 설치되어 운영 중

〈표 2-11〉 울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단위 : ha)

울산광역시 군·구	위 치	개소	면적	지정사유	비고
동구	주전동	1	24	바다숲	최초지정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2020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4) 바다골재 및 광업권

- 울산에는 총 10개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 채굴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탐사권은 부재
  - 건수로는 광업권 5건, 채굴권은 5건이 설정되어 있으며, 광업권이 설정된 면적은 553ha, 채굴권은 475ha
  - 울산연안의 경우 울주군과 북구에 광업권 및 채굴권이 등록된 광구 2개가 존재

〈표 2-12〉 울산연안 광업권 분포 및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건수				면적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합계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합계
울산	5	0	5	10	553	0	475	1,02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1, 광업등록현황

〈표 2-13〉 울산연안 광업권·채굴권 설정 현황

지적명	지적호수	등록번호	면적(ha)	존속기간	소재지	비고
방어진	105	077124	87	2008.07.08.~2028.07.07.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광업권(고령토)
방어진	106	077125	70	2008.07.08.~2028.07.07.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광업권(고령토)
방어진	116	077126	70	2008.07.08.~2028.07.07.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광업권(고령토)
울산	102	079432	265	2011.04.15.~2031.04.14.	울산광역시 북구	광업권(철광)
울산	103	079433	61	2011.04.15.~2031.04.14.	울산광역시 북구	광업권(철광)
방어진	098	100217	70	2016.04.02.~2036.04.01.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채굴권(고령토)
방어진	098	100745	70	2021.04.16.~2041.04.15.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채굴권(고령토)
울산	042	067018	140	2018.10.01.~2028.09.30.	울산시 북구	채굴권(고령토)
울산	143	071584	139	2021.01.12.~2041.01.11.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채굴권(고령토)
울산	144	071760	56	2021.04.08.~2041.04.07.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채굴권(고령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1, 광업등록현황

## 5) 해양관광

□ 울산연안 지정 해수욕장은 2개소, 비지정 해변은 5개소가 존재

○ 진하 해수욕장이 길이 1,100m, 면적 440,000㎡로 가장 큰 규모를 보유

〈표 2-14〉 울산연안 해수욕장 현황

구분		관광지(해수욕장, 해변)		백사장	
		지정	비지정	길이(m)	면적(㎡)
울산	북구	-	신명정자 해변	미공개	-
		-	강동몽돌 해변	미공개	-
	동구	일산 해수욕장	-	850	42,500
		-	주전몽돌 해변	미공개	-
	울주군	진하 해수욕장	-	1,100	440,000
		-	나사 해변	미공개	-
-		솔개 해변	미공개	-	
합계		7개		-	

자료 : 울산광역시·해당 지자체, 2020. 지자체 내부자료; 해양수산부, 2019, 보도자료

□ 일산 해수욕장 등 9개 연안 관광지에 연간 30만 명이 방문

○ 울산연안에 위치한 7개 해수욕장 중 비지정 해수욕장을 제외한 일산 해수욕장과 진하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는 2020년 기준 16만명

○ 주용 연안·해양관광지 2개소의 2020년 기준 연간 방문객 수는 고래생태체험관이 약 11만 명,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약 3만 명

〈표 2-15〉 관광지 및 방문 관광객 현황

구분		관광지	2020년 관광객 수(만명)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113,478
	북구	당사해양낚시공원	27,806
합계		합계	141,284

자료 : 울산광역시, 2020, 지자체 내부자료

□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은 1개소

○ 운영중인 마리나항은 없으며, 북구 당사항이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

〈표 2-16〉 울산연안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구분	마리나 항만	위치	비고
북구	당사	북구 당사동 738 일원	예정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그림 2-5〉 당사항마리나항 예정구역 위치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울산연안 어촌체험마을은 총 2개소이며, 2020년 기준 체험객 수는 1,942명
  - 울산연안 어촌체험마을은 동구에 주전마을, 북구에 우가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
  - 어촌체험마을의 체험 종류로는 동구 주전 마을은 해녀체험, 배낚시체험 등이 있고, 우가 마을은 스노클링, 카누체험 등을 진행

〈표 2-17〉 울산연안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마을명	주소	2020년 체험객수(명)	체험 종류	
울 산	동구	주전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해안길 137	1,942	해녀체험, 선상낚시체험, 카누체험, 어선체험
	북구	우가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143-1	-	스노클링, 카누체험
합 계			1,942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 울산연안에는 울주군 나사리와 진하리 어촌계가 운영하는 2개소의 유어장이 지정 및 운영

○ 유어장 지정 면적은 13.7ha이고 500명이 방문하여 620만원의 이용실적

〈표 2-18〉 울산연안 유어장 현황

구분	유어장 명칭	유어장 면적(ha)	이용객(명)	이용실적(원)
울산	울주군 나사 어촌계	3.5	398	5,000,000
	울주군 진하 어촌계	10.2	102	1,200,000
합계	2	13.7	500	6,200,000

자료 : 울산광역시·해당 지자체, 2020, 지자체 내부자료

□ 울산연안에는 해안누리길 2개소가 조성되었고 총연장 9.3km

○ 해안누리길은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연장은 9.3km로 새천년로가 5.3km를 차지

〈표 2-19〉 울산연안 해안누리길 현황

구분	시군구	명칭	위치	총연장(km)	소요시간(분)
울산	울주군	새천년로	온산읍 강양면 ~ 서생면 대송리	5.3	120
	동구	대왕암길	동구 일산동 산 905 ~ 슬도 소공원	4.0	90
합계		2		9.3	210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안누리길 노선현황

## 6) 항만·항행

### (1) 항만

□ 울산 해역에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울산항 1개소가 입지

○ 울산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동구 사이 해역에 위치하고 배후지역에 발달한 석유화학 단지에서 발생하는 원유 및 석유정제제품 등 액체화물이 주요 화물로 처리되고 있음.

〈표 2-20〉 울산 주변 해역 항만 현황 (2020년)

항명	안벽길이(m)	접안능력(척)	하역능력(천톤)	야적면적(m <sup>2</sup> )
울산항	20,668	117	28,816	1,223,961

자료 : 해양수산통계시스템(2020) (<https://www.mof.go.kr/statPortal/main/portalMain.do>)

□ '20년 기준 울산항의 물동량은 187,941R/T

- '20년 물동량의 경우 '19년에 비해 7.1% 감소하였으며, 2016년이 3.4%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찰

〈표 2-21〉 울산항 물동량 및 증가율

(단위 : R/T,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물동량	196,972	191,031	191,720	190,870	197,611	202,346	202,862	202,383	187,941
증가율*	1.6	-3.1	0.4	-0.4	3.4	2.3	0.3	-0.2	-7.1

주 :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 : 해양수산통계시스템(2020) (<https://www.mof.go.kr/statPortal/main/portalMain.do>)

□ 울산항 선박 입출항 추이

- '20년 기준 울산항은 47,992척, 418,594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7년 대비 각 0.13%, 2.48% 감소한 결과
  - 입출항 선박의 감소는 외항선이 1,972척이 감소하였고 연안선은 1,782척 증가

〈표 2-22〉 울산 항만별 선박 입출항 현황(2017~2020)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항	외항선	척수	12,107	11,785	5,942	11,142
		총톤수	205,857,421	204,608,726	103,516,229	189,004,782
	연안선	척수	11,927	11,500	9,651	12,791
		총톤수	16,579,190	16,037,472	28,653,869	17,665,219
	소계 (a)	척수	24,034	23,285	15,593	23,933
		총톤수	222,436,611	220,646,198	132,170,098	206,670,001
출항	외항선	척수	12,160	11,781	5,957	11,153
		총톤수	211,910,087	208,558,718	107,500,785	194,825,260
	연안선	척수	11,988	11,598	9,742	12,906
		총톤수	17,056,078	16,555,317	28,917,402	17,099,375
	소계 (b)	척수	24,148	23,379	15,699	24,059
		총톤수	228,966,165	225,114,035	136,418,187	211,924,635
합계 (a+b)	척수	48,182	46,664	31,292	47,992	
	총톤수	451,402,776	445,760,233	268,588,285	418,594,636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전국 항만별 선박입출항현황; 해양수산개발원, 2019, 2019 해운통계요람; 해양수산통계시스템(2017-2020) (<http://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

## □ 울산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

- '20년 기준 울산항은 536천TEU를 처리하였고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

〈표 2-23〉 울산권 컨테이너 처리 실적

단위 : 천TEU

항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울산항	373	386	392	385	423	466	490	517	536

자료 : 통계청, 2018,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 실적; 해양수산개발원, 2018, 2018 해운통계요람; 해양수산통계시스템 (2017~2020) (<http://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 울산항만공사, 2020, 울산항 통계연감

□ 울산항<sup>14)</sup>

-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총 면적 116,362m<sup>2</sup> 중 수상구역의 면적은 112,946천m<sup>2</sup>

〈표 2-24〉 울산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광역시</li> <li>• 항종: 무역항(국가관리항)</li> <li>• 항만구역 : 면적 116,362천m<sup>2</sup> (수상 : 112,946천m<sup>2</sup>, 육상 : 3,416천m<sup>2</sup>)</li> </ul>					
안벽(m)	물양장(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m <sup>2</sup> )
20,668	3,018	4	8,788	-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안능력 : 116선석(유류 포함)</li> <li>• 하역능력 : 78,816천RT/년</li> </ul>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 ○ 항만육성 기본방향

- 고부가가치형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국경경쟁력 강화

\* 新북방 및 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공급사슬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

## ○ 항만기능 재정립

- 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도기능을 재정립하고 배후산업과 연계한 역할분담을 통해 항만경쟁력 강화 및 운영효율화

\* 본항의 석탄부두는 신항으로 이전 후 본항에 부족한 액체화학 부두로 기능변경

14)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 이상 파랑시 남화부두 시설물 보호 및 선박 접안 안정성 도모를 위해 남화부두 3,000DWT 2선석 중 남측 1선석을 호안으로 변경, 월파 예방을 통한 안전 정박 및 부두 시설물 피해 예방

○ 항만 운영 및 관리

- 울산본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및 향후 선박 대형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로 확장
- 울산신항 북방파제 T/S부두 접안능력 상향, T/S부두의 경우 대형선박에서 중소형 선박으로의 환적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기존 3만DWT×2선석에서 5만DWT×1선석, 3만DWT×1선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접안능력 상향
- 장생포 친수시설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3단계(599천㎡) 확충에 따른 석유·가스 화물처리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 노력
- 오일허브, LNG병커링 시설 조성 등에 따라 유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 지속 검토 및 연관 부두의 효율적 운영계획 마련
- 기타 목재, 석탄, 기타광석 부두 등 울산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지속 검토 하여 배후산업 지원

○ 항만 환경개선

- 선박배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20.1, 3.5%→0.5%)하고, 보다 강화된 연료유 기준(0.1%)이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을 지정·운영 ('20.9 정박 선박, '22.1 모든 선박)
-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도입
- 친환경 LNG병커링 사업 확대 및 지원

\* 선박연료유 내 황함유량(0.5%이하) 제한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NG병커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 지원

〈그림 2-6〉 울산항 계획도



울산항 계획 평면도(전체)



울산항 계획 평면도(본항)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 울산 신항만

○ 항만육성 기본방향

- 북방지역 에너지 물류(원유·천연가스) 거래 활성화에 대비한 동북아 오일·가스 에너지 허브 항만 구축
- 장래 남북방 루트 활성화 및 북극해 운항선박 증가에 따른 유류·가스 등 에너지 물류 거래 활성화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 구축
- 쓰나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 방파제 보강 및 항만시설 내진 강화 등 위험성 화물 보관·처리의 안전성 제고
- ECA 지정, AMP 설치, 밀폐형 하역시스템 구축, LNG 수입기지 및 벙커링 시설, 녹지대 조성 통한 지속가능형 항만 건설

〈표 2-25〉 울산 신항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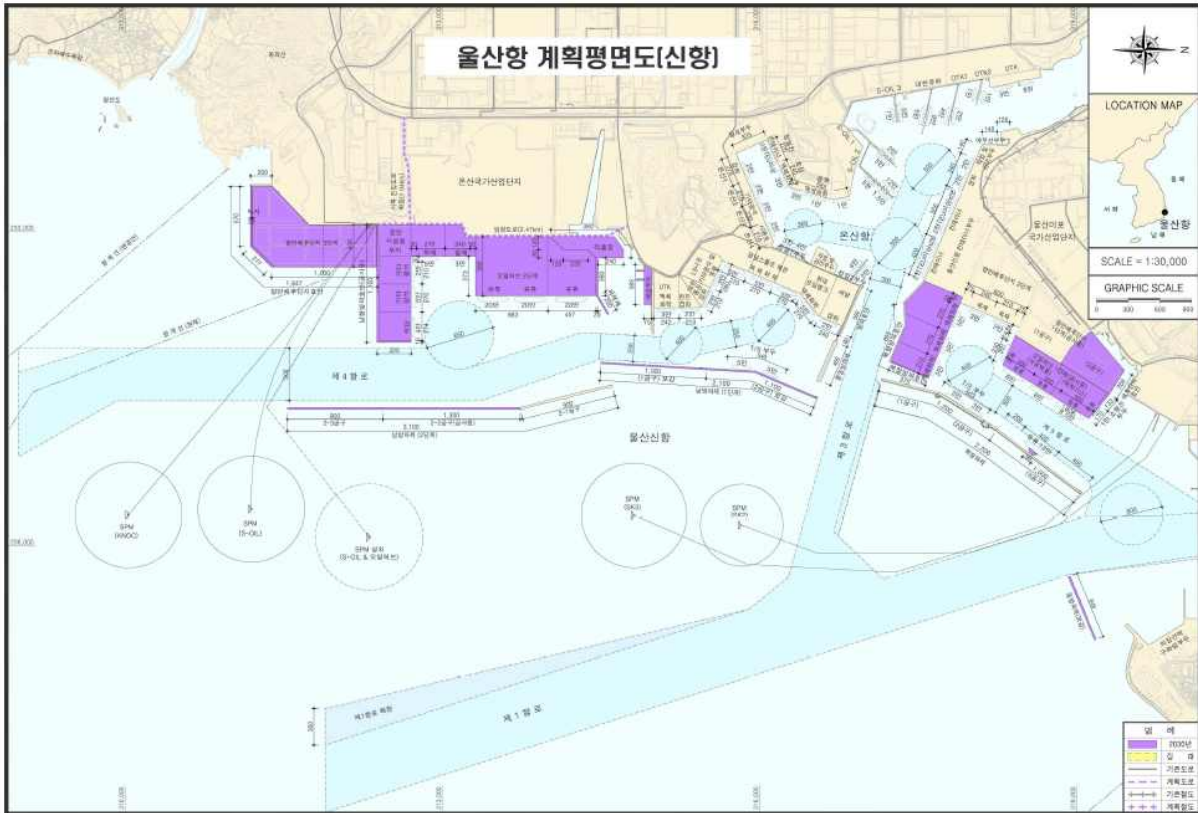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일원</li> <li>• 항종: 국가관리 무역항(신항만)</li> <li>• 신항만구역 : 95,252천㎡</li> <li>•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98,317천㎡</li> </ul>				
호안(m)	관리부두(m)		임항교통시설(km)	접안시설 (m)
8,950	잔교 3기		9,296	6선석 1,600
방파제(m)	호안(m)	접안시설(m)	임항교통시설(m)	기타시설(m)
6,491	2,296	5,305	2,490	5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안능력 : 22선석</li> </ul>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 항만 운영 및 관리

- 위험물 취급 항만의 특성을 감안, 지진·쓰나미·태풍 등 재해 대비 및 대응체제 구축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석 및 배후 유류·액화가스 저장시설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 항만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두운영계획 검토, 하역장비 개선, 항만 배후도로 관리·증설, 화물차 주차장 설치 방안 마련

〈그림 2-7〉 울산신항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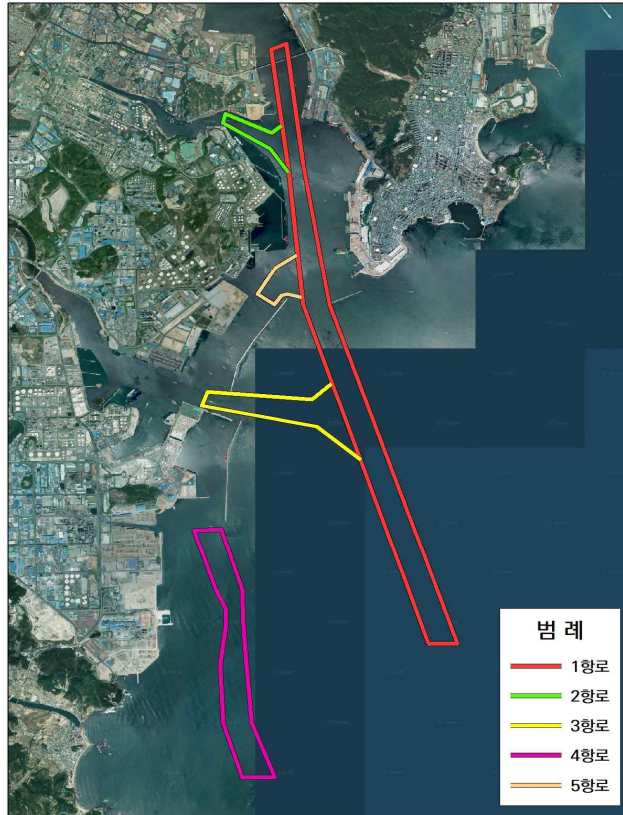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2) 항로

- 울산연안에는 5개의 지정항로와 1개 교통안전특정해역, 1개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 지정
  - 울산항에 입항하기 위한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태화강 하구 일원을 중심으로 5개의 지정항로가 위치
    - 오일허브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조선통항이 집중되는 2항로와 3항로 사이에 제5항로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 중

〈그림 2-8〉 울산연안 지정항로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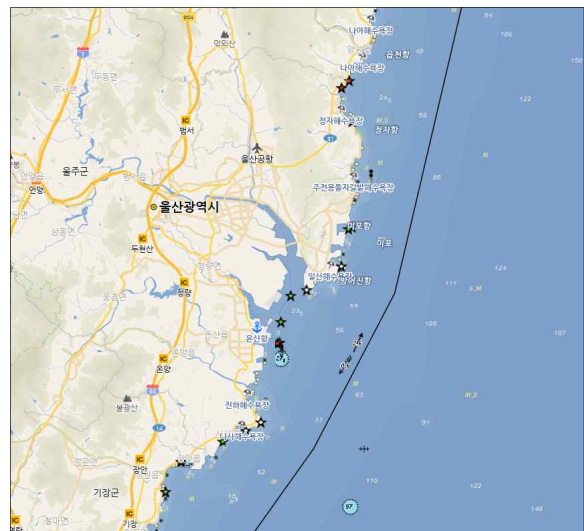
자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19,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26호) 항로 좌표로 작도

-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 1개소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 지정

〈그림 2-9〉 울산연안 교통안전특정해역 위치도



〈그림 2-10〉 울산연안 유조선통항금지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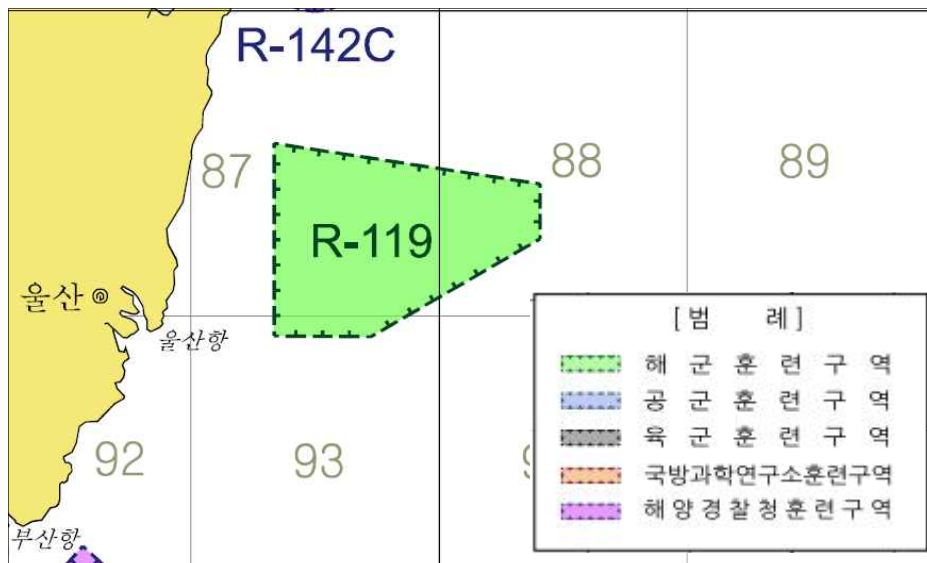
자료 : 해양환경정보지도(2021) (<https://www.meis.go.kr/map/oemsBaseMap.do>)

## 7) 군사활동

## □ 해군훈련구역이 해상에 지정되어 운영 중

- 해양에서의 군사활동은 해양안보, 항행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대상이며 활동의 성격
-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상사격훈련구역도를 제작하여 선박통제나 조업선박의 대피를 위한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제공
  - 울산에는 1개소의 해군훈련구역(R-119)이 지정

〈그림 2-10〉 울산 해역 해상 사격 및 훈련구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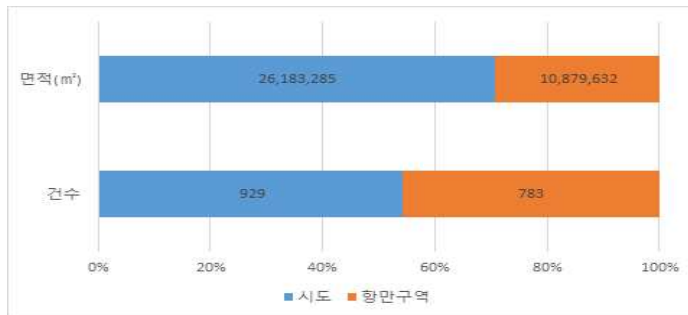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20, 항행통보 연보

### 8) 공유수면 점용·사용

- 1968년 이후 울산연안에서 허가된 점용·사용은 총 1,712건으로 면적은 37.06km<sup>2</sup>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된 점용·사용은 총 784건으로 울산연안 전체 허가건의 45.7%에 해당하고 면적은 전체 점용·사용면적의 29.4%에 불과한 10.88km<sup>2</sup>로 점용·사용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 관리해역에서 발생
  - 지역별 분포는 동구가 695건 19.9km<sup>2</sup>로 가장 많은 점용·사용이 이루어졌으며 산업시설의 입지가 가장 적은 북구는 74건 0.2km<sup>2</sup>로 가장 적은 점용·사용 현황이 존재

〈그림 2-11〉 울산연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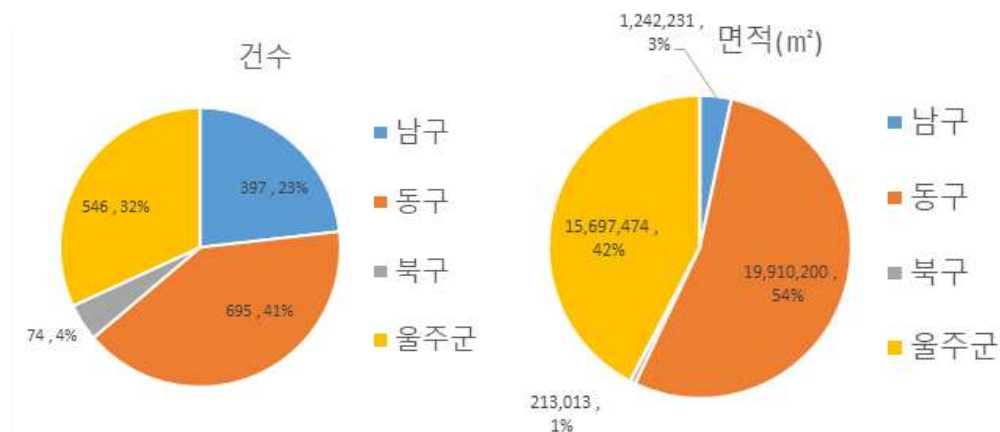


〈표 2-26〉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구분	건수	면적(m <sup>2</sup> )
남구	397	1,242,231
동구	695	19,910,200
북구	74	213,013
울주군	546	15,697,474
합계	1,712	37,062,918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 내부자료

〈그림 2-12〉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 내부자료

9) 안전관리

□ 울산항 및 진입수로, 포항항 해역에서 2020년 기준 8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

- 2014년 이후 울산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6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였으나 2020년 가장 높은 수치

〈표 2-27〉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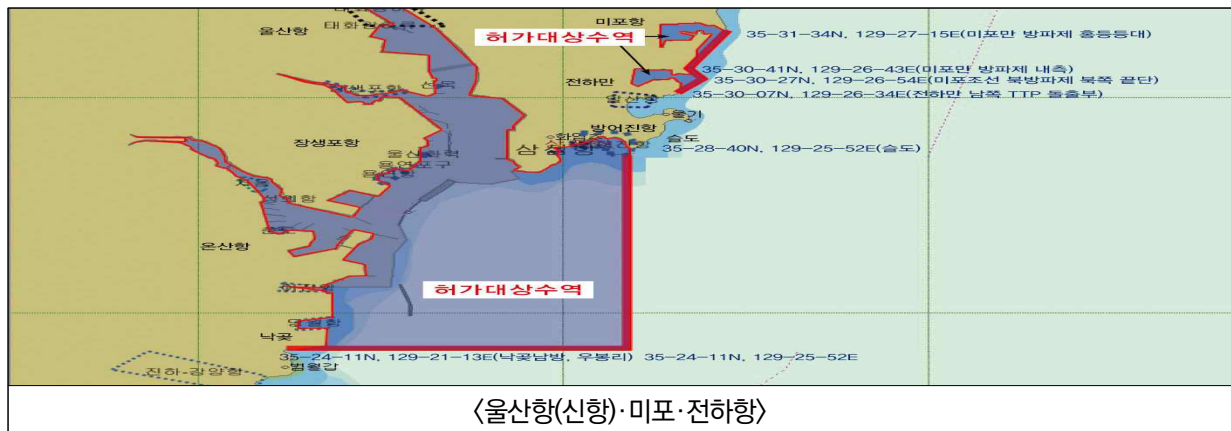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전국	1,087	1,843	1,971	2,285	2,392	2,971	2,847
울산항 및 진입수로, 포항항	25	58	47	52	30	66	83

주 : 원통계에서 포항항과 울산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아 울산항 연안의 해양사고 발생건수만 구분할 수 없음.  
 자료 : 통계청, 2020,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2개소,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구역은 2개소가 지정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일산해수욕장의 경우 수영경계선으로부터 내측 전 구역 및 외측 30m 이내 해상이며, 진해해수욕장은 수영경계선으로부터 내측 및 외측 30m이내 해상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금지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은 울산항(본항)내 슬도와 낙곶남방-우봉리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과 미포, 전하항내 미포만 방파제 홍등 등대, 미포 북방파제 내측, 미포조선 북방파제 북쪽 끝단, 전하만 남쪽 TTP돌출부를 연결한 선내의 해역

〈그림 2-13〉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 위치도



자료 : 울산해양경찰서, 2020,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구역 고시 재정비 보도자료

###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 1) 수요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및 방법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과 수요 조사
  - 국가계획 :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광역자치단체 계획 : 광역 시 및 도 종합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 기초자치단체 계획 : 각 구·군에서 수립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등 주요 법정계획과 예산배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이 나타나는 주요업무계획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취합
  - 각 계획에서 향후 5년간 시행 예정인 개발계획만을 대상으로 이용보전수요를 조사
-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수요 중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사업만 선별
  - 공유수면매립, 점용·사용 등을 기반으로 해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를 확인
  - 도서관광개발사업은 직접적인 이용 대상을 해양공간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로 접근을 위해서 해양공간을 활용하게 됨으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로 반영
  - 다수의 계획에 중복적으로 반영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는 가장 최근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표 2-28〉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국가계획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2020-2029)	연안관리법 제21조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제3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19~2023)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항만법 제5조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마리나항만법 제4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제3차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2019~2023)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0~2024)	어촌어항법 제4조
울산광역시	권역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
	도서개발사업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제7조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기초 자치단체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제4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지난 3년간(2017~2019) 업무계획	-

## (2) 수요 조사 결과

- 수산 및 관광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가 전체 10건, 예산규모는 약 407억원 규모로 조사됨.
- 해양관광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소요예산 또한 약 39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2-29〉 울산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구역)

구분	어업활동	에너지개발	항만·항행	해양관광	안전관리	환경·생태계 관리	총합계
개수	3	-	2	9	-	-	10
예산 (백만원)	1,870	-	-	39,925	-	-	40,685

〈그림 2-14〉 울산연안·해양 이용개발·보전수요 위치도(용도구역)



##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 (1) 연안관리

- 2016년에 울산의 4개 연안 구·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이 완료되었음.

〈표 2-30〉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현황

시·군·구	미착수	용역	협약완료	수립완료	비고
북구	-	-	-	○	고시완료('16년)
동구	-	-	-	○	고시완료('16년)
남구	-	-	-	○	고시완료('16년)
울주군	-	-	-	○	고시완료('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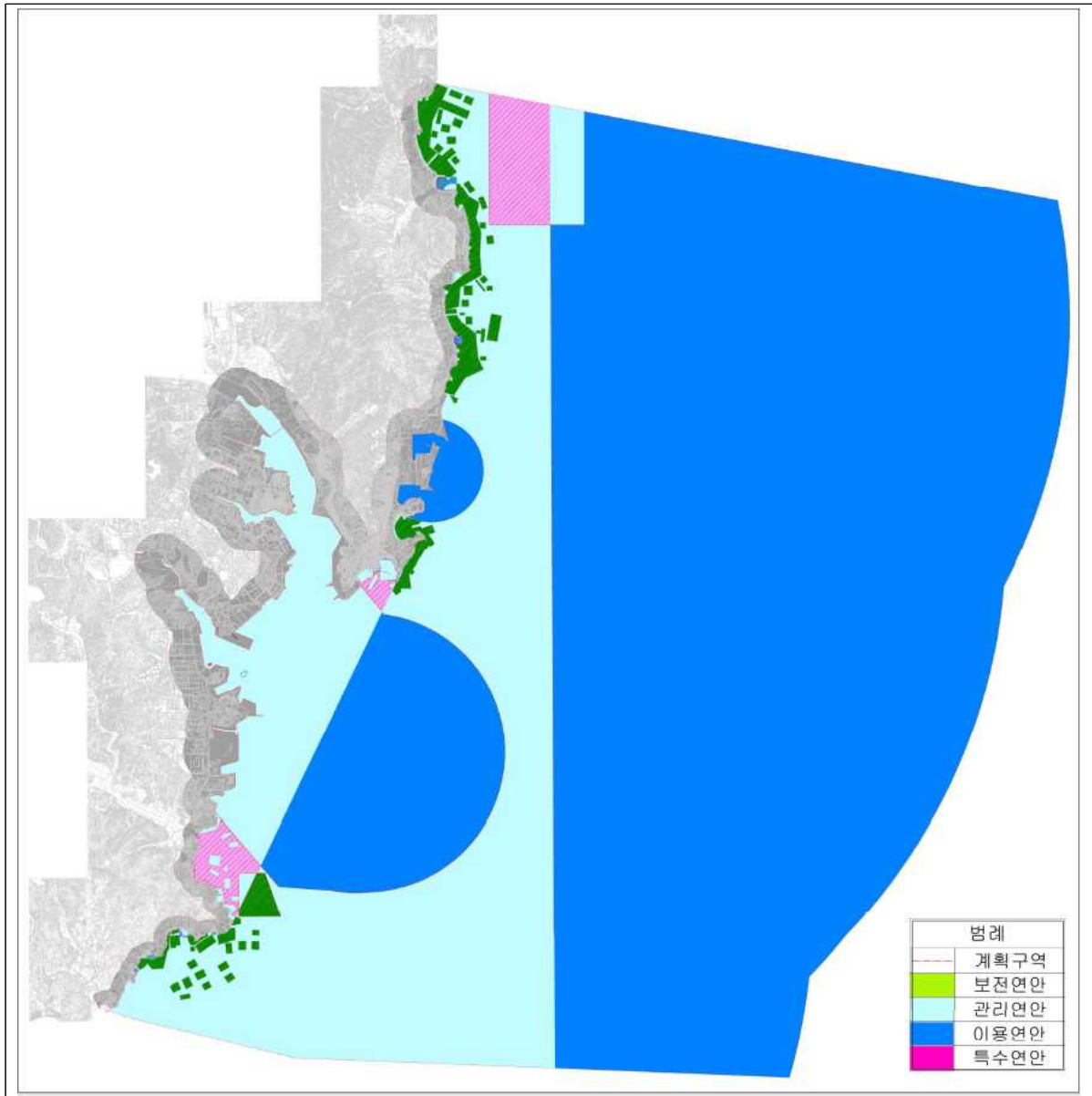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지정은 이용연안해역이 646.90km<sup>2</sup>, 관리연안해역이 244.68km<sup>2</sup> 상당으로 두 해역이 울산 연안용도해역의 대부분을 차지
  - 연안해역기능구는 광물자원구가 582.96km<sup>2</sup>로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음.

〈표 2-31〉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기능구 지정 현황

연안용도해역		기능구	면적(km <sup>2</sup> )
이용연안해역	646.90km <sup>2</sup>	항만구	122.41
		항로구	41.84
		어항구	1.47
		레저관광구	0.00
		해수욕장구	0.38
		광물자원구	582.96
		해중문화시설구	-
특수연안해역	16.44km <sup>2</sup>	해양수질관리구	56.56
		해양조사구	0.21
		재해관리구	-
		군사시설구	-
		산업시설구	17.42
		해양환경복원구	-
보전연안해역	15.02km <sup>2</sup>	수산생물자원보호구	2.19
		해양생태보호구	1.02
		경관보호구	0.02
		공원구	-
		어장구	15.49
관리연안해역	244.68km <sup>2</sup>	해양문화자원보존구	0.0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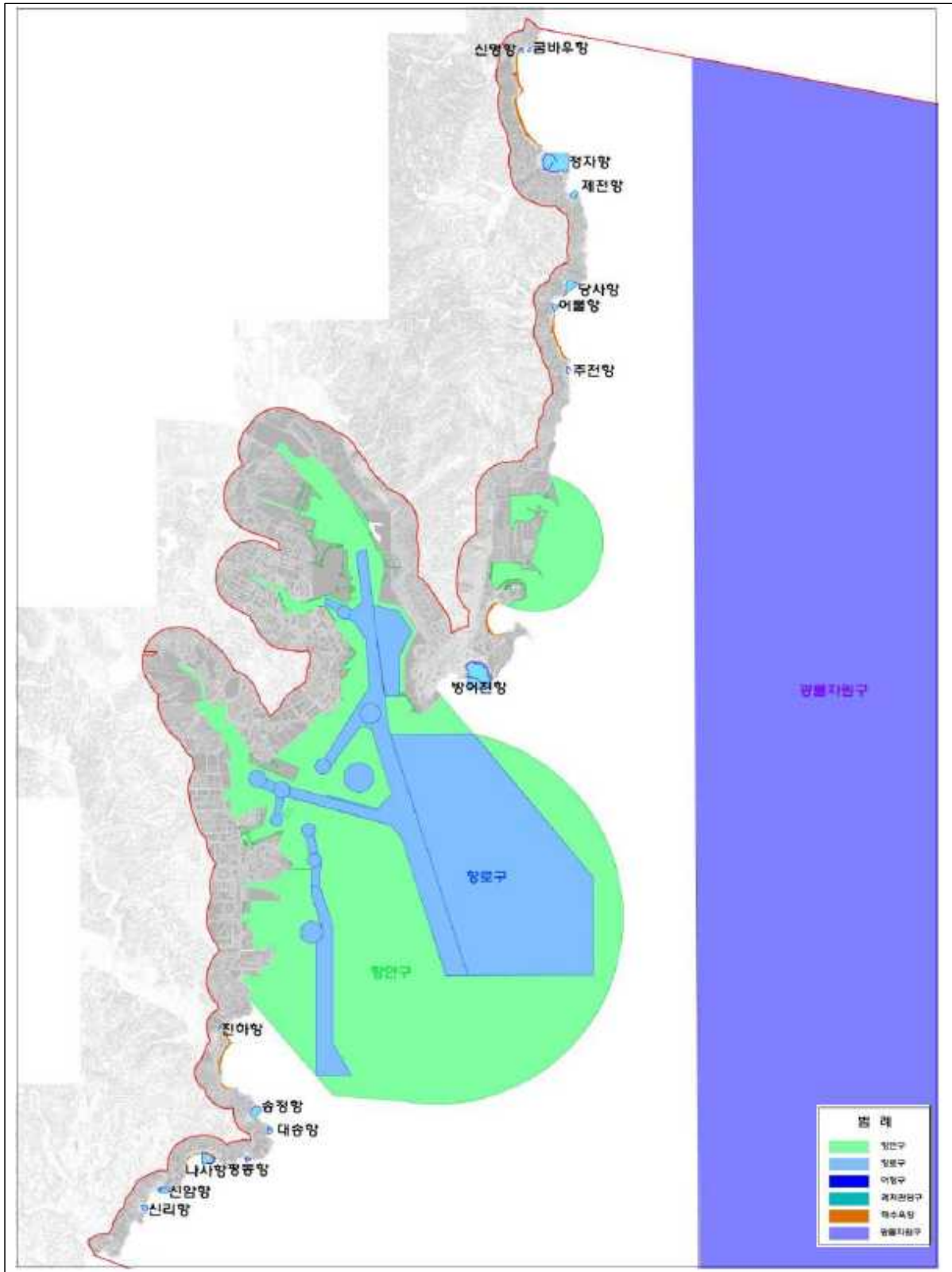
주 : 기능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기능구가 지정되지 않은 해역이 있어 기능구 면적 합과 연안용도해역 면적 합이 일치하지 않음.

〈그림 2-15〉 울산광역시 연안용도해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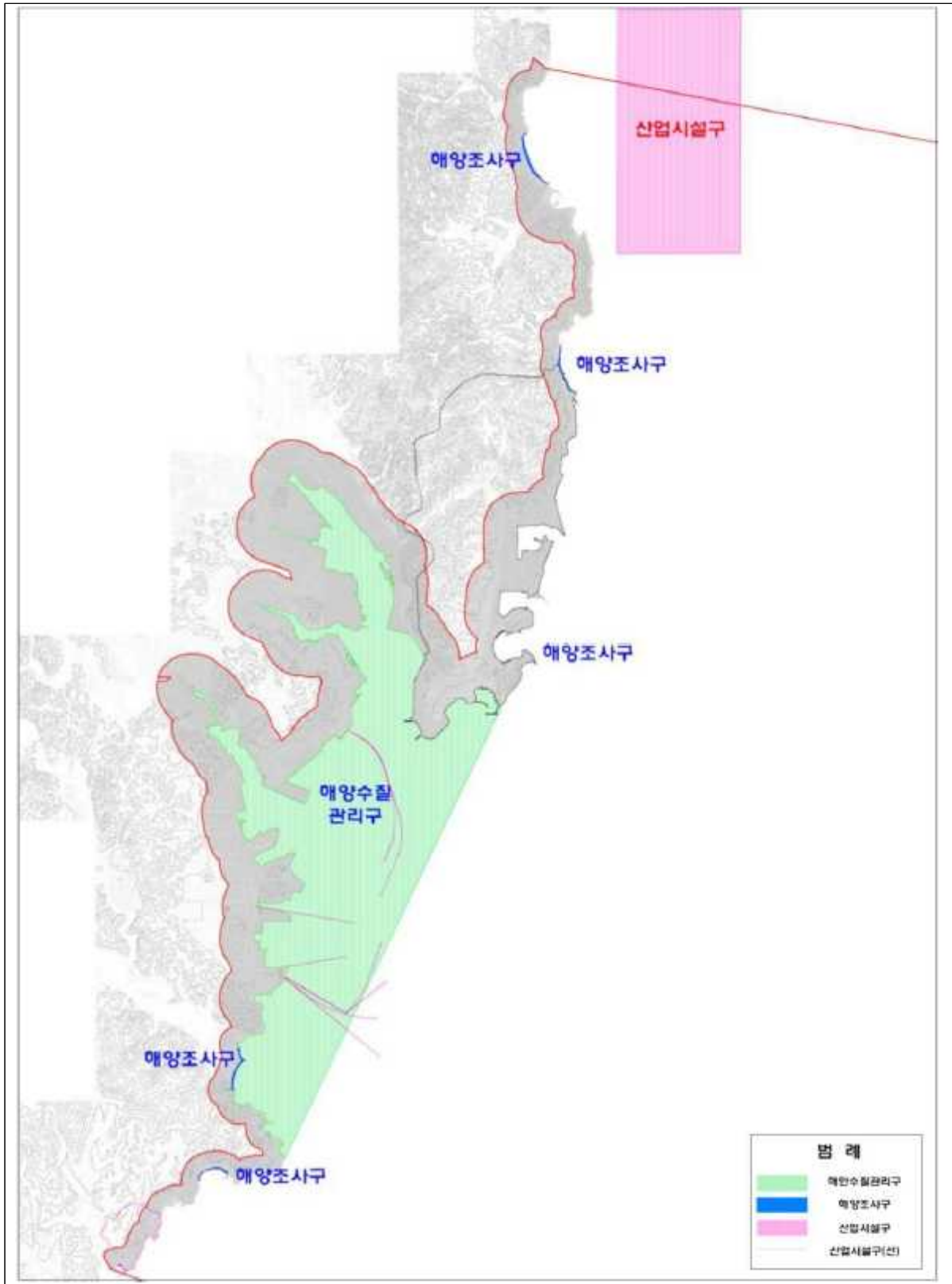
자료 : 울산시, 2016, 연안관리지역계획

〈그림 2-16〉 울산광역시 이용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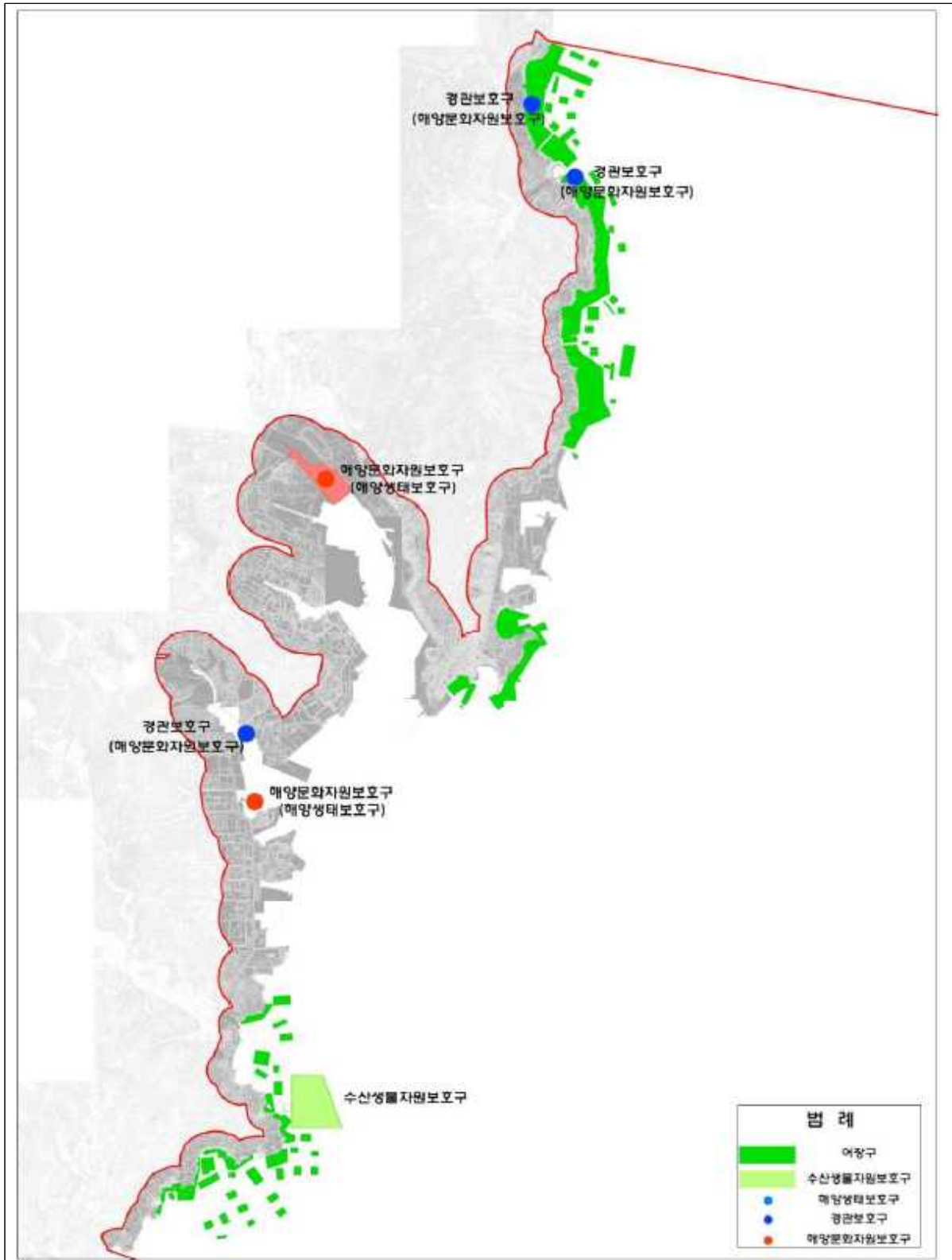
자료 : 울산시, 2016, 연안관리지역계획

〈그림 2-17〉 울산광역시 특수연안해양기능구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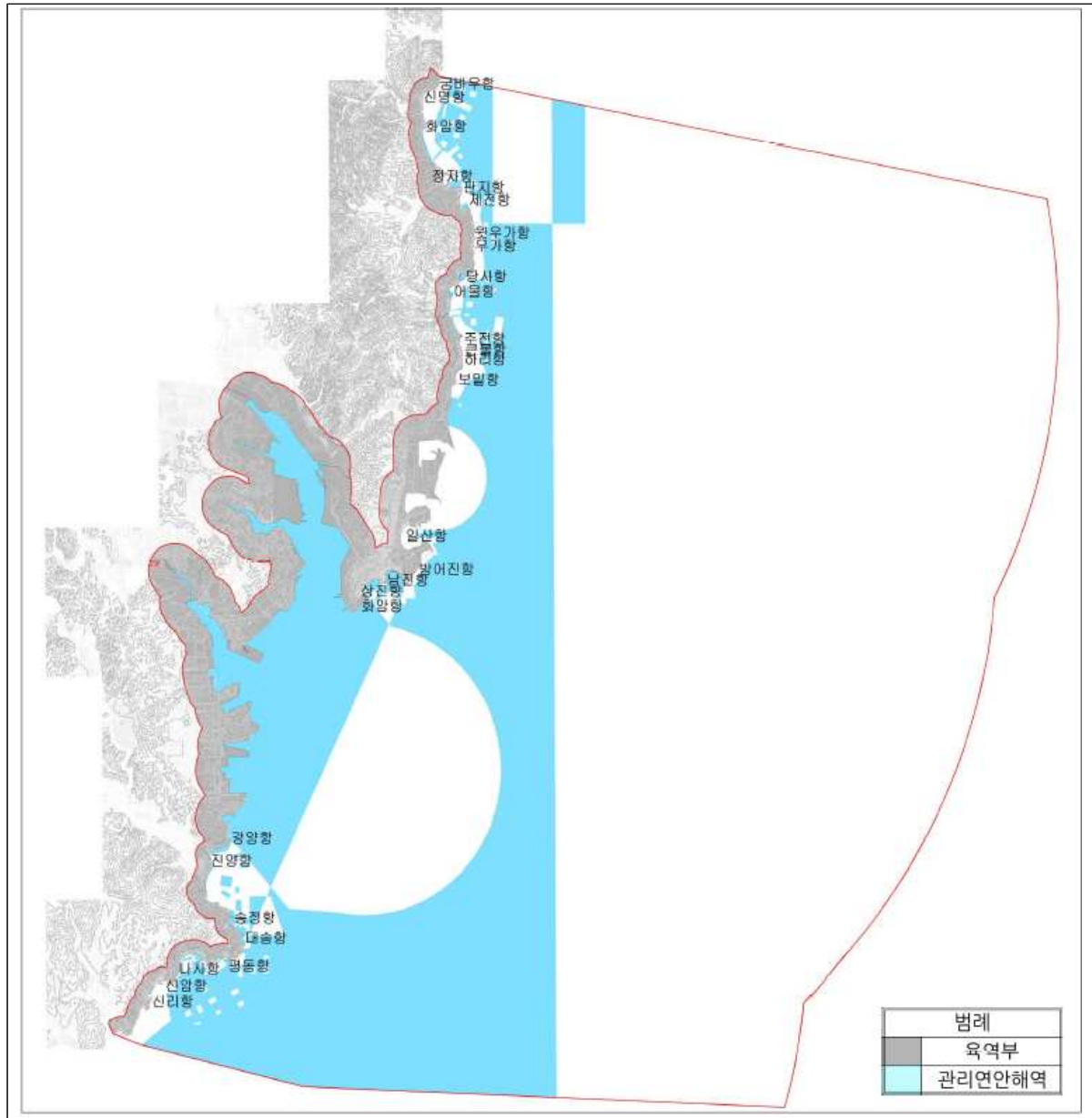
자료 : 울산시, 2016, 연안권리지역계획

〈그림 2-18〉 울산광역시 보전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자료 : 울산시, 2016, 연안관리지역계획

〈그림 2-19〉 울산광역시 관리연안해역 지정 현황



자료 : 울산시, 2016, 연안권리지역계획

## (2) 공유수면 매립

- 울산연안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수요는 제1~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르고 있으며, 반영지구수는 24개소, 매립예정면적은 4.86km<sup>2</sup>
  - 24개소 중 기본계획 반영지구수는 4개소, 0.58km<sup>2</sup>이며, 타법 의제에 따른 매립사업은 20개소, 4.28km<sup>2</sup>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면허를 관리하는 항만구역 내 매립예정지구수는 총 20개소로 그 면적이 4.28km<sup>2</sup>이며, 항만구역 외 매립수요는 4개소로 0.58km<sup>2</sup>의 면적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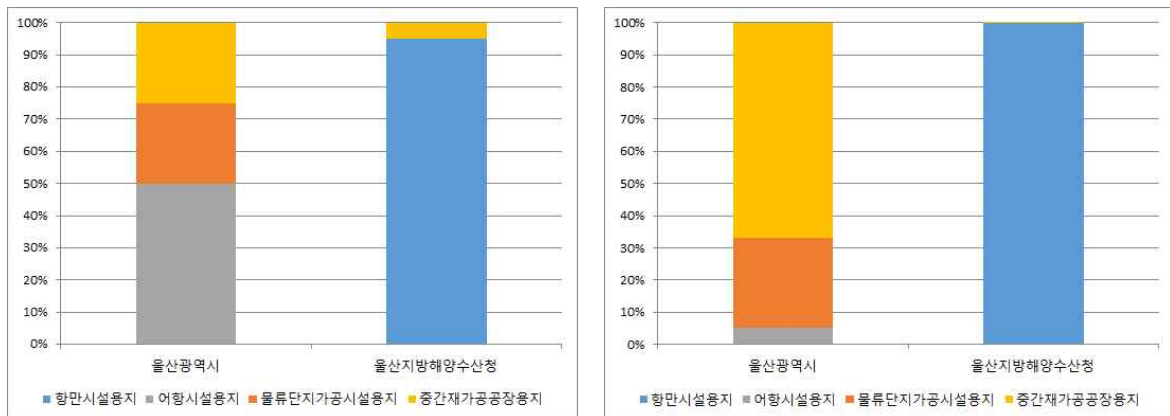
〈표 2-32〉 울산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매립목적	면허관청					
	울산광역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합계	
	개소	면적(m <sup>2</sup> )	개소	면적(m <sup>2</sup> )	개소	면적(m <sup>2</sup> )
항만시설용지	-	-	19	4,277,550	19	4,277,550
어항시설용지	2	29,873	-	-	2	29,873
물류단지가공시설용지	1	162,000	-	-	1	162,000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	385,870	1	4,257	2	390,127
총합계	4	577,743	20	4,281,807	24	4,859,550

\* 공유수면 매립수요현황의 건수 및 면적은 실효된 지구를 제외한 결과임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그림 2-20〉 울산연안 공유수면 매립지구 현황(좌), 매립면적 현황(우)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3) 해역이용협의

- 2014년 이후 울산연안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는 총 22건으로 이중 약 77%에 해당하는 17건이 항만구역에 해당
-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2017년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
  - 항만구역내 협의 실적은 2016년을 최고점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항만구역외는 2017년 3건으로 증가

〈표 2-33〉 울산연안 해역이용협의 실적 현황

연도	항만구역	항만구역외	총합계
2014	1	1	2
2015	3	-	3
2016	6	1	7
2017	3	3	6
2018	4	-	4
총합계	17	5	22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내부자료

(4) 항만 개발

- 울산연안에는 무역항 1개소(신항만 포함)에 대해 항만개발이 추진 중
  - 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두 기능을 재정립하고 배후산업과 연계한 역할분담을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운영효율화 도모
    - 본항 석탄부두는 향후 석탄부두 이전 시점에서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활용방안 재검토
    - 신항 모래부두는 2020년 이후까지 신북항개발을 위한 제작장 활용계획이 있어 모래 이송장치 설치예정인 본항 9부두를 잡화부두에서 모래부두로 기능 변경

〈표 2-34〉 울산항 개발 계획

위치	항종	현황			항만 개발 규모	
		항만구역 (천m <sup>2</sup> )	접안능력 (선석)	하역능력 (천RT/년)	호안보강 (m)	친수시설 (천m <sup>2</sup> )
울산광역시	무역항 (국가관리항)	116,362	116	78,816 (1,187)	150	98.5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

- 울산신항을 북방지역 에너지 물류(원유, 천연가스) 거래 활성화에 대비한 동북아 오일·가스 에너지 허브 항만 구축

- 장래 신북방 루트 활성화 및 북극해 운항선박 증가에 따른 유류·가스 등 에너지 물류 거래 활성화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형 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 구축
- 쓰나미,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 방파제 보강 및 항만시설 내진 강화 등 위험성 화물 보관·처리의 안전성 제고
- ECA 지정, AMP 설치, 밀폐형 하역시스템 구축, LNG 수입기지 및 병커링 시설, 녹지대 조성 통한 지속가능형 항만 건설

〈그림 2-21〉 울산신항 단계별 향후 비전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표 2-35〉 울산신항 시설 개발계획

계획기간	개발계획
1단계 (2019~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항교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신항 입항도로 : 2.47km</li> <li>- 울산신항 서측 진입도로 확장 : 1.04km</li> <li>- 울산신항 인입철도 : 9.34k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경부두 : 0.485km</li> <li>- 소형선부두 : 0.133km</li> </ul> </li> </ul>
2단계 (2031~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출장측 호안 : 0.360k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부두 : 20만DWT급×1선석(0.457k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출장 : 0.360km</li> </ul> </li> </ul>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5) 어항 개발

- 신규 어항의 지정은 없으나 기존 어항시설의 노후화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정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300)의 추진과 거점어항 선정 및 개발, 국가어항 경관계획 수립, 어항 기능편익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

- 화암항(2019년), 당사항·어물항과 주전항(2020년), 우가항(2021년) 등 총 4개소가 '어촌뉴딜 300사업'에 반영되어 추진 중
- 북구에서는 당사항·어물항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여 해양경관자원과 연계하고, 해양 낚시공원 경관 특화, 해양레저시설 조성, 이안제 및 방파제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총 141억원이 투입될 예정
- 북구 우가항은 낙후된 선착장 등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특화 개발 추진을 위해 70억원이 투입될 예정
- 동구 주전항은 방파제 신설, 물양장 축조, 해파랑길 경관 개선, 어린이 물놀이장 등의 조성으로 총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
- 동구 화암항은 해상낚시터, 해안주차장 및 친수공간, 어항정비 등을 통해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총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
- 어촌뉴딜300 사업과는 별도로 방어진항 남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한 정비공사가 2022년까지 66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해양수산부, 2020, 보도자료)

(6) 해양관광 및 레저

-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된 해양관광 및 레저관련 계획은 총 9건이 있으며,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이 1건, 기타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이 8건
- 관광자원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은 친수기능강화를 위한 탐방로 및 산책로 조성, 환경 개선사업으로 구성

〈표 2-36〉 해양공간 이용 관광개발 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시군구	사업비(백만원)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	동구	-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	남구	-
진하 해양레포츠 테마랜드 조성	-	울주	-
미항가꾸기 사업	-	울산	-
화암항 어촌뉴딜300사업	2021~2023	동구	10,000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	2020~2022	동구	9,568
당사어물항(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2020~2022	북구	13,357
당사어물항(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	2020~2022	북구	7,000
당사항 마리나항만 개발예정구역	2020	북구	-

(7) 신재생에너지 개발

- 기술개발·제작생산·운영보수·인력양성 등 부유식 해상풍력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연관시설의 집적화로 비용감소 및 기술혁신을 위한 클러스트 구축

- 울산 항만 인근 육상 및 해상을 대상으로 실증연구센터, SCADA연구센터, 실험역 테스트베드, 전용항만, 설치선 및 해양지원선 등 선단구축, 전용산단, O&M 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클러스터 구축

〈표 2-37〉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구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개발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위치
클러스터 조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클러스터 구축	2020~2030	1,000,000	울산 항만 인근 육상 및 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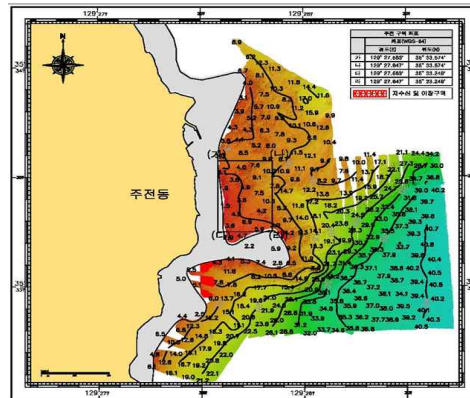
자료 : 울산시, 2019,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계획

(8)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수요

- 울주군 온산읍과 동구 해역을 대상으로 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서생면 평동리 일대에 바다목장(161.3ha)<sup>15)</sup>을 조성하고, 동구 주전동 일원 해역에 조성된 바다숲(24ha)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16년)<sup>16)</sup>

〈그림 2-22〉 수산자원관리수면



자료 : 울산시, 2016,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

- 외항강 하류와 온산항 사이 해역을 중금속(구리, 아연, 수은)을 대상으로 하는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2019년~2022년)<sup>17)</sup>
-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2018년 ~ 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주요 중금속을 대상으로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를 관리

15) 통합수산자원정보시스템(2021) (<https://www.fira.or.kr/newgis/main.do>)

16) 울산시, 2016,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16 - 1158호)

17) 해양수산부, 2018,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4. 해양공간관리 현안

### 1) 일반주민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 □ 울산 해양공간활동 및 해양공간관리 인식조사

- 조사 대상 : 울산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 총 744명
- \* 지역주민 할당 : 남구 : 224명, 동구 : 160명, 북구 : 187명, 울주군 : 148명
- 조사 기간 : 2019년 10월~2020년 1월(3개월)
- 조사 방법
  - 지역주민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 조사
  - 공무원 :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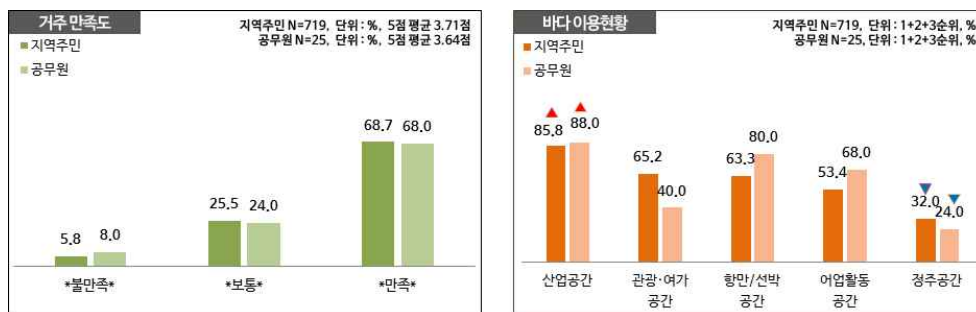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 가. 해양공간인식

##### □ 거주 만족도 및 울산 바다 이용현황

- 울산지역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거주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71점, 3.64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만족’ 68.7%, ‘보통’ 25.5%, ‘불만족’ 5.8%로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만족’ 68.0%, ‘보통’ 24.0%, ‘불만족’ 8.0%로 역시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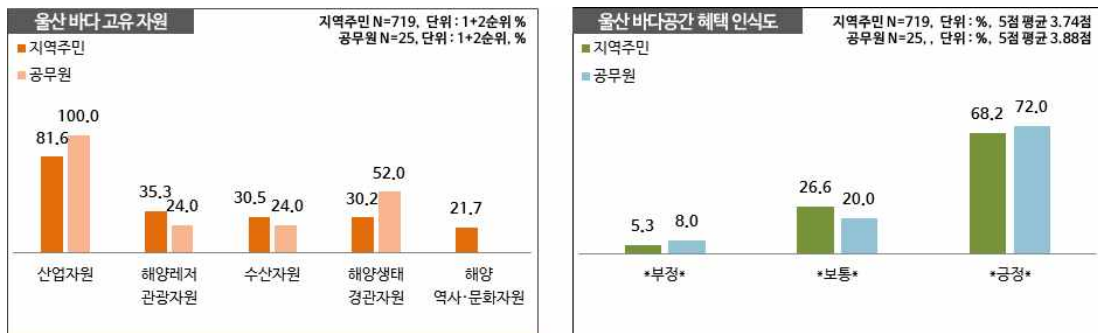
〈그림 2-23〉 울산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 □ 울산 바다 고유 자원 및 바다 공간 지역주민 도움 여부

- 울산 바다 고유 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산업자원’이 8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도 ‘산업자원’이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울산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 3.71점, 공무원 3.88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긍정’ 68.2%, ‘보통’ 26.6%, ‘부정’ 5.3%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은 ‘긍정’ 72.0%, ‘보통’ 20.0%, ‘부정’ 8.0%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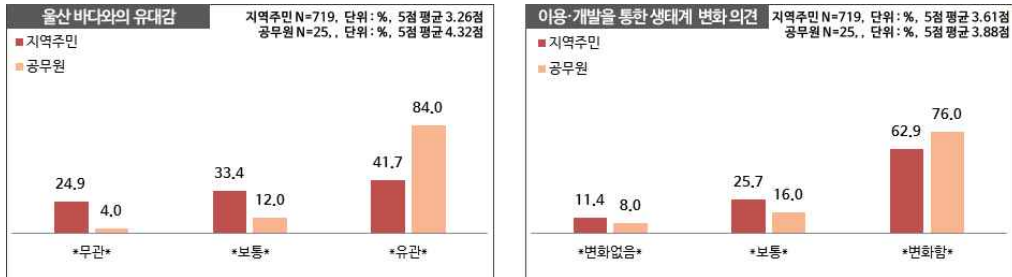
〈그림 2-24〉 울산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 □ 울산 바다와의 유대감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

- 울산 바다와의 유대감은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3.26점, 공무원은 4.32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유관’ 41.7%, ‘보통’ 33.2%, ‘무관’ 24.9%로, ‘유관’이 ‘무관’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은 ‘유관’ 84.0%, ‘보통’ 33.4%, ‘무관’ 4.0%로 ‘유관’이 높게 나타남.
- 이용 및 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변화함’이 각각 62.9%,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다수가 이용 및 개발을 통해 생태계가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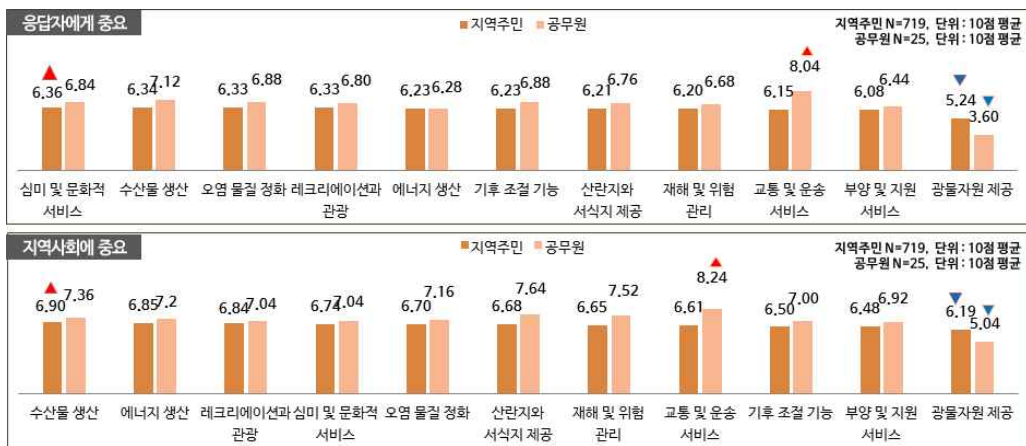
〈그림 2-25〉 울산 바다와의 유대 정도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의견



□ 바다로부터의 혜택

-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은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가 6.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물자원 제공’이 5.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무원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은 ‘교통 및 운송 서비스’가 8.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물자원 제공’이 3.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은 ‘수산물 생산’에 대해 지역주민 6.90점, ‘교통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해 공무원이 8.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26〉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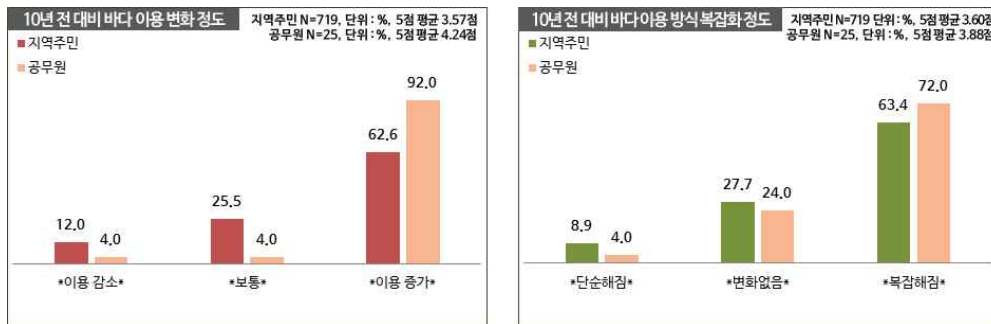


## 나. 해양활동 간 갈등

### □ 과거 10년 전 대비 울산 바다 이용 변화 및 이용방식 복잡화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57점, 4.24점으로 나타남.
- ‘이용 증가’가 지역주민과 공무원 각각 62.6%, 92.0%로 가장 높게 나타나, 10년 전보다 이용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복잡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60점, 3.88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의 경우, ‘복잡해짐’ 63.4%, ‘변화 없음’ 27.7%, ‘단순해짐’ 8.9%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복잡해짐’ 72.0%, ‘변화 없음’ 24.0%, ‘단순해짐’ 4.0%로 나타나, 바다 이용방식이 10년 전보다 다양해졌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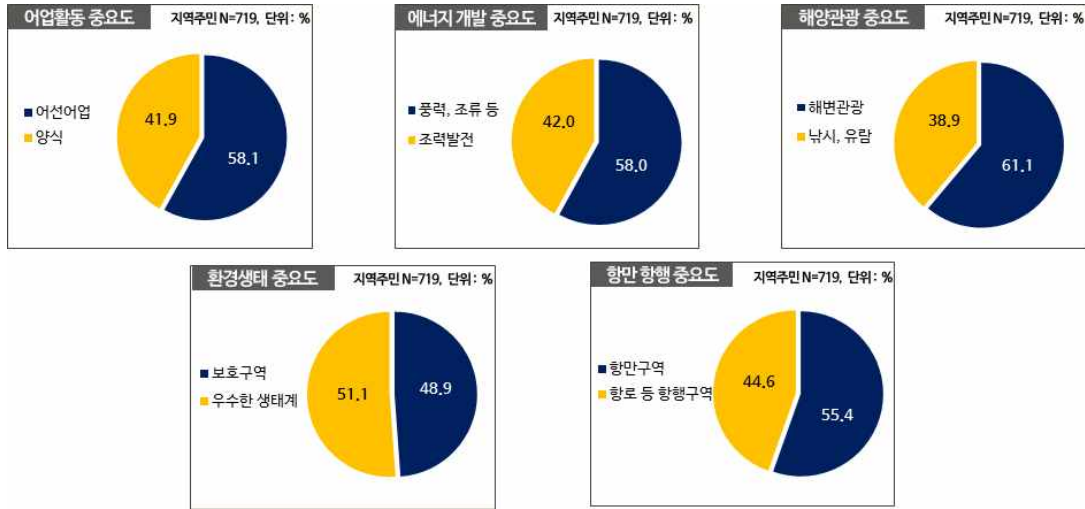
〈그림 2-27〉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지역주민

-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를 알아보면, 어업활동 부문은 ‘어선어업’ 58.1%, ‘양식’ 41.9%로 나타났고, 에너지 개발 중요도 부문은 ‘풍력 조류 등’ 58.0% , ‘조력발전’ 42.0%, 해양관광 중요도 부문은 ‘해변관광’ 61.1%, ‘낚시, 유람’ 38.9%, 환경생태 중요도 부문은 ‘우수한 생태계’ 51.1%, ‘보호구역’ 48.9%, 항만항행 중요도 부문은 ‘항만구역’ 55.4%, ‘항로 등 항행구역’ 44.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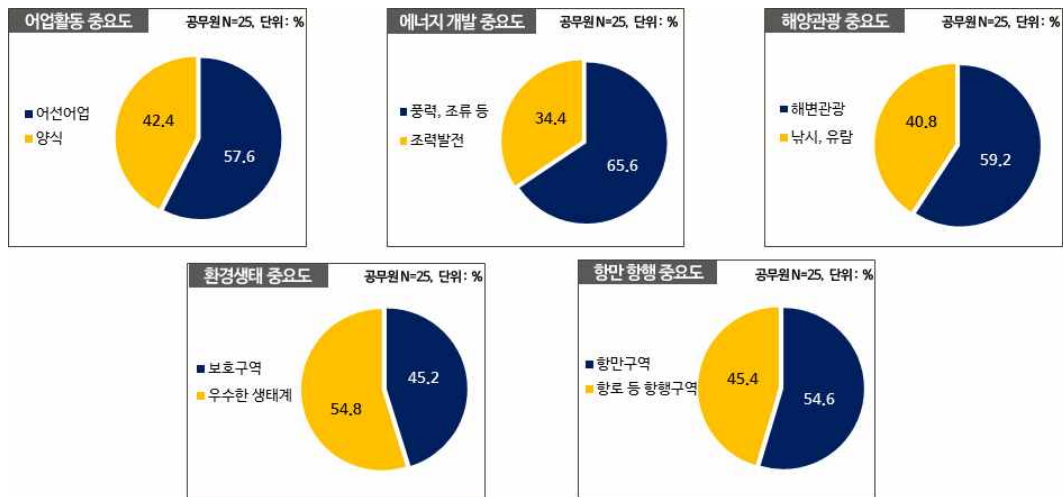
〈그림 2-28〉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공무원

-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어업활동 부문은 ‘어선어업’ 57.6%, ‘양식’ 42.4%로 나타났고, 에너지 개발 중요도 부문은 ‘풍력 조류 등’ 65.6% , ‘조력발전’ 34.4%, 해양관광 중요도 부문은 ‘해변관광’ 59.2%, ‘낚시, 유람’ 40.8%, 환경생태 중요도 부문은 ‘우수한 생태계’ 54.8%, ‘보호구역’ 45.2%, 항만항행 중요도 부문은 ‘항만구역’ 54.6%, ‘항로 등 항행구역’ 45.4%로 나타남.

〈그림 2-29〉 지역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지역주민

- 지역주민에게 해양 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환경·생태의 경우 ‘골재·광물’(3.03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그림 2-30〉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2.79점							
(3) 에너지개발	2.83점	2.58점						
(4) 해양관광	2.52점	2.59점	2.68점					
(5) 환경·생태	2.69점	3.03점	2.88점	2.76점				
(6) 연구·교육	2.22점	2.29점	2.29점	2.34점	2.49점			
(7) 항만·항행	2.63점	2.60점	2.54점	2.55점	2.72점	2.61점		
(8) 군사활동	2.66점	2.56점	2.49점	2.75점	2.74점	2.42점	2.61점	
(9) 안전관리	2.45점	2.70점	2.63점	2.61점	2.62점	2.40점	2.65점	2.84점

\* 주) 1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 없음', 5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 클 것' 응답으로, 3점 이상인 경우 '갈등 예상' 으로 분류

##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공무원

- 공무원에게 해양 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해양 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골재·광물의 경우 ‘어업활동’(3.88 점)과 갈등이 예상됨.
  - 에너지개발 활동은 ‘어업활동’(3.72점)과 갈등이 예상됨.
  - 환경·생태 활동은 ‘골재·광물’(3.16점), ‘에너지 개발’(3.04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군사활동은 ‘어업활동’(3.08점), ‘에너지 개발’(3.08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그림 2-31〉 지역 공무원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3.88점							
(3) 에너지개발	3.72점	2.28점						
(4) 해양관광	2.44점	2.76점	2.44점					
(5) 환경·생태	2.40점	3.16점	3.04점	2.64점				
(6) 연구·교육	1.56점	2.12점	1.80점	1.64점	1.60점			
(7) 항만·항행	2.88점	2.60점	2.76점	2.56점	2.40점	1.84점		
(8) 군사활동	3.08점	2.60점	3.08점	2.92점	2.40점	2.40점	2.92점	
(9) 안전관리	2.36점	2.48점	2.76점	2.24점	1.64점	1.56점	2.20점	1.9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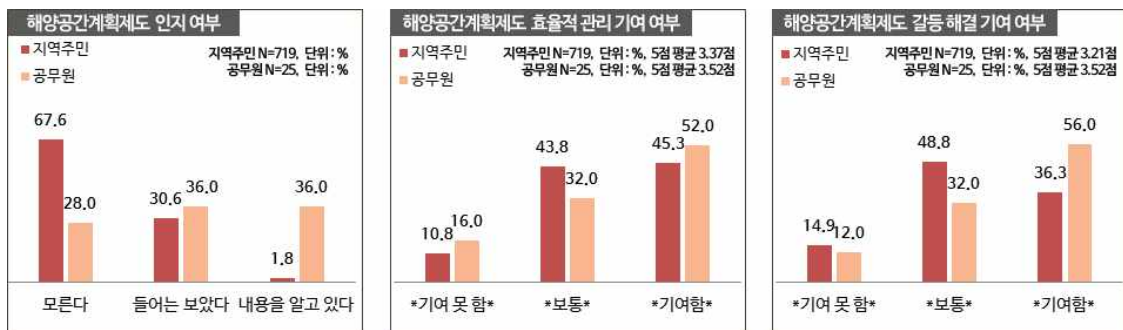
\* 주) 1점이 가까울수록 '갈등 없음', 5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클 것' 응답으로, 3점 이상인 경우 '갈등 예상'으로 분류

#### 다.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해양공간관리 방향

##### □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 해결 기여 여부

- 지역주민은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서 '모른다'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과반수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의 경우 '들어는 보았다' 36.0%, '내용을 알고 있다' 36.0%, '모른다' 28.0%로 과반수 이상이 들어보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활동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지 묻은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3.37점, 공무원은 3.52점으로 나타남.
-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활동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지 묻은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3.21점, 공무원 3.52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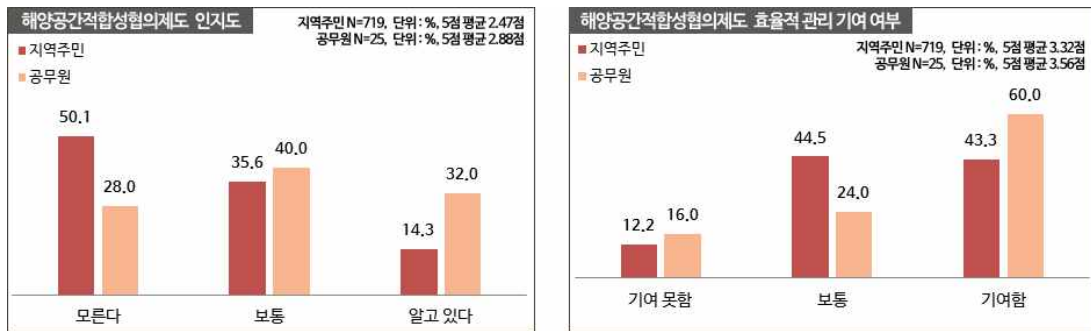
〈그림 2-32〉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해결 기여 여부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 인지 여부 및 해양공간 관리 기여 여부

-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경우, ‘모른다’ 50.1%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과반수 정도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도 ‘모른다’ 28.0%, ‘보통’ 40.0%로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가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묻은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3.32점, 공무원 3.56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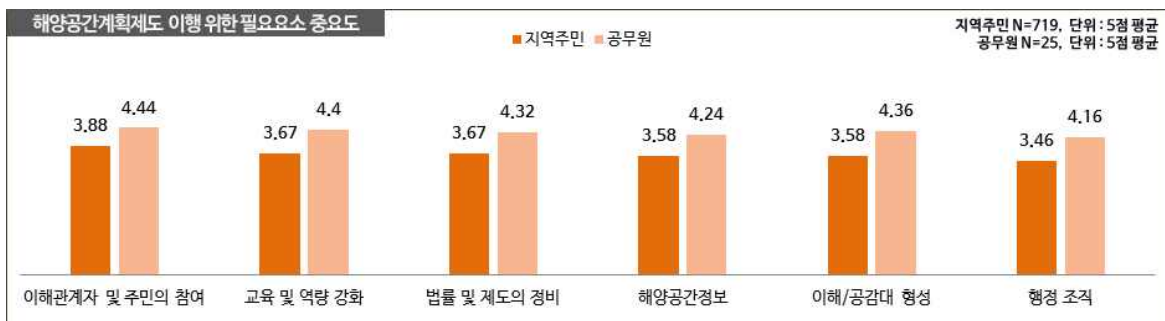
〈그림 2-33〉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의 인지도 및 제도의 효율적 관리 기여 여부



□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 위한 필요요소 중요도

- 지역주민의 경우, 중요한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가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조직’이 3.4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도, 중요한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가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 조직’이 4.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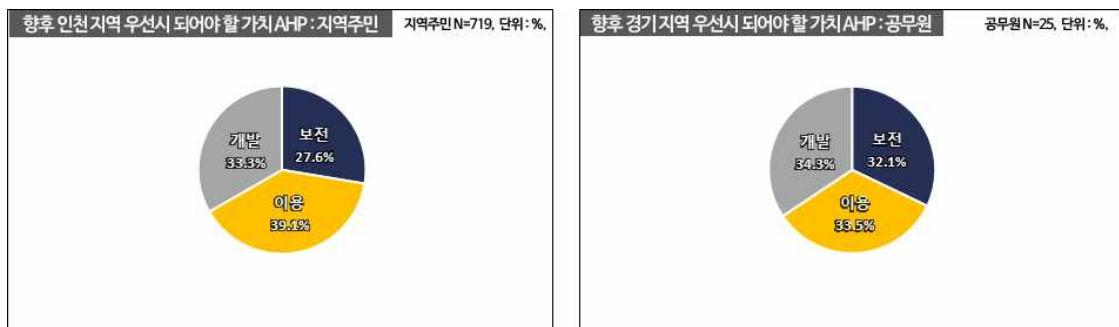
〈그림 2-34〉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의 중요도



□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시 되어야하는 바다의 가치에 대한 의견

-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시 되어야하는 바다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지역주민은 ‘이용’ 39.1%, ‘개발’ 33.3%, ‘보전’ 27.6% 순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은 ‘개발’ 34.3%, ‘이용’ 33.5%, ‘보전’ 3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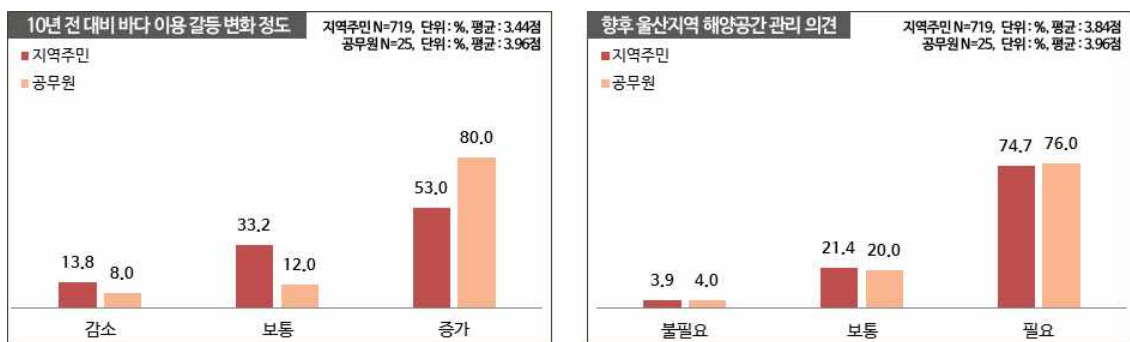
〈그림 2-35〉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 과거 10년 전 대비 울산 바다 이용활동 갈등 변화 정도 및 향후 울산 지역 해양공간 관리 의견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간의 갈등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44점, 3.96점으로 나타나, 갈등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경우 ‘증가’가 각각 53.0%,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향후 울산 지역 해양공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3.84점, 공무원은 3.96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필요’ 74.7%, ‘보통’ 21.4%, ‘불필요’ 3.9%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필요’ 76.0%로 대다수의 지역주민과 공무원은 향후 해양공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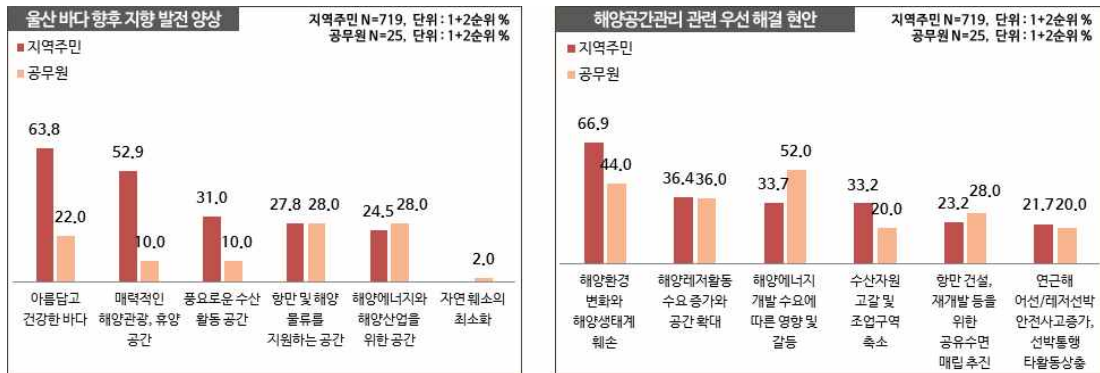
〈그림 2-36〉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갈등변화 정도 및 관리 필요성



□ 울산 바다 향후 발전 양상 및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울산 바다의 향후 발전 양상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가 6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해양관광, 휴양 공간’ 5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해양에너지와 해양산업을 위한 공간’이 2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가 각각 66.9%,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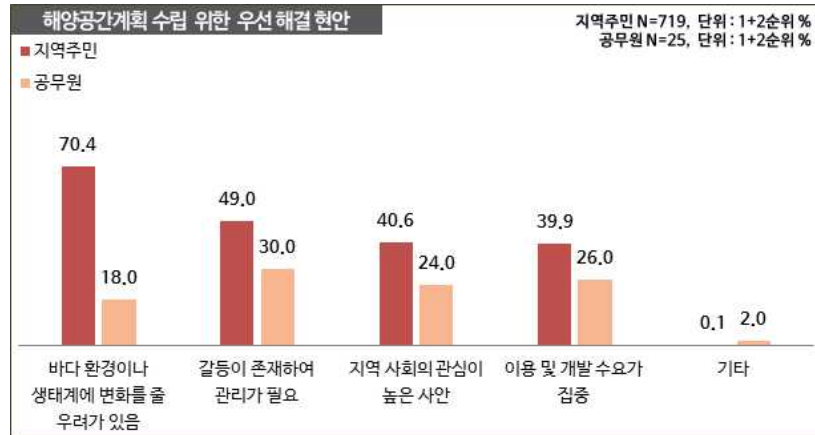
〈그림 2-37〉 울산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 현안



□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역주민은 ‘생태계에 변화를 줄 우려’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49.0%),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4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 및 개발 수요 집중’(26.0%),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2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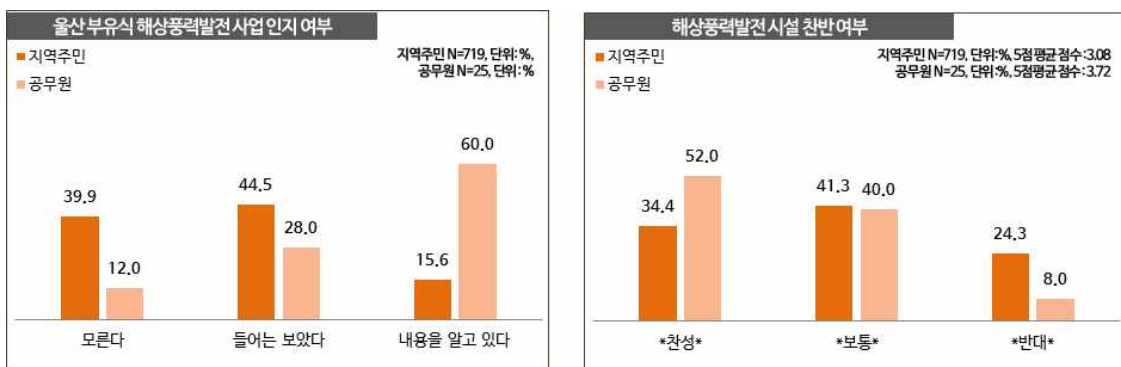
〈그림 2-38〉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울산 해상풍력 발전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들어는 보았다’ 44.5%, ‘모른다’ 39.9%, ‘내용을 알고 있다’ 15.6% 순으로 인지 비율이 낮은 반면, 공무원은 ‘내용을 알고 있다’ 60.0%, ‘들어는 보았다’ 28.0%, ‘모른다’ 12.0% 순으로 과반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상풍력발전 시설 찬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5점 평균점수 기준, 지역주민이 3.08점, 공무원이 3.72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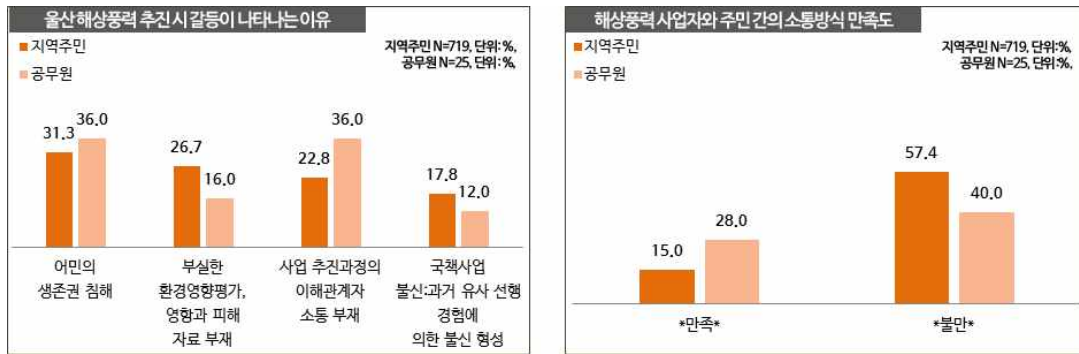
〈그림 2-39〉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울산 해상풍력 추진 시 강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주민은 ‘어민의 생존권 침해’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은 ‘어민의 생존권 침해’와 ‘사업 추진과정의 이해관계자 소통 부재’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해상풍력 사업자와 주민 간의 소통방식 만족도는 지역주민과 공무원 각각 '불만'이 57.4%, 40.0%로 대체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0〉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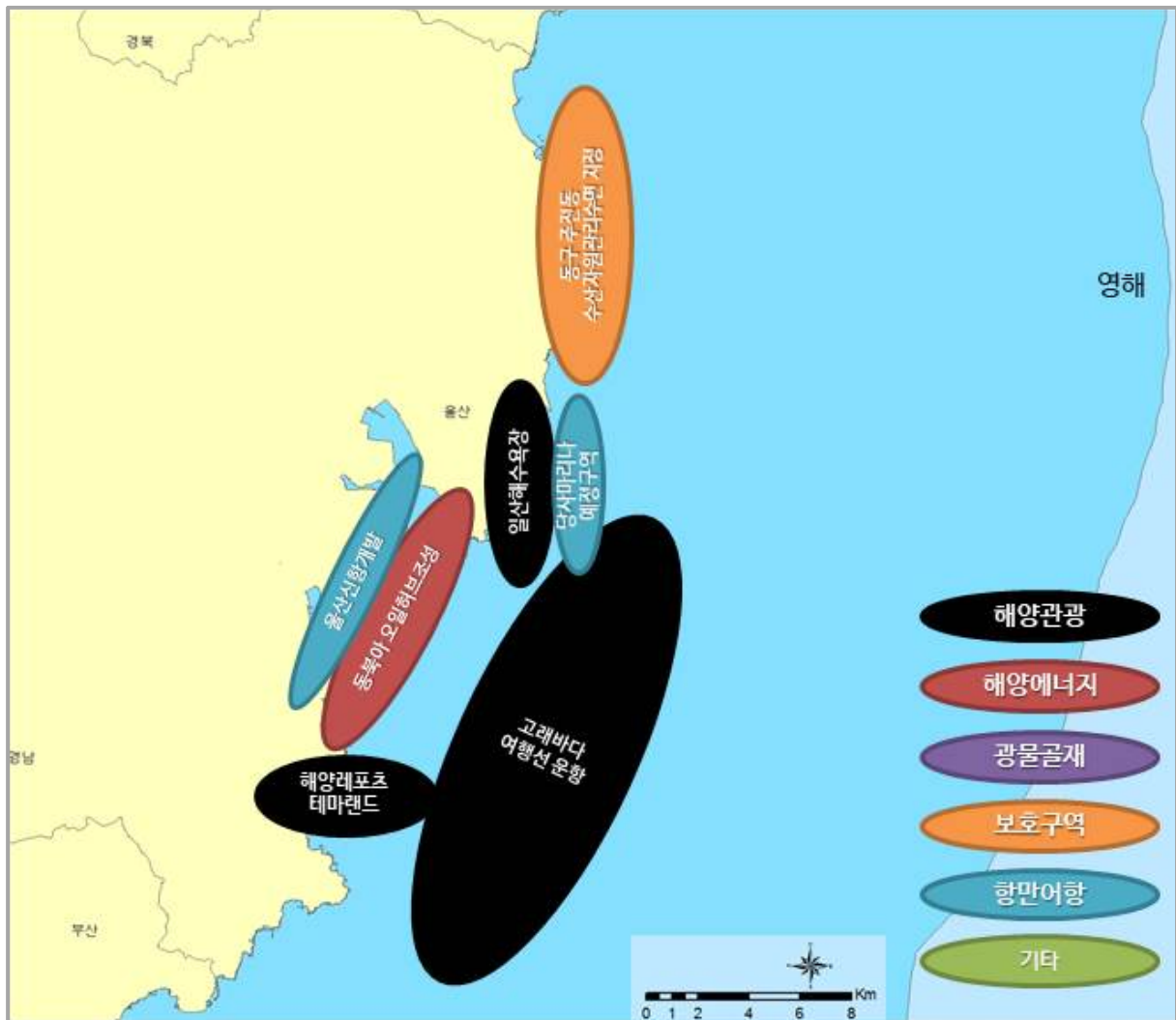
#### 4. 해양공간관리 현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립 및 해양공간 이용으로 연안해역 가용 공간 축소
  - 울산신항 일원의 사업장 부지 조성을 위한 해양공간이용 증가
  - 특화된 해양자원 기반을 활용한 해양관광 개발 등으로 공간이용 불균형 발생 가능성 존재
-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양오염 증가 가능성 존재
  - 울산신항 일원에 원유 하역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 증가
  - 위험유해물질 배출 및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해수오염, 해양환경 악화 및 어업 피해 등의 가능성 증대
-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개발 및 보전 활동 증가
  - 장생포항 앞바다 고래관광 유람선 운항 등 관광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 강동·주전 연안의 몽돌 유실 및 해안 침식 방지, 일산해수욕장 정비, 사빈 보호, 수질 관리 등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

□ 해상풍력 발전단지 대형화 및 신규 개발에 따른 갈등 잠재

- 울산항 인근 육상 및 해상에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계획 추진
- 북구 정자항 인근 동남해안 해상풍력의 발전사업 변경(21.5)으로 발전사업허가 면적 확대
-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기존 이용자(관광·어업)와의 갈등 잠재

〈그림 2-41〉 울산연안 해양공간 현안 위치도



##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 정책방향의 성격

- 해양공간계획은 공간에 분포하는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지만, 특정 자원 또는 환경에 특화된 계획이 아닌, 다양한 해양수요가 조화롭게, 지속가능하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임.
  - 즉, 다양한 해양수요가 상충 없이 조화를 이루어 각 수요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통합적 계획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양공간계획에 반영된 각 수요별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해양공간계획은 현재의 공간관리구조를 파악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조정한 결과물인 해양용도구역으로 실현됨으로, 정량적 정책목표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행위주체들의 행동을 결정할 이정표 설정은 필요함.
  -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은 ‘정책방향’을 통해 각 행위주체들의 용도구역별 공간할당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최소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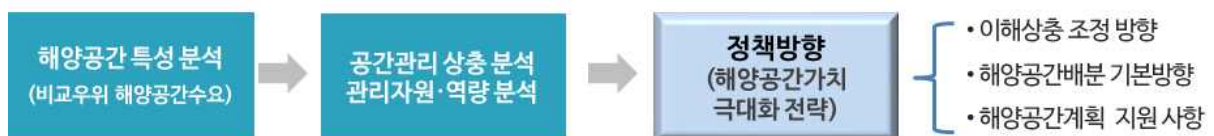
### □ 정책방향의 성격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증진 및 최소 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현재의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 □ 정책방향 도출 과정과 구성요소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행위결정과정에서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과 정책방향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그림 2-42〉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틀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대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야 함. 계획대상 공간특성 분석 대상은 자연환경 특성, 사회경제 이용특성, 국가정책 및 계획 수요 등임.
- 다음 단계는 공간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각 수요별 상충현황(상충내용과 수준)과 현재의 관리자원·역량(자료, 정보, 인력,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는 과정임.
- 마지막으로 공간특성, 상충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상충 조정방향, 해양공간배분'을, 관리자원·역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제시함.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음.

① 항만·물류, 해양생태·관광 등 해양활동 공간의 합리적 배분

○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해양복합기능 확충과 다양한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존\*\* 수요의 조화와 균형

\* 해양항만개발촉 : 신항만 건설 등 항만기능 강화, 항만인프라-산업 연계 활성화, 고래테마관광육성 및 친수공간 조성 등

\*\* 해양보전이용촉 : 정자·주전 등의 어촌경관 보존, 진하·간절곶·방어진의 해양친수공간 정비, 수산자원 조성 사업 등

○ 환경·생태와 공존 가능한 레저·관광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공간 할당

② 울산만 수질·저서생태계 건강성 개선과 우수 경관·생태계관리체계 강화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예측형 적응관리 실현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한 생태계 기반 관리 강화

○ 자연해안·해양생태·문화자원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보호생물(고래 등) 연구·교육 강화

③ 선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구역 등 지정

- V-PASS, GICOMS 데이터를 토대로 어선 및 선박 이동과 밀집도를 분석하여 사고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공개
- 낚시어선 등 해양관광레저 활동과 어선 조업활동의 안전을 위해 울산항 항만구역 및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구역 지정

④ 신규 해양이용·개발 수요에 따른 행위 간 사전 조정 체계 마련

-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개발 등 신규 해양활동과 기존 활동의 상호작용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 개발-이용, 이용·개발-보전 간 갈등 조율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지역 협의회 등) 운영 활성화





제3장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제3장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1. 해양공간특성평가

####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 □ 해양공간특성평가

-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 「해양공간계획법」제2조제7항 :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함.

- 해양공간의 환경·생태, 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양의 핵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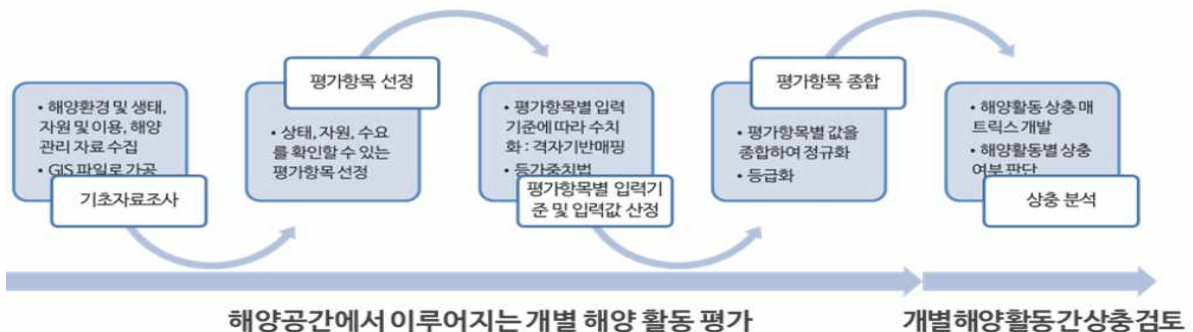
- 특성평가는 핵심 해양활동을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과정

-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활동을 대표하는 해양공간정보를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평가단위인 격자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하여 해양공간 특성을 등급화하고 핵심 활동 공간을 식별

- 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용도구역 간 상충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

\* 「해양공간계획법」제5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제12조에 따라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해양공간특성 평가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그림 3-1〉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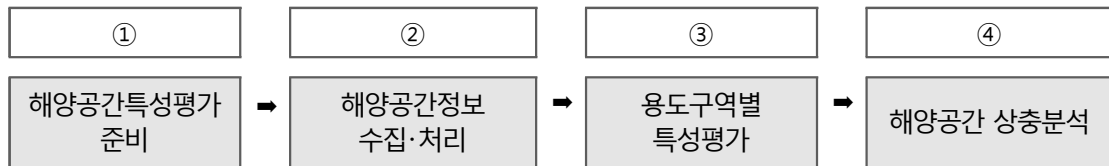


- 특성평가의 절차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에서 ‘해양공간 상층분석’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행 내용을 정의

###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를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에서 ‘해양공간 상층분석’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행 내용을 정의

〈그림 3-2〉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 ①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단계)** ‘특성평가대상해역 설정’, ‘주요 해양활동 도출’, ‘핵심 해양활동 선정’, ‘평가항목 정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방향을 제시
- ② **(해양공간정보 수집·처리 단계)** ‘자료조사 및 수집’, ‘자료 가용성 및 신뢰도 검토’, ‘분석활용 자료 선정’, ‘자료변환 및 처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특성평가대상해역에 관련된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하고 특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및 처리
- ③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단계)**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특성평가 대상해역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특성평가지도를 제작 및 제공
- ④ **(해양공간 상층분석 단계)**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중첩을 통한 상층분석’, ‘특성평가 및 상층분석 결과 관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특성평가대상해역 내 해양활동의 상층 공간 및 상층 요인을 식별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 2) 기초자료 조사·수집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목록의 자료를 우선하여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관련 법정조사, 연구보고서, 해양공간정보, 행정통계 등을 검토

〈표 3-1〉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1. 기본 해양공간정보	가. 해도(海圖)	국립해양조사원
	나. 수집	
	다. 조위(潮位: 조수에 의한 해수면 높이) 변화	
	라. 조류·해류	
	마. 해역 경계	
	바. 인공·자연해안선	
	사. 약최저저조선	
	아. 지적 경계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 무인도서	해양수산부
	차. 해양환경관측 지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카.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조사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 해양환경·생태	가. 수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나. 염분	
	다. 갯벌	
	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마. 해양보호생물종	
	바. 해양생태도	
	사. 이상해역환경 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아. 적조출현속보	
	자. 해파리출현 정보	
	차. 해역이용협의서	
	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타.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파. 환경영향평가서	
	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너. 문화재 정보, 문화재유존정보 등	문화재청	
3. 어업활동	가. 어항시설	해양수산부
	나. 어항개발계획	
	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허가·관리 자료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라.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
	마. 산란·서식지 조사 자료	
	바. 수출패류생산해역위생조사 자료	
	사. 바다숲·바다목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 인공어초	
	자. 천연해조장·잘피(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 조사 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차. 연근해어획실적(소해구별·조업위치별)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선박패스(V-PASS) 장치 동적정보	해양경찰청
	타. 어선등록정보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파. 양식장 시설 자료(위성영상판독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 수산자원관리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면허어업권(양식장 등)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골재·광물	가. 골재자원 조사자료(부존량(賦存量) 등)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 골재유망단지분할도	
	다.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라. 해저광물개발구역	산업통상자원부
	마. 광업권(채굴권·탐사권)	
	바. 바다골재채취허가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5. 해양에너지	가. 조류에너지	해양수산부
	나. 조력에너지	
	다. 파력에너지	
	라. 온도차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마. 해상풍력에너지	
	바. 석유·천연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조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아. 전기사업허가구역	
6. 해양관광	가. 해수욕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마리나 시설	해양수산부
	다. 낚시 활동 및 신고 정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라. 어촌체험휴양마을	
	마. 여객선 항로 및 이용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	해양경찰청
	사.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국토교통부
	아. 해양관광진흥지구	
7. 항만·항행	가.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나. 항만기본계획	
	다. 선박운항정보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8. 군사활동	해상사격 훈련구역 등	국방부, 국립해양조사원
9. 해양안전·관리	가. 해양시설 자료	해양수산부
	나. 해상교통 안전진단 등 정보	
	다.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라. 바닷가실태조사 자료	
	마. 해양사고 자료	해양경찰청
	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주 :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바다와 바닷가에 설정된 이용·개발 및 보전·보호 구역 정보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

### 3) 평가항목

#### □ 평가항목 선정

- 특성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해양용도구역 분류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해양활동을 확인
- 주요 해양활동을 확인하고, 개별 해양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자원의 부존 현황 및 가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 (해양자원 분포·가치 및 미래 잠재 수요) 현재 관련 해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양활동을 유인하는 자원이 분포하거나 가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정보 확인
  - (해양공간 이용 및 활동 상태·수준) 조업 활동, 낚시 활동, 선박 이동 등 핵심 해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확인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정조사 혹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
- 평가항목의 특성을 검토하여 해양공간정보 수집·조사의 대상과 가공의 방향 결정
  - 평가항목별 평가격자별 입력기준은 해당 자료의 연속성, 주기성 등을 고려
- 이에 따른 공간특성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어업활동	• 연근해 어선밀집(5년평균)	5개 등급(상위 3개)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어획량	• 연근해 어획량 • (5년평균)		5개 등급(상위 3개)
		• 주요어종(5종)		5개 등급(상위 3개)
		• VPASS 어선밀집 • (2018)		5개 등급(상위 3개)
	• 양식장(면허어업권)	존재유무(유=1, 무=0)		
• 어항	존재유무(유=1, 무=0)			
골재·광물 자원개발	• 광업권 등록(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EEZ 광물자원	존재유무(유=1, 무=0)		
에너지개발	•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의 자원량	자원량 표준화(0~1)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발전소(화력, 가스전)	존재유무(유=1, 무=0)		
	• 발전단지 예정구역·사업 허가 구역	존재유무(유=1, 무=0)		
항만·항행	• 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항만 및 항행 활동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법제도상 지정된 구역역을 토대로 설정	
	• 항로(항로 및 통항분리제도 등)	존재유무(유=1, 무=0)		
	• 정박지(정박지, 묘박지)	존재유무(유=1, 무=0)		
	• 교통안전특정해역	존재유무(유=1, 무=0)		
	• GICOMS 통항밀집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해양관광	• 해수욕장(해안)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낚시포인트	존재유무(유=1, 무=0)		
	• 레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V-PASS 기반 낚시어선 활동	5개 등급(상위 2개)		
환경·생태계 관리	• 갯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염생식물	존재유무(유=1, 무=0)		
	• 수중식물(잘피/해조/해초류)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보호생물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생태도	1등급=1/2등급=0.5		
	• 해양생물다양성지수(Delta+)	5개 등급(상위 3개)		
	• 연안·해양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국립공원	존재유무(유=1, 무=0)		
연구·교육	• 영해기점 무인도서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관측 부이 등	존재유무(유=1, 무=0)		
군사활동	• 군사 관련 법정구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해상 사격훈련구역 등)	존재유무(유=1, 무=0)		
안전관리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 상충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 해양에너지 시설 주변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 4) 해양공간특성평가

##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특성평가대상해역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특성평가지도를 제작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 (대상해역 격자 구성) 공간분석 및 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영해기선 내측은 3'×3'(약 5km) 격자, 영해기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까지는 15'×15'(약 25km) 격자인 일반 격자를 적용한 격자망도 제작

〈그림 3-3〉 일반격자(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에 관련된 해양공간정보를 개별 격자의 속성정보로 입력하는 공간정보 격자화 과정을 수행
-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공간정보 격자화 결과로 입력된 속성정보의 통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을 정하되, 개별 평가항목별 점수는 0부터 1까지의 점수 이내에서 부여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각 용도구역별로 관련된 모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통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격자망도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로 입력

-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음.
  - 평가 대상 자료를 대상 해양공간의 영역으로 데이터를 자르기
  - 평가 대상 항목의 속성 정보를 정의하고 편집
  - 격자망도와 해양공간정보 조인을 수행하고 개별 데이터에 대한 특성평가 결과값 (H-Value)을 0과 1사이의 정규값으로 산정 후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 개별 데이터에 대한 특성평가 결과값(H-value)를 모두 합산하여 통합점수(T-value)를 산정
  - Min-Max 정규화 방법을 통해 통합점수(T-value)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산정하여 최종값(G-value) 도출
    - \* 최종값(G-value)을 5등급으로 구분 가능하며, 등급이 클수록 해당 핵심활동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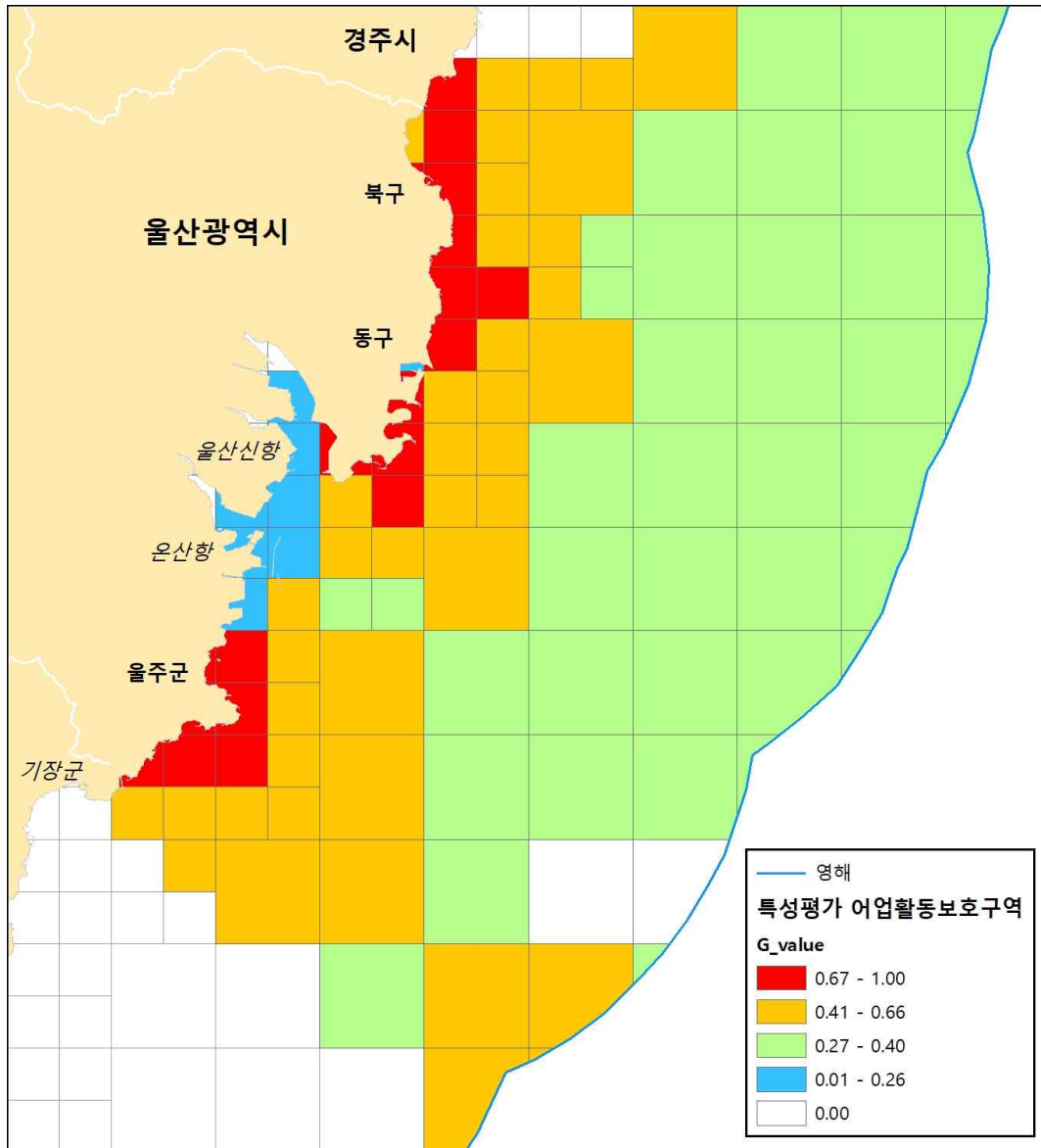
〈그림 3-4〉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연근해 어획량, 연근해 어선밀집도, 양식장 (면허어업권), 어항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등

〈그림 3-5〉 울산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광업지적단위광구(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골재채취단지, 바다골재 부존량 등

〈그림 3-6〉 울산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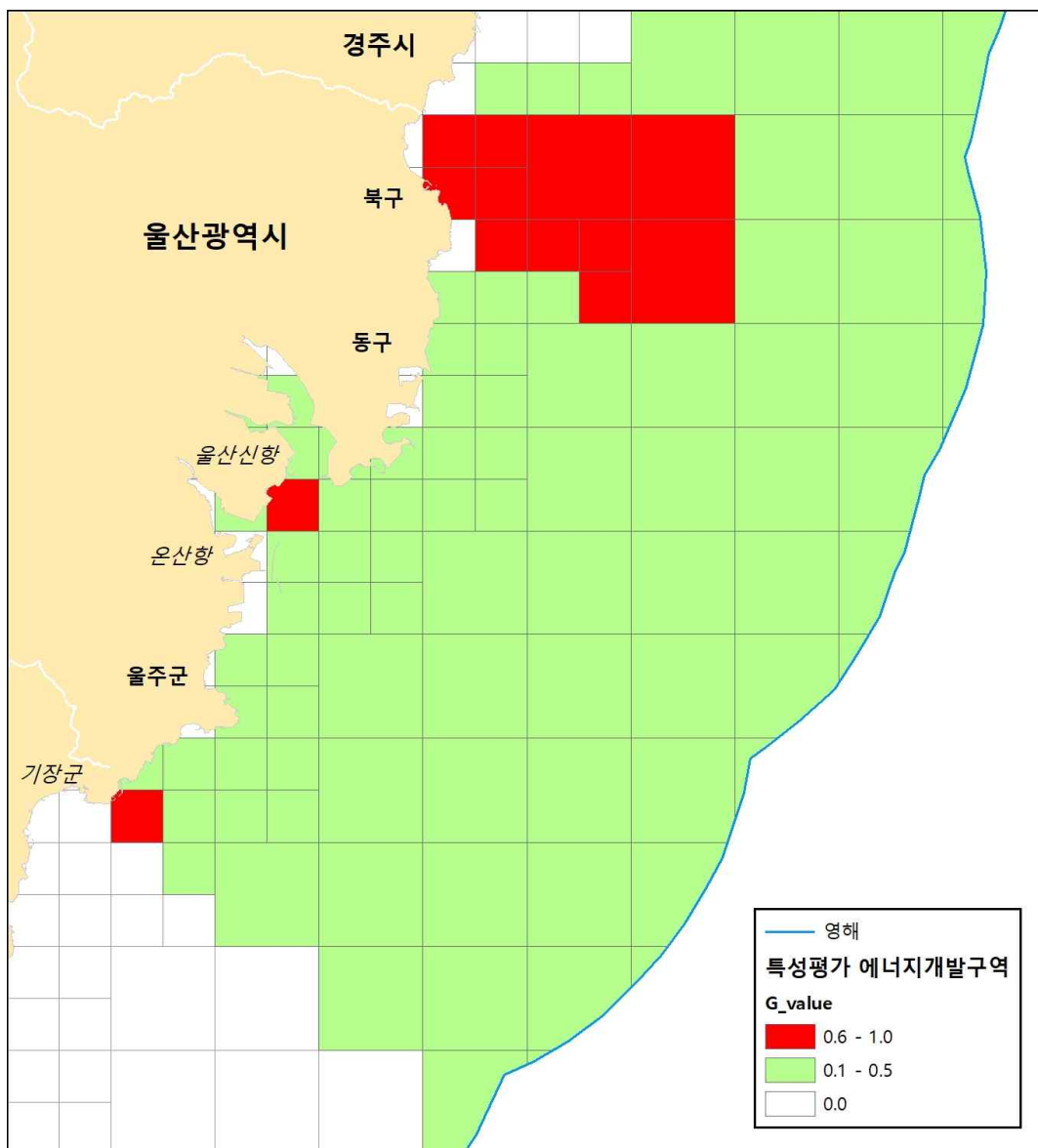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에너지 개발 수요(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 울산화력발전소, 기장 고리원전 및 관계시설 주변해역)
- 에너지자원 부존량(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풍속 6m/s 이상) 등의 자원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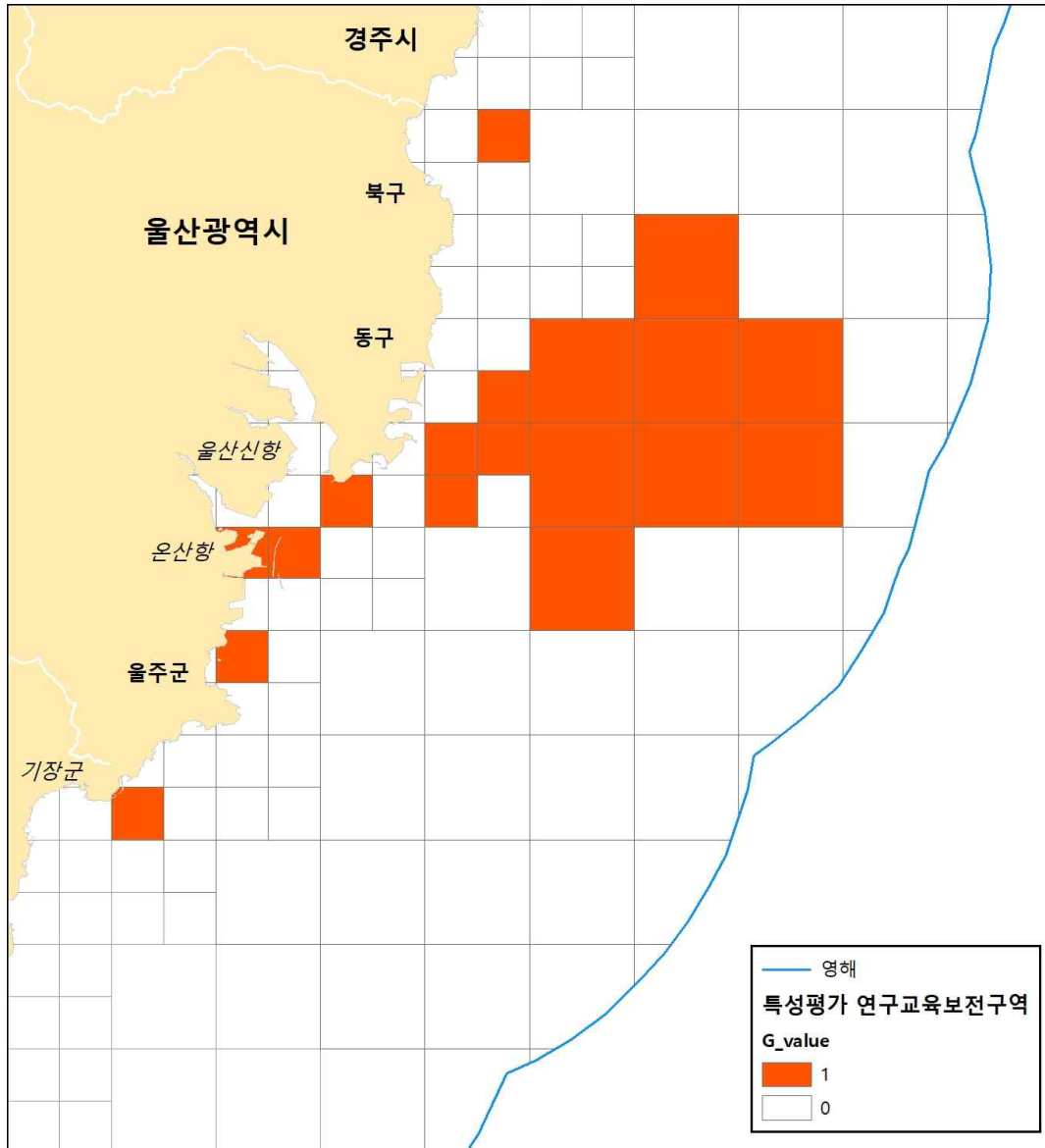
〈그림 3-7〉 울산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공간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목록 : 해양관측 부이(국립해양조사원), 직선기점 등

〈그림 3-8〉 울산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상사격 훈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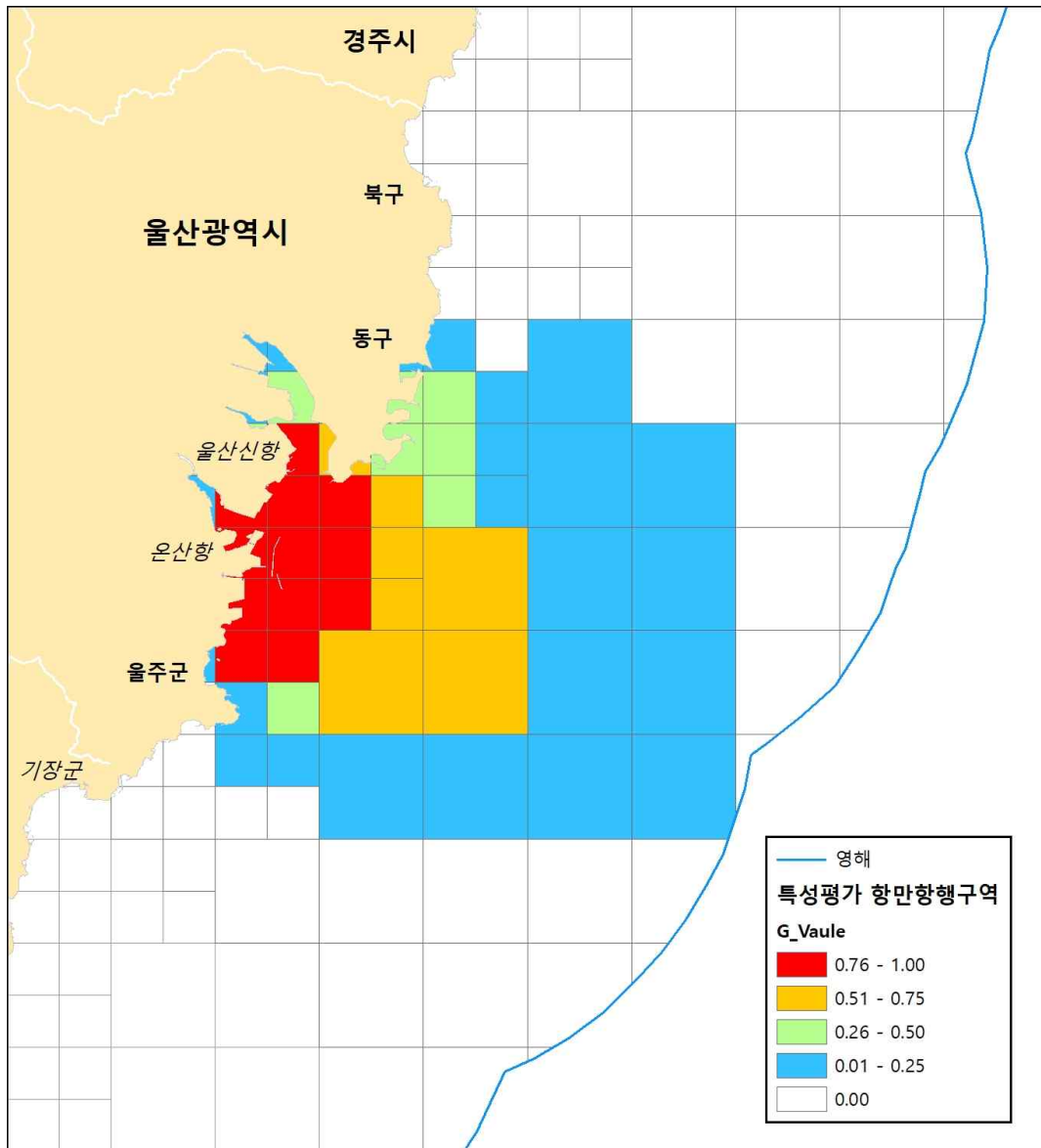
〈그림 3-9〉 울산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무역항 및 항만구역, 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등

〈그림 3-10〉 울산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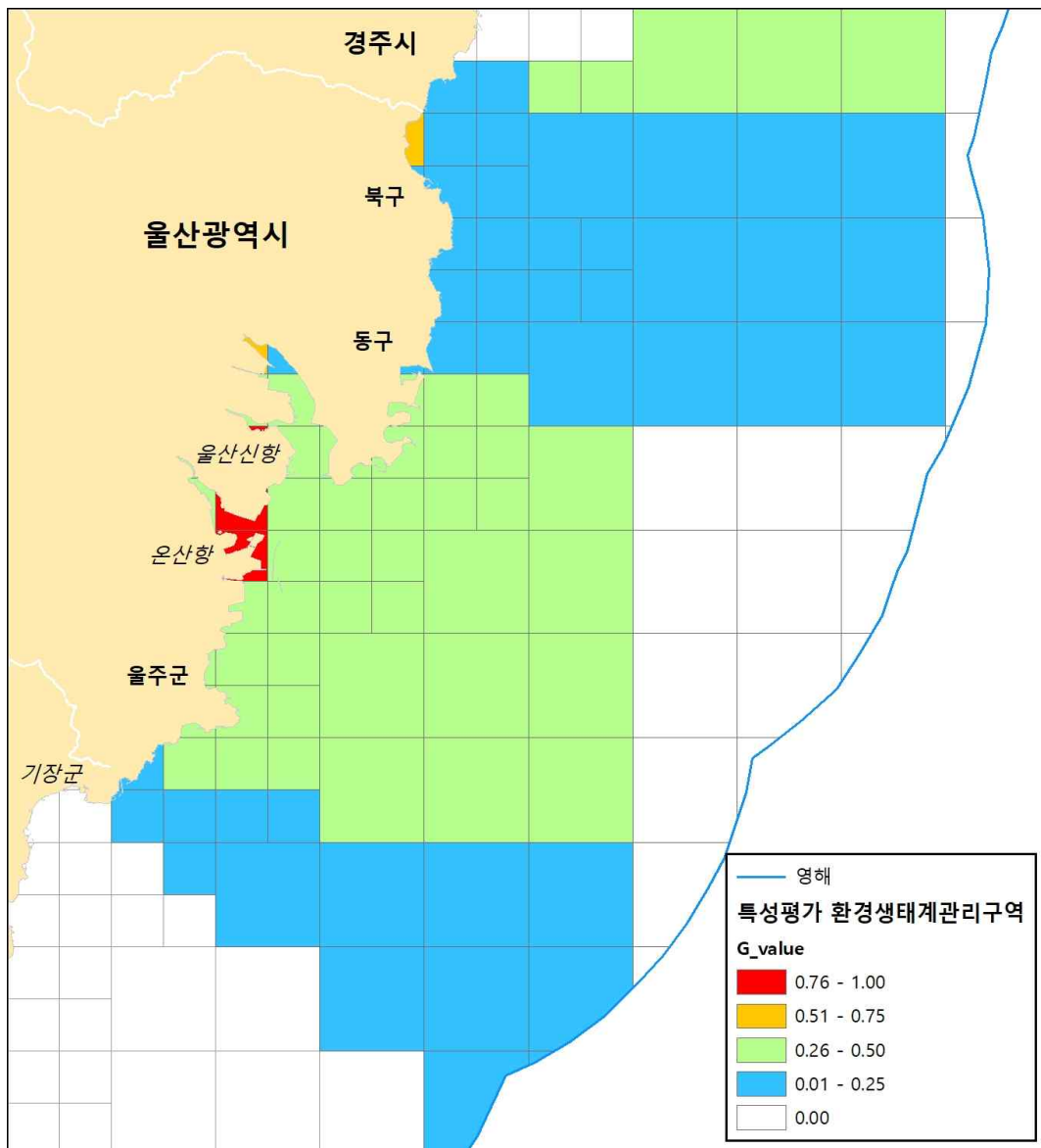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갯벌, 해양보호생물 출현 정보, 해양생태도, 해양생물다양성지수\*, 연안·해양보호구역(천연기념물 등) 등

\* 해양환경공단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2017 - 2019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종다양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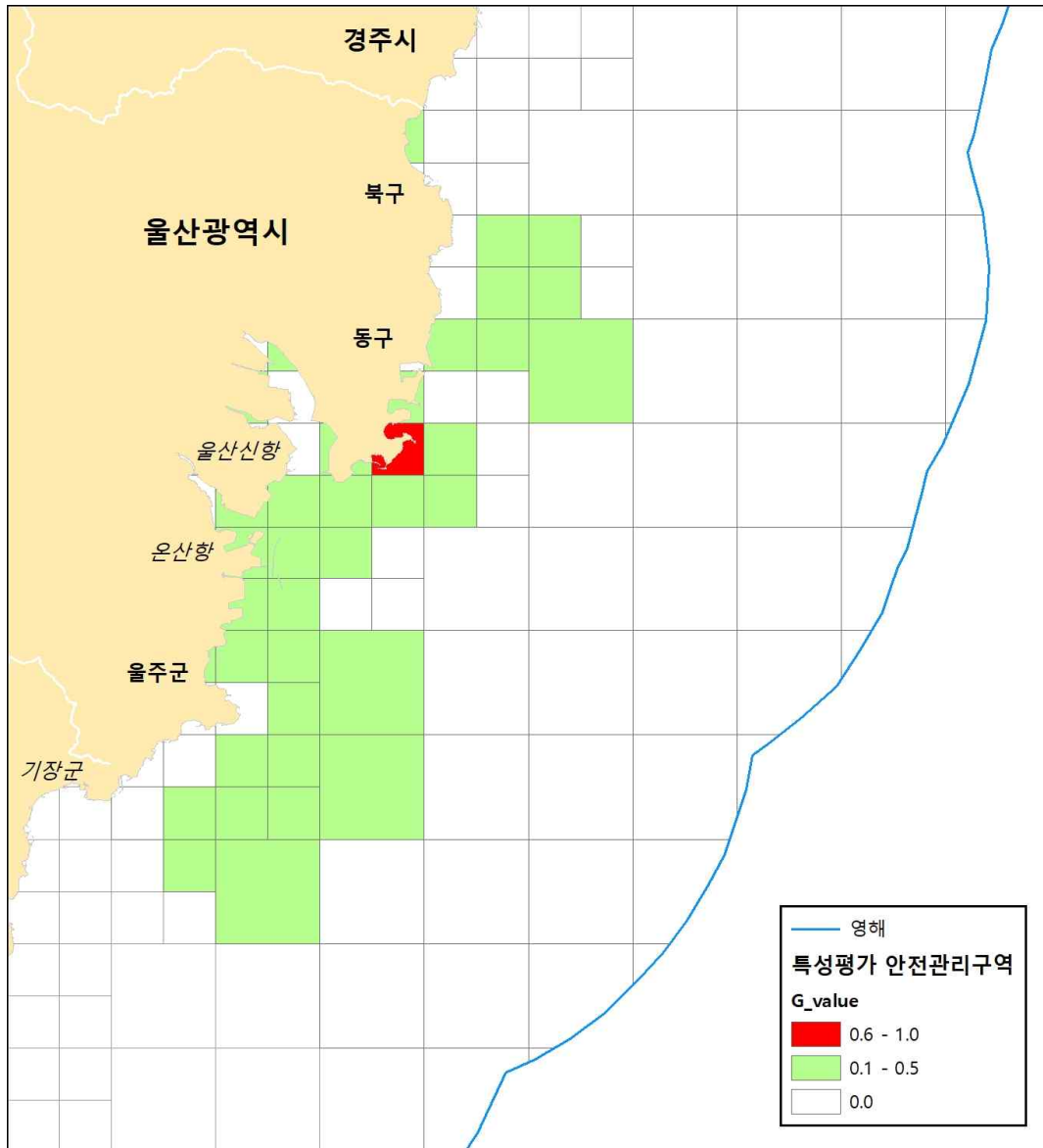
〈그림 3-11〉 울산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상층 구역, 해수욕장 주변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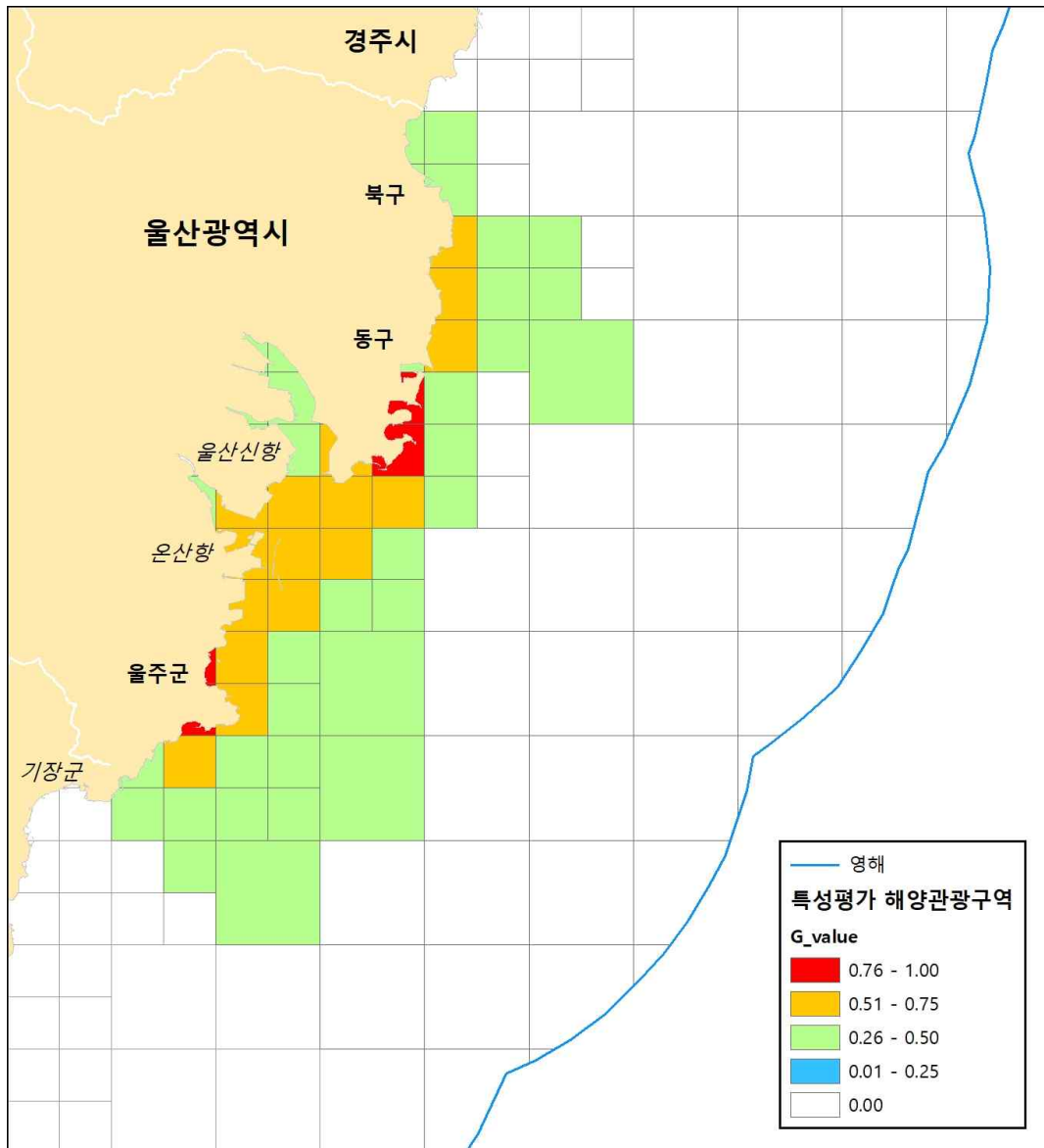
〈그림 3-12〉 울산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마리나항만 및 시설, 갯바위 혹은 선상 낚시포인트, V-PASS 기반 낚시활동 분석 정보 등

〈그림 3-13〉 울산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 □ 해양용도구역 개요

-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구역
  -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인간활동을 위해 외부 영향에 대응하고, 해양자원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구역
  -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 간 이해상충·갈등을 완화하고, 이용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규명
- (해양용도구역 구획·지정) 다양한 핵심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해양공간특성 분석, 상충 분석 및 비교(생태연결성, 정책수요 및 계획 등)를 통해 구획
  - 9개 해양용도구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나, 3차원적이고 유동적인 해양의 특성상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 (해양용도구역 관리) 지정된 개별 용도구역의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
  - 해당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고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
  -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
    -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제2항

### □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 해양용도구역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현황(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해양생태특성 및 해양자원 분포, 현재 이용·활동 상태, 미래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하여 설정
  - 이를 위해 가용한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의 상태 및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 (특성평가) 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임.
- (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현재 해양에서 일어나 이용·개발·보전 활동은 관련 개별 법률·제도에 따른 구역에서 이루어기 때문에 관련 설정 내용 검토
  - 기존 구역과 상호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 지정 혹은 고시된 구역을 고려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지속가능한 해양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 생태적 특성 파악이 중요

- 해양생물·생태적 특성<sup>18)</sup>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서식지와 관련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해양학적 및 물리적 특성(수심, 해류, 퇴적물 등)을 함께 고려 가능
- (해양자원 분포)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이 위치한 공간과 분포를 확인
- (현재 이용·활동 상태) 어업, 항만·항행, 에너지 개발, 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레저, 군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시·공간적 분포, 이용 강도, 환경영향 특성을 확인
- (미래 이용 수요) 지역의 이용·개발 수요,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등을 검토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의미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을 이용·보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 (예) 어업활동, 해양레저·관광, 에너지 개발 등
법정구역	기존 법 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 해양공간계획법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역 고려 * (예) 각종 연안·해양보호구역, 법 시행 당시 법적 권한 설정이 이루어진 구역(「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3~4조) 등
해양생태계 특성	생태적 가치와 특정 생태학적 특성 고려 * (예) 해조류·조류 등 서식지, 산란지,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공간(Delta+) 등
현재 이용·활동	현재 이용과 활동을 토대로 경제적 기회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어선 어업, 양식, 해사채취, 항행, 관광 등
미래 이용 수요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의 용도와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된 사업, 잠재적 수요와 활동을 평가하여 미래 이용기회를 식별 * (예) 항만·어항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관련 입지, 관광·레저 관련계획 등

-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은 각 용도별 특성에 따라 필수적 고려사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 또는 준하는 구역으로 구분

\*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 현재 데이터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항목

18) CBD EBSA 선정 기준 : 고유성 및 희귀성, 생물종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요성, 멸종위기종·감소종·서식지 중요성, 취약성·민감성·낮은 회복력, 생물학적 생산성,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성

이더라도(수산자원 분포, 해양에너지 분포 등) 향후 지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

\*\* 「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부칙 3조) 및 관련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부칙 4조), 해당 용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 등

- 現 수준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 반영(지역협의회 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어업활동 보호구역	가. 수산자원량 및 분포 나. 수산자원 산란지 및 서식지 다. 어업생산량 라. 면허어업구역 마. 인공어초 바. 조업 특성 및 분포	가.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나. 「수산업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라.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마. 그 밖에 어업활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골재·광물 자원 개발 구역	가. 골재채취허가 지역 및 광물자원개발지역 나.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개발로 인한 해저 지형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다.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분포	가.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4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다. 「광업법」제3조제3호의 광업권(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광업법」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라. 그 밖에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가. 에너지의 탐사·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현황 라. 전력망의 송·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구역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라. 그 밖에 에너지 탐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해양관광 구역	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 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 다. 휴양·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 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	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과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나.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 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마.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 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바.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변지역, 습지개선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복원사업 지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의 그 주변해역 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 사.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 자.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카. 그 밖에 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가.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부이의 위치 및 분포 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기상관측 등 연구·교육활동 다.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등 영토 관리 현황 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경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교육활동 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해역 다. 그 밖에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항만·항행 구역	가. 지정 항로의 위치 나. 어선·선박의 통항 특성 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	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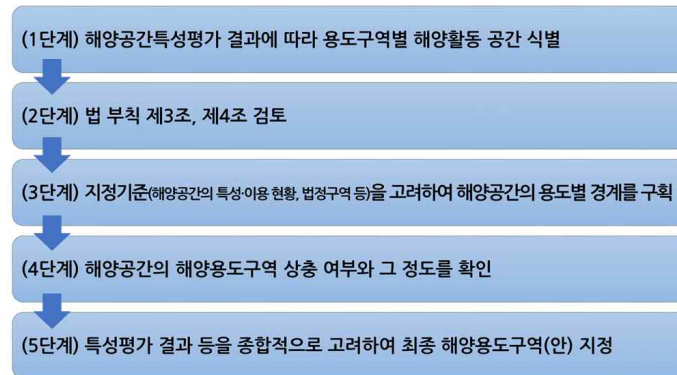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다른 통항분리수역 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군사활동 구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다. 그 밖에 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안전관리 구역	가.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越流)하여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다. 항해 또는 정박 중 다른 선박·시설과 부딪히거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 라. 조력 및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 해역 및 그 주변 해역 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최근거리로 인접한 바닷가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나.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다.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라.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마. 그 밖에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

□ 해양용도구역 구획 및 지정

-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구획과 상충·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은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 이후 해양용도구역 상호 간의 양립가능성 및 상충여부 등을 비교·분석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을 정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4〉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 (1단계) 특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구역별 해양활동 공간 식별
- (2단계)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 법 시행 시점에 「연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 지정 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개별 법률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거나 구역에서 활동 허가 기간이 지나면 「해양공간 계획법」에 따른 특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으로 변경
- (3단계)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상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
- (4단계)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sup>19)</sup>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각 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현황, 해양 활동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음.
- (5단계) 특성평가 결과와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해양용도구역 지정

19)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근거	해양용도구역	연안해역기능구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항만·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근거	해양용도구역	기존 법률에 따른 구역, 지역 등
「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4조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굴권 설정 구역(「광업법」 제9조의2제2호)</li> <li>골재채취 예정지(「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li> <li>골재채취단지(「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li> <li>채취권 설정 구역(「해저광물자원 개발법」)</li> </ul>
	환경·생태계관리구역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li> <li>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li> </ul>
	항만·항행구역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li> <li>신항만건설예정지역(「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li> <li>정박지·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11호)</li> <li>교통안전특정해역·항로·통항분리수역(「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8조제1항)</li> </ul>
	군사활동구역(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li> </ul>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어 중첩되는 경우, 특성평가 결과, 법·제도적 기준(법률에 따른 규제 및 조장 사항 포함), 해양환경·생태 특성, 주변해역의 이용·개발 현황과 미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선택

- 용도를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 지역협의회, 전문가 자문,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활용 가능
  - \*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서 R&D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음.
- 유보해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해양공간에 보전, 이용,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밀 특성평가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
-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음. 이 3개 용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시 조정이 필요 없음.
  - 안전관리구역은 해양활동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개별 해양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군사활동구역은 국가의 안보, 군사시설·중요시설의 보호, 군사 훈련을 위하여 설정한 해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교육보전구역은 보전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으로 시험, 관찰, 샘플링 등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해양교육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함. 주로 해양 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경로 및 회유 경로, 산란지, 서식지 등이 이에 해당함.
- 9개 해양용도구역 중 3개 해양용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복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의 조정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7〉 항만·항행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항만·항행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기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교통안전 특정해역 등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석정보	항로(지정항로, 통항분리제도 등),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어업활동 <sup>2</sup>
		○		○	항만항행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문화재관리구역,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호구,	특성평가 (3등급 <sup>1</sup> 이상)	항로(지정항로, 통항분리제도 등),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교통안전 특정해역	

항만·항행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교통안전 특정해역 등	
	해양생태보호구)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환경생태
		○		○	항만항행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2등급), 낚시활동구역	항로(지정항로, 통항분리제도 등),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해양관광
		○		○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등	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항로(지정항로, 통항분리제도 등),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골재광물
		○		○	항만항행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항로(지정항로, 통항분리제도 등),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교통안전 특정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sup>3)</sup>
		○	○		항만항행
	○			○	에너지
		○		○	항만항행

- 주 : 1) 3등급 이상의 해양공간은 특성평가 결과 최종값을 5등급으로 구분 시 3, 4, 5 등급에 해당하는 격자임.  
 2) 면허어업이 존재하는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양용도구역 조정 필요  
 3)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해양공간의 특성,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환경·생태계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 분석정보	문화재관리구역,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환경생태
		○	○		환경생태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2등급), 낚시활동구역	문화재관리구역,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부존량, 기 채취해역)	문화재관리구역,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정밀용도구획 필요
		○	○		환경생태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문화재관리구역,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환경생태 <sup>1</sup>
		○	○		환경생태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주 : 에너지 활동이 주변해역에 인접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 면밀히 검토 필요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어업활동보호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어업활동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 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2등급), 낚시활동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 분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해양관광 <sup>1</sup>
		○	○		어업활동
	○			○	해양관광
		○		○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 분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sup>2</sup>
		○	○		어업활동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과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 분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sup>3</sup>
		○	○		어업활동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과비교검토

주 : 1) 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2)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 울산의 경우 채굴권 설정 광구 내 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경우, 해양공간에서 채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첩된 공간의 최종 용도를 어업활동 조절

3) 에너지 활동이 주변해역에 인접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 면밀히 검토 필요

〈표 3-10〉 해양관광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해양관광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해양관광 기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골재·광 물자원개 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해수욕장, 마리아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낙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 의 특성	○		○		골재광물 <sup>1</sup>
	○	○	○	○	해양관광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문화서비스)
에너지 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 자원 부존량 등), 발 전사업 허가현황 등	해수욕장, 마리아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낙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 의 특성	○		○		에너지 <sup>1</sup>
	○	○	○	○	해양관광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생태계서비스)

주 :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또한 해당 해양공간을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골재·광물 기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에너지개발 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에너 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sup>1</sup>
	○	○	○	○	골재광물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생태계서비스)

주 :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또한 해당 해양공간을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용도구역 관리

- 용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개별 용도구역에서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명시하거나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에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조치 사항을 제시
  - 용도구역 설정 이후에는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안 및 조치 사항
    - 해양용도구역 내 인간 활동의 수용 가능성 수준과 관리 조치 등
    - 해양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활동(해양시설<sup>20</sup>) 설치 및 고정적 활동)과 그 외 활동은 용도구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
  - 각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하되, 용도 중첩 시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할 것
    - 해당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8조(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용도 중첩 시 중첩공간 도출 및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중첩 공간 확인) 용도구역 자료 특성별 분류 구분, 용도구역별 1:1 중첩
  - (2단계 : 중첩 공간 중 관리가 필요한 공간 선정) 관리구역 도출
    - ① 공간의 지역성 :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대상구역의 최종 결과를 도출함
    - ② 관리의 실효성 :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코드 부여
    - ③ 정보의 신뢰성 : 데이터 해상도 및 기술력
  - (3단계 : 중첩 공간의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 ①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 ② 공간 이용의 밀집도 : 특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우세한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③ 공간관리의 효율성 : 용도구역 중 보전과 이용의 공간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보전의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예)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의 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우선함.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서식지의 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어업활동 등 해양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20) 「해사안전법」제2조 15.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함.

###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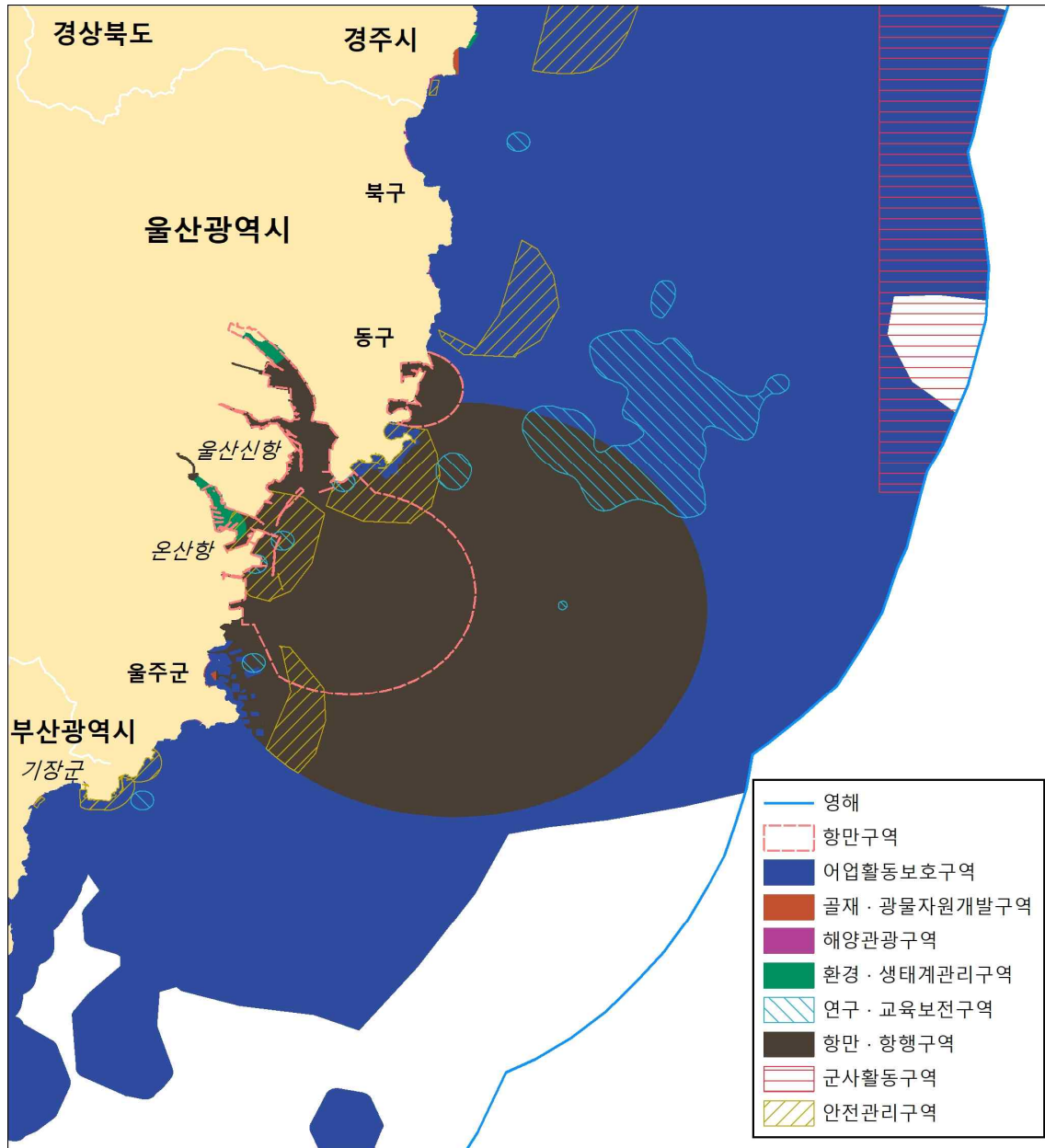
#### □ 해양용도구역 지정 개요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총 1,376.64km<sup>2</sup>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12.59km<sup>2</sup>)
    -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구역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변경하고, 그 외 해양공간 (영해 내)은 시·도지사가 수립·변경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 울산광역시 : 영해 중 항만구역 제외지역(1,264.04km<sup>2</sup>).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8개 용도구역으로 구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간 없음)
  - \* 유보해역 : 특성평가를 수행한 지역이라도 특정 해양이용 행위의 활동 밀도가 낮거나, 해양환경, 생태, 사회, 경제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실익이 없는 공간(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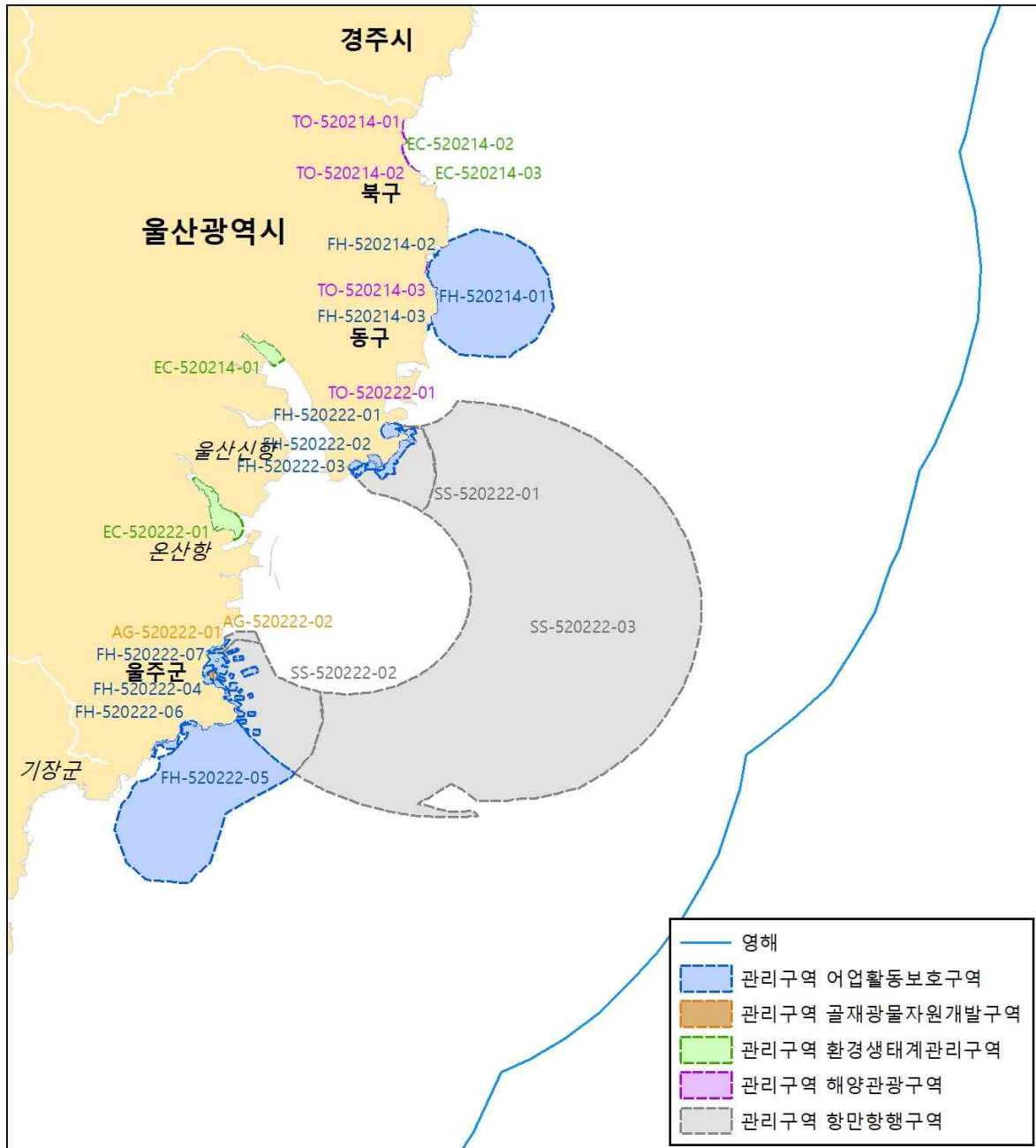
〈표 3-12〉 울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울산		면적(km <sup>2</sup> )	비중(%)	
합계		1,376.64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840.80	61.0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0.41	0.03	
	에너지개발구역	-	-	
	해양관광구역	0.40	0.0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3.60	0.26	
	항만·항행구역	369.06	26.81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61.71	4.48
		군사활동구역	107.46	7.81
		안전관리구역	68.37	4.97
(중복구역)		(218.51)	(15.87)	
소계		1,233.31	89.59	
유보해역		143.33	10.41	

〈그림 3-15〉 울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그림 3-16〉 울산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 1) 어업활동보호구역

□ (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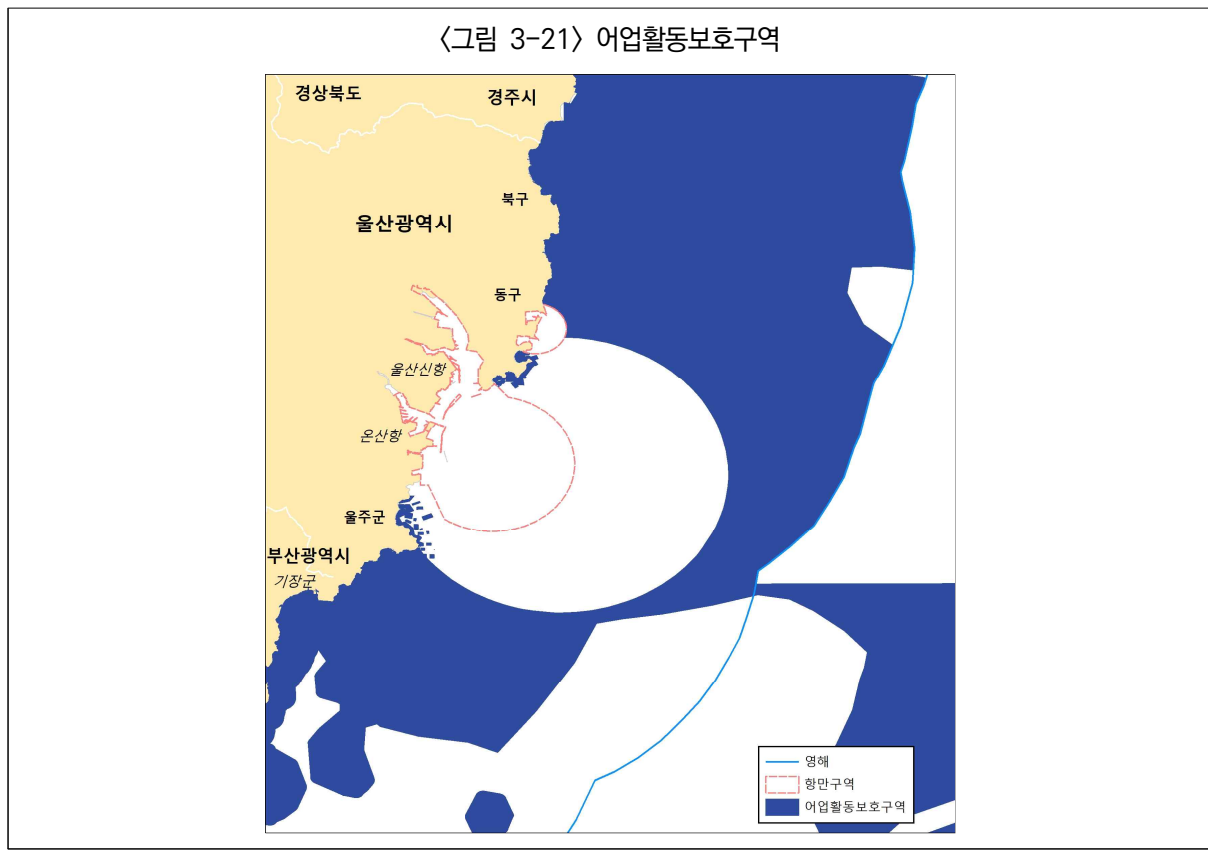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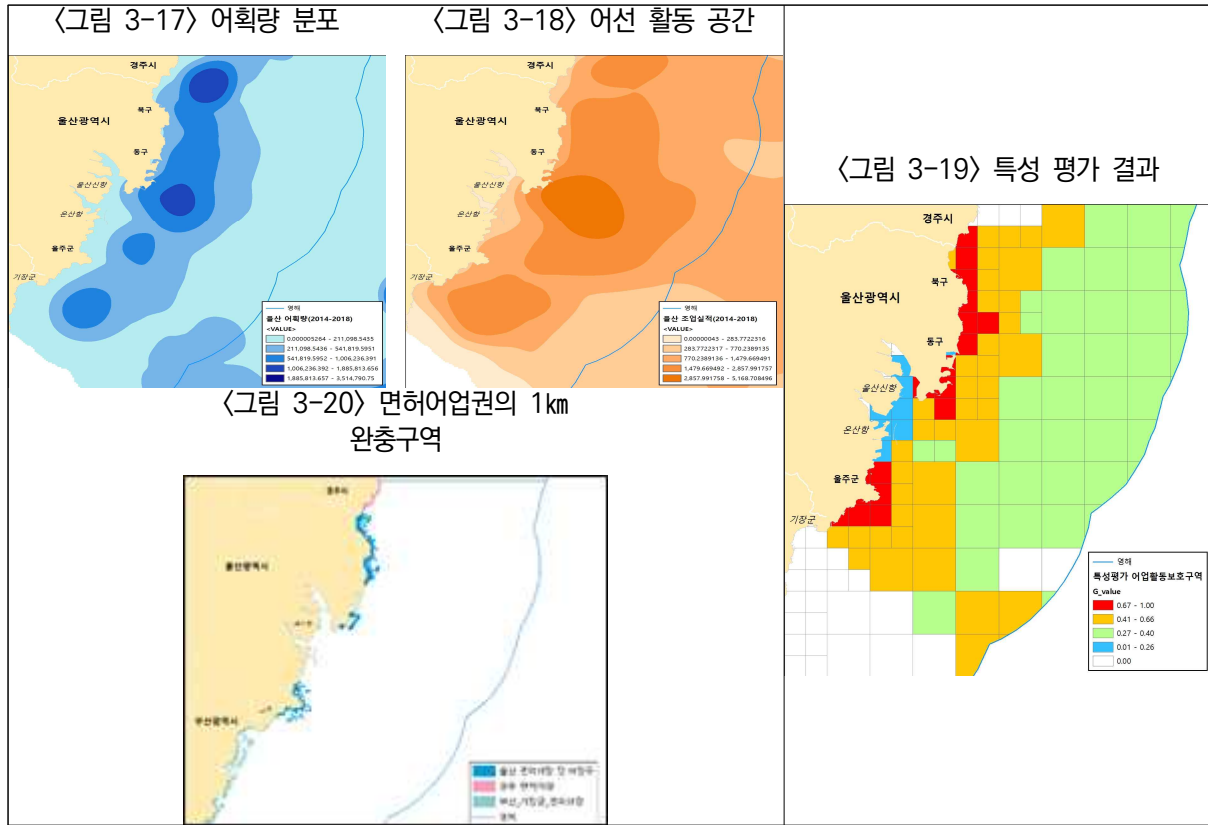
- 마을어업, 양식업 등을 포함하여,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역
- 어업생산량이 높거나, 조업 활동이 활발하여 어업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자원 조성, 수산생물의 산란지 혹은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산란지·서식지 보호에 따른 생산량 지속으로 지역 경제적 이익 증진
-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업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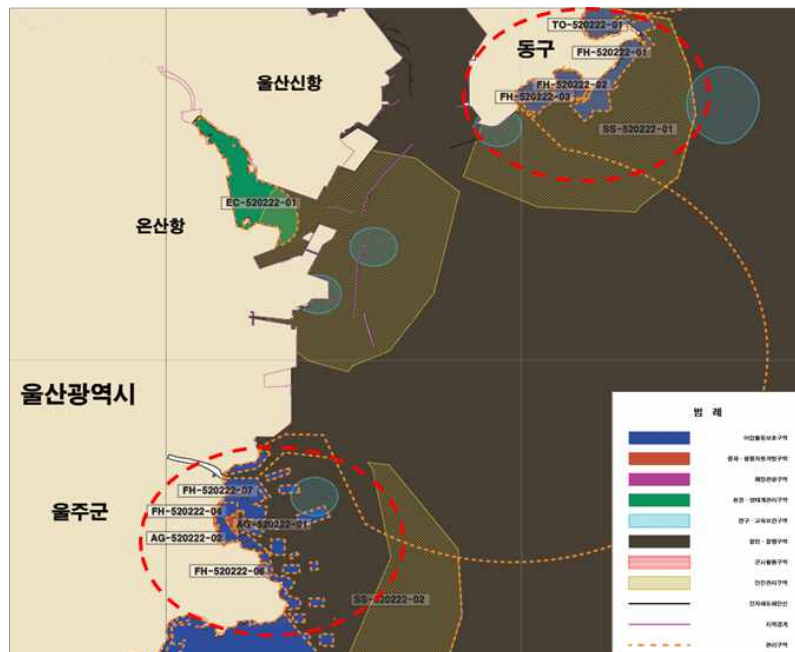
- 조업활동의 분포와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는 조업 위치 기반 연근해 어획량, 어업 밀집도 (V-PASS) 정보와 마을어장 및 양식장(면허어업)을 고려하여 설정
  -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격자를 우선적으로 포함
    - 잡는 어업 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와 어선 밀집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면허어업권이 분포한 공간으로 확인
    - 어업활동보호구역 구획 시 마을어업 및 양식업 보호를 위해 면허시설 주변 해역 1km를 포함하여 배분



□ 용도 상충 조정

- 울산해역에 존재하는 교통안전특정해역\*21)의 범위 안에 면허어장, 국가어항 등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어업활동의 유지·관리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으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양용도구역 조정 필요
  -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의 설치에 제한을 받으며, 어업면허 등의 허가를 받는 경우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필요<sup>22)</sup>
- 낚시어선 밀집구역, 관광 시설(당사해양낚시공원, 가두리낚시 체험장 등)의 활용이 어업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설정
- 면허어업과 채굴권이 동시에 설정된 공간은 법적권한 및 이용행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
- 울산 해역의 특성과 지역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 해수욕장 또는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해수욕장구에 마을어장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수욕장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구역으로 지정

〈그림 3-22〉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21)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북위 35도24분37초, 동경 129도27분52초를 중심으로 반지름 6.0마일의 원호 및 울산항 항계선이 이루는 해역'  
 22) 해양수산부, 2021, 「해사안전법」

(3) 공간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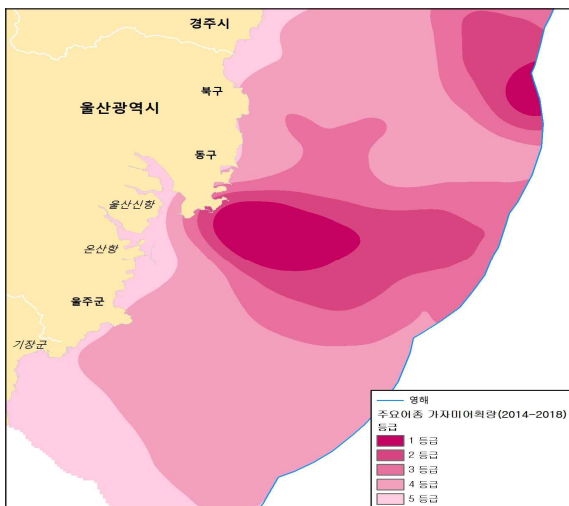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 산란·서식 환경 보호와 수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권장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에너지개발 등)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
  -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등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가능한 경우를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수산자원 서식·산란지 등의 입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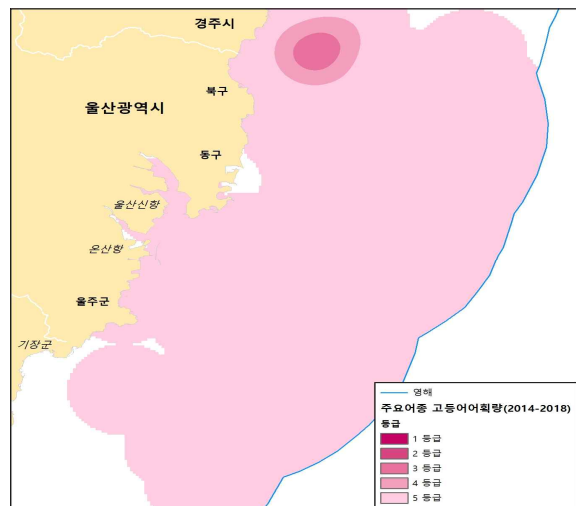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동 구역 대중성 어종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의 모니터링 및 위협 요인 분석
  - 가자미, 고등어, 오징어, 멸치, 정어리 등 어종의 주요 서식지·산란지의 위협 요인(수산 자원 고갈, 기후변화, 바다오염 및 쓰레기 등) 분석 및 규명
  - 인공어초, 바다목장 주변 해역의 낚시 활동 모니터링 및 공간관리 수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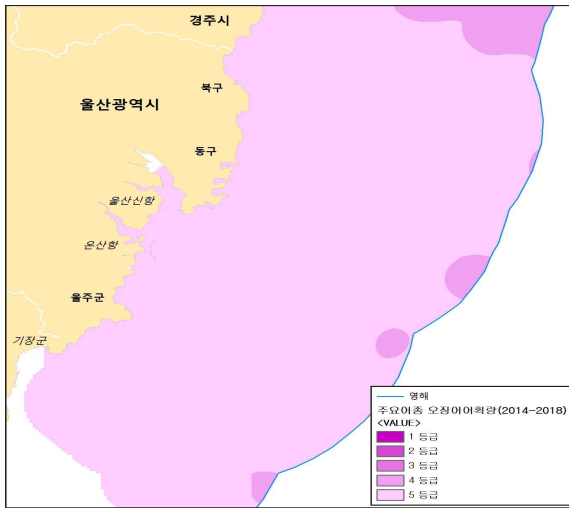
〈그림 3-23〉 가자미 어획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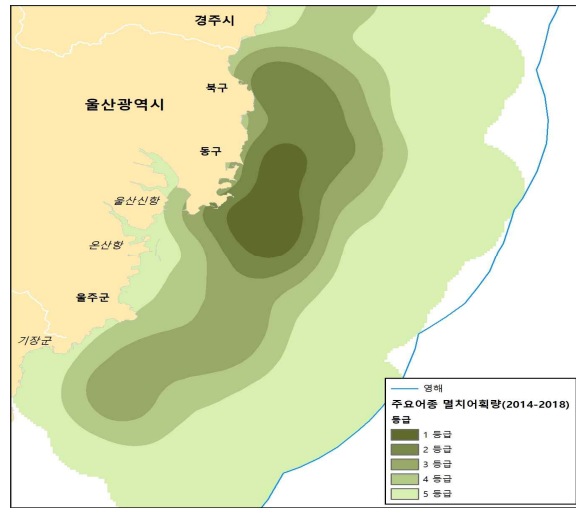
〈그림 3-24〉 고등어 어획량



〈그림 3-25〉 오징어 어획량



〈그림 3-26〉 멸치 어획량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해양관광 및 항만·항행수요가 높으므로 조화로운 해양공간 이용·관리

- 울산연안에는 낚시활동 밀집구역, 항로 등의 항행구역이 다수 분포하므로 어업활동의 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 필요
- 어업활동 및 어획량이 높은 해역이 대형선박 통항 밀집해역과 중첩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필요
- 수산자원의 생애주기별(산란 및 서식 환경 등), 어종별 공간 분포 조사
- 어업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 계획 변경 수요와 행위 상충해결을 위한 어업지역, 생산중, 생산량 정밀 자료 확보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주변해역에서의 과도한 낚시 활동을 관리하고, 필요시 수산자원관리수면 등 지정 검토

□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어업권 설정 해역은 현재 어업활동의 유지와 해양 환경의 보호를 위한 기능을 우선으로 두어 관리

- 어업권의 설정이 항행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양용도구역 조정 필요
  -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의 설치에 제한을 받으며, 어업면허 등의 허가를 받는 경우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필요<sup>23)</sup>

23) 해양수산부, 2021, 「해사안전법」

##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울산 해역에는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통안전특정해역, 항로 등이 다수 분포하며 해양레저, 낚시 등 관광활동의 밀도가 높으므로 관리 필요
  - 조업 및 양식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항만·항행, 해양관광 특성이 높은 구역이 중첩하는 구역이 다수 존재
  - 어업활동보호구역 일부가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개발 활동과 어업활동 간 상충이 발생 가능하므로 어업권 허가기간 만료 이후 조정 필요
  - 채굴권이 설정된 지역에 위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이용·개발 활동과 어업활동 간 상충이 발생 가능하므로 채굴권 혹은 어업권 허가기간 만료 이후 조정이 필요
  - 낚시어선 밀집구역, 관광 시설(당사해양낚시공원, 가두리낚시 체험장 등)의 활용이 어업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어업과 관광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 필요

〈그림 3-27〉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3〉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구분		면적(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어업활동 보호구역 (10개소)	FH-520214-01	29.0	해양관광 (낚시어선 밀집구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 및 협동양식장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 밀집구역이 존재
	FH-520214-02	0.001	해양관광 (당사해양낚시공원)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 및 협동양식장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당사해양낚시공원시설이 존재
	FH-520214-03	0.04	해양관광 (보밀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어촌뉴딜300사업)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이 위치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보밀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 계획, 어촌뉴딜300사업 진행
	FH-520222-01	1.74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맨손, 나잠)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FH-520222-02	0.49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관광 (방어진항 어촌관광구역 지정 추진)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국가어항이 존재하며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방어진항 관광어항 육성 계획(어촌관광구역 지정 추진)
	FH-520222-03	0.41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 및 복합양식(미역, 우렁쉥이)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어촌뉴딜사업(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 예정지
	FH-520222-04	0.35	골재광물 (채굴권) 해양관광 (해수욕장구)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③해양관광 ④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방어진-100217, 2016.04.02 ~ 2036. 04.01, 고령토) 설정지역 <input type="checkbox"/> 솔개해변(해수욕장구)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FH-520222-	37.41	해양관광	①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 패류양식(전복,

구분		면적(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05		(낙시어선밀집구역)	②해양관광	소라 등), 복합양식(미역, 다시마)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낙시어선 밀집구역이 존재
	FH-520222-06	0.01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관광 (가두리낙시체험장)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 패류양식(전복, 소라 등), 복합양식(미역, 다시마)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송정방파제 내항 가두리낙시 체험장 존재
	FH-520222-07	2.41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관광 (낙시어선밀집구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 패류양식(전복, 소라 등), 복합양식(미역, 다시마)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낙시어선 밀집구역이 존재

##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정의)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바닷모래 및 광물 채취와 어업 활동 간 갈등 완화

###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광업권(탐사권, 채굴권) 설정 현황, 해저광구, 광물자원 부존량(해저석탄, 탄화수소 등)을 기준으로 어업활동, 환경생태, 항만·항행활동과 상충 조정하여 설정

울산 해역에 2건의 채굴권<sup>24)</sup>이 설정된 광구가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 광업권 설정 구역은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전 해양용도구역의 변경 필요성 사전 검토 필요

24) 「해양공간계획법」부칙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 :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 광업권 설정 해역의 환경친화적 채취 활동

- 채취활동 이외의 시간을 달리하여 공존 가능한 해양이용 행위(어업, 항행, 관광 등)는 허용
- 광업권 설정 구역의 경우,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전 해양용도구역의 변경 필요성 사전 검토
  - \* 핵심활동 종료 시 해당 용도구역의 유지와 변경에 대한 검토 후 조치<sup>25)</sup>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채굴권 설정 광구에 대해 인근 해양 관광과 해양생태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채굴계획 인가

##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 울산의 채굴권 내 또는 인근에는 양식장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채굴권이 중첩된 공간이 있어 관리 필요

- 울주군 솔개·진해해수욕장과 인근 해역에 지정되어 있는 채굴권 설정구역의 중간에 면허어업권 존재
  - 면허어업권이 지정된 곳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하였으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골재·광물자원개발로 지정
  - 울주군 채굴권 설정구역은 양식장이 분포하여 활동 간 상충이 발생 가능하므로, 채굴권 허가기간 만료 이후 조정이 필요
- 채굴권이 설정된 광구 중 솔개해변·진해해수욕장에 해당하는 공간은 법 부칙에 따라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반영하였으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해양관광으로 지정
- 채굴권이 설정된 광구 중 해상에 해당하는 공간(면허어업권 설정구역 제외)은 법 부칙에 따라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항만항행으로 지정

25)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제14조(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3) 해양관광구역

□ (정의) 해양관광·레저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레저, 해양친수, 마리나, 크루즈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수요 충족 및 핵심 공간의 해양 관광 활동 증진

##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시설 및 항만, 낚시(갯바위, 선상) 활동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마리나 예정구역(당사)은 특성평가에 반영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용도구역 지정 시 미반영

\* 속도 알고리즘(2knot 이하)을 통한 낚시활동 공간 추출 : 동진항, 온산항, 울주군 대승리 및 신암리, 주전해수욕장 앞바다의 낚시 활동 집중, 울산 낚시어선 약 44척('20)(전국 4,536척)<sup>26)</sup>

## □ 용도 상충 조정

○ 지정 해수욕장 혹은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해수욕장구에 마을어장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수욕장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 신명정자해변, 강동몽돌해변, 주전몽돌해변, 일산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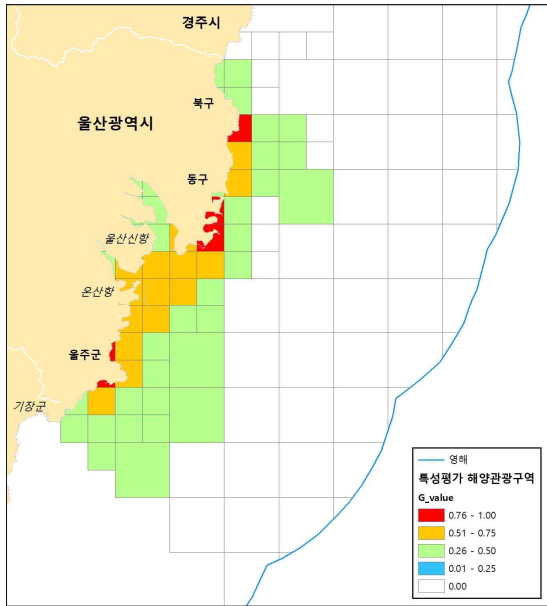
○ 낚시활동 집중공간과 타 이용·보전용도(항행, 어업)가 중복 시, 개별 용도로 조정

〈그림 3-32〉 해양관광 낚시 활동 현황



26) 해수부, 2021, 2020년 낚시어선업 현황

〈그림 3-33〉 특성평가 결과



〈그림 3-34〉 해양관광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다각적인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레저활동 활성화를 통한 해양의 잠재적 가치 창출

○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행위 및 개발 행위 허용\*

\* 낚시 활동을 위한 시설,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과 시설, 어촌 체험과 관광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유람선·잠수함·크루즈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생태관광에 적합한 시설물, 해수욕장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적 투자 및 개발 공간 확보, 투자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해양 관광활동 공간분석(빅데이터 분석)과 정보 인프라 구축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마리나 개발 시(당사) 접근성, 중간 기항지 연계, 해양활동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  
- 마리나 항만 조성에 따른 매립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도록 유도

○ 해수욕장 시설 정비 및 해양생태(고래)·해양환경·해양문화(어촌)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 고래생태체험장 조성 사업, 장생포 근린공원 등 고래문화마을 조성과 주변 해양관광지와 연계

- 주전항, 우가항 등 어촌체험 관광 활성화

- 해양자원, 해양성 기후를 활용한 해양친수·해양치유 공간 확보 추진
  - 해양친수 : 도심 해양워터프론트지구 조성(장생포, 방어진) 등
  - 해양치유 : 해수, 해풍,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 회복 및 관광 등 활동
- 해양관광의 잠재적 영향 분석 및 관리
  - 낚시활동과 방문객 증가로 인한 해양서식지 압력 및 영향 분석
  -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변화를 사업 시행 이전에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해양공간 이용·개발 유도
- 개발 이후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 마련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해수욕장 주변에 마을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설정

〈그림 3-35〉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5〉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구분		면적(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해양관광 구역 (4개소)	TO-520214-01	0.06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신명정자해변(해수욕장구)이 존재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함
	TO-520214-02	0.09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강동몽돌해변(해수욕장구)이 존재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함
	TO-520214-03	0.06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주전몽돌해변(해수욕장구)이 존재하며 낚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함
	TO-520222-01	0.05	어업활동 (마을어장)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일산해수욕장(지정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구)이 존재하며 낚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에 위치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정의)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해양환경·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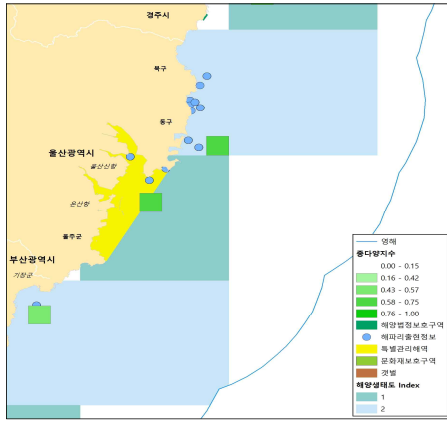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층 조정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 천연기념물, 절대보전 무인도서, 울산시 기념물, 생태·경관 보전지역, 연안해역기능구\* 등을 고려하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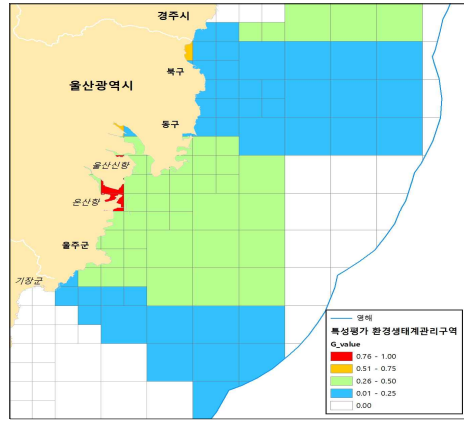
○ 천연기념물 및 절대보전 무인도서(목도), 울산시 기념물(강동 화암주상절리, 곽암, 처용암), 생태·경관 보전지역(태화강 하구)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 목도 상록수림(해양문화자원보호구 및 해양생태보호구), 처용암(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강동 화암 주상절리(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곽암(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태화강 하구(해양생태계 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그림 3-36〉 해양생물다양성 지수 등



〈그림 3-37〉 특성평가 결과



〈그림 3-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용도 상충 조정

- 항만구역 혹은 마을어장(종묘채포어업 포함)이 타법률에서 정한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기능구와 중첩되는 경우,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정하여 관리
  - 목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절대보전 무인도서, 해양문화자원보호구 및 해양생태보호구), 처용암(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강동 화암주상절리(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곽암(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태화강(해양생태계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환경·생태계 보호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권장

\*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을 유지·증지하는 과정에서 연안 및 해양으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편익(자원공급, 기후조절, 관광·문화, 생물다양성 유지 등)

- 시·공간적으로 공존 가능한 수산, 항행, 관광, 연구·조사 등 양립 가능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골재채취, 에너지개발 등)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조치 제시 필요
  -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불가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산물 공급,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가능한 경우를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주 및 활동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연안·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분석 및 제거 추진
  - 해양오염·서식지 훼손, 자원이용실태 주기적 점검 등 해양생태계 취약성 분석
-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시 지역 시민 단체 참여
  - 해양환경·생태 모니터링의 비용, 복잡 다양성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모니터링은 그 효용성,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 시민 참여에 의한 해양생태 및 환경 자료 수집, 주요 이슈 발견 및 해결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보완 기대

- 해양생태계 서비스 규명 및 가치 평가 추진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를 산정하여 이용·개발 사업 및 정책 결정 기준으로 활용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항만·항행 특성(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이 높은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항만항행으로 선정
- 어업활동 특성(마을어장 등)이 높은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관리의 우선순위를 어업활동으로 선정

〈그림 3-39〉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6〉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구분		면적(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4개소)	EC-520214-01	1.09	어업활동 (종묘채포어업) 항만항행 (무역항)	①환경·생태계 ②어업활동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태화강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연안해역기능구(해양생태계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종묘채포어업 허가를 받은 구역(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94호)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
	EC-520214-02	0.01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환경·생태계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울산시 기념물(강동 화암주상절리)과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
	EC-520214-03	0.001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환경·생태계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울산시 기념물(괭암)과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
	EC-520222-01	2.41	항만항행 (무역항, 교통안전특정해역)	①환경·생태계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천연기념물 및 절대보전 무인도서(목도), 울산시 기념물(처용암), 연안해역기능구(해양문화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

5) 연구·교육보전구역

□ (정의)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보호생물(고래 등)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영해기점\* 관리
  - \* 직선기점 : 화암추, 범월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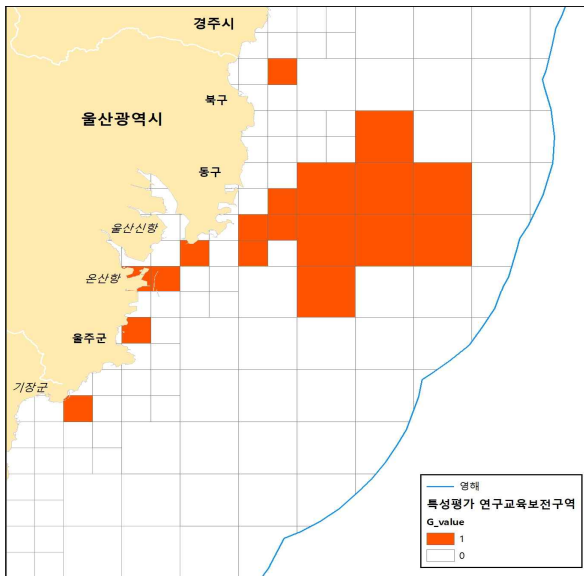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해양조사를 위한 해양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경로(흑범고래 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그림 3-40〉 영해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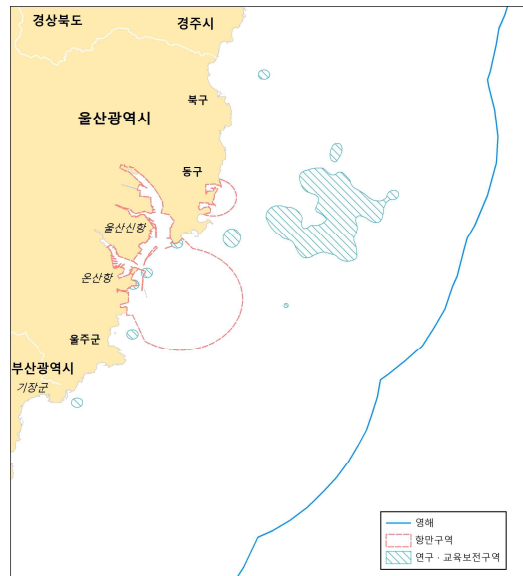
〈그림 3-43〉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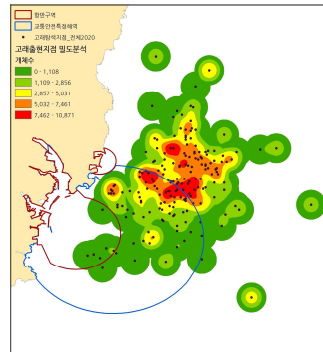
〈그림 3-41〉 해양관측부이



〈그림 3-44〉 연구·교육보전구역



〈그림 3-42〉 고래 출현지점



자료 : 장생포고래박물관, 2010-2020, 내부자료27)

27) 울산 연안(영해)의 10년(2010 - 2020) 고래목시관측 자료(흑범고래, 참돌고래, 밍크고래)에 대해 개체 수 보정을 실시한 후, 발견 지점의 밀집도와 개체수를 기중치로 한 분석을 수행하여 구간등급 5등급 중 상위 2등급에 해당하는 공간을 추출(자료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갖지 않아 상위 2등급을 반영)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영해기점 관리와 다양한 해양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인식 증진 활동을 보장
  - 서식 실태,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 활동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해양활동 가능
    - 해양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존이 가능한 해양이용·개발 활동 가능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영해기점의 실제적 관리 실현(연구조사, 주기적 점검\* 등)
  - \* 훼손 행위 방지, 오염행위 단속
- 해양관측 시설의 주기적 점검 및 해양보호생물(고래) 등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감시 등 추진
- 고래 출현 빈도가 높은 공간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다른 해양공간 이용행위와의 충돌 관리

6) 항만·항행구역

□ (정의)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항만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원활한 항만 개발·운영을 도모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 향후 항만·항행 기능 확대과정에서 타 용도와의 상충발생 최소화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항만구역, 항로, 정박지,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 특성(항적 등)\* 등을 고려한 구역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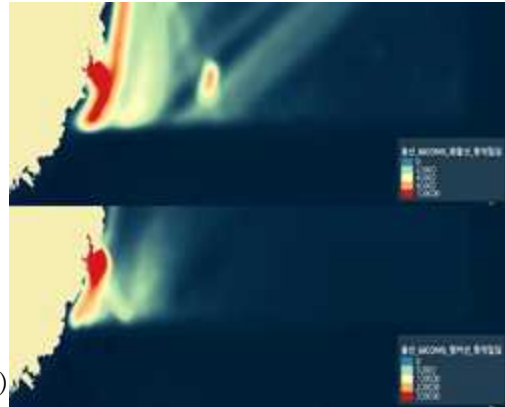
\* GICOMS 데이터를 통한 화물선 및 탱크선 이동 공간 추출 : 선박의 주 이동 경로 확인

〈그림 3-45〉 울산항 및 신항, 항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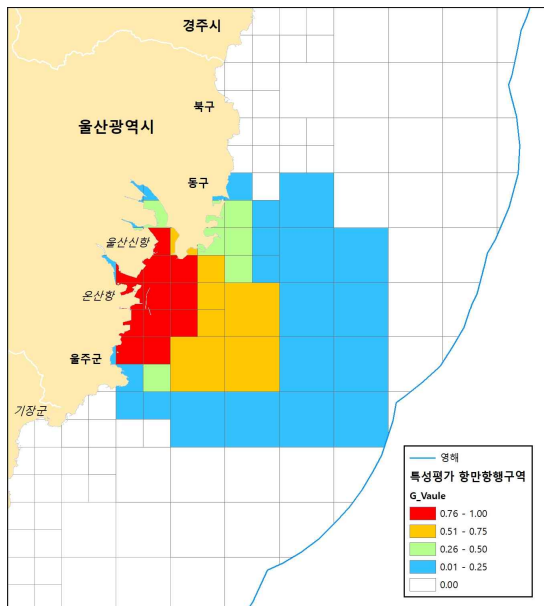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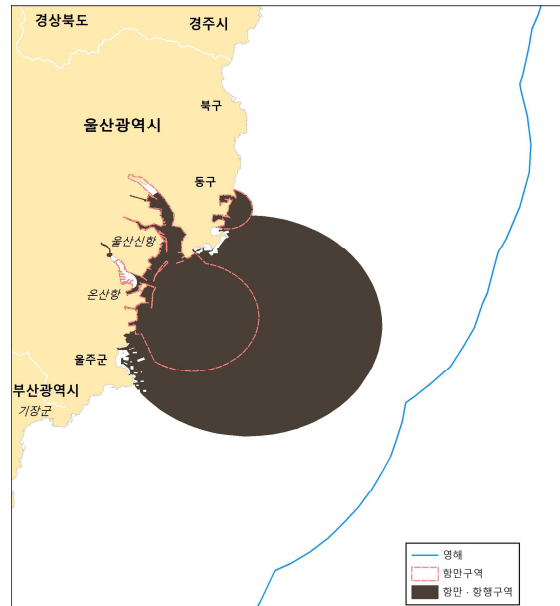
〈그림 3-46〉 GICOMS 데이터를 활용한 화물선(상), 탱크선(하) 밀집 공간



〈그림 3-47〉 특성평가 결과



〈그림 3-48〉 항만·항행구역



#### □ 용도 상충 조정

-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내 어장, 채굴권, 해수욕장, 보전 무인도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선박통항에 지장을 미치지 않거나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된 활동인 경우 타 활동을 우선 반영
  - 예컨대, 일부 마을어장의 경우, 교통안전특정해역에 포함되지만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조정
    - \* 항만구역 내에는 마을어장 미존재
- 항만구역에 내 일부 공간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간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항행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 허용

- 안전한 항만·항행 활동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한 해저지형(수심) 변화를 주는 개발과 항로를 침범하는 해양기반시설 승인 불가
-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항로 활동 보장 및 어업, 유어활동 안전 관리 강화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구역(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행위 관리 사항을 준수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울산항은 항만의 기능과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항만과 해운의 입지를 위한 주기적 해저지형 등 특성 파악
  - 선박 입출항 추세, 선박규모 및 종류 등 항만 운영여건 변동 요인 점검
  - 항만시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 변화 등)의 영향을 점검하고 주기적 준설 및 조사
- 항행 사고 및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 및 인접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 안전성 평가
- 양식 활동(면허 어업권 설정), 해양 관광 활동(어촌 뉴딜, 해수욕장 등), 기 법정 보호구역(보전 무인도서 등) 등을 고려하여 관리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항만·항행구역 중 어업활동이 활발한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어업활동으로 둬

〈그림 3-49〉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7〉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구분		면적(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항만·항행 구역 (3개소)	SS-520222-01	7.38	어업활동 (조업활동) 해양관광 (낚시어선, 여촌뉴딜)	①항만·항행 ②어업활동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하여 항만항행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조업활동이 활발한 구역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 활동이 많고, 여촌뉴딜사업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
	SS-520222-02	16.87	어업활동 (조업활동, 인공어초)	①항만·항행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하여 항만항행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조업활동이 활발한 구역으로, 인공어초가 존재
	SS-520222-03	229.02	어업활동 (조업활동)	①항만·항행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하여 항만항행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조업활동이 활발한 구역

### 7) 군사활동구역

□ (정의)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군사안보와 영토관리, 해상사격 훈련에 따른 주민 안전 관리 강화

####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군사활동 수준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해상사격 훈련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구획·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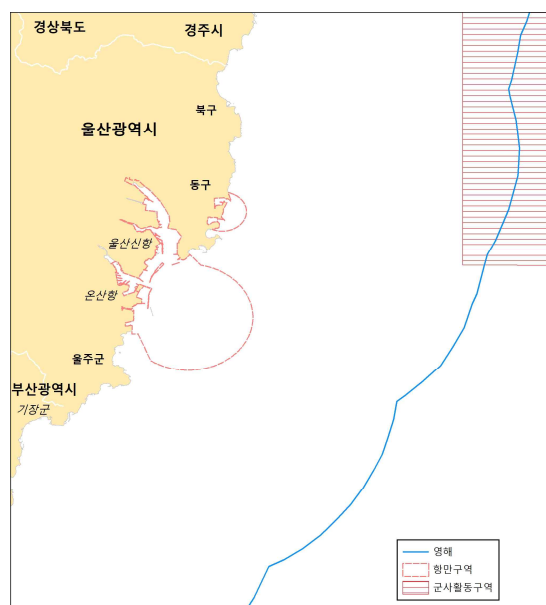
〈그림 3-50〉 해상사격 훈련구역



〈그림 3-51〉 특성평가 결과



〈그림 3-52〉 군사활동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군사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만 허용

○ 군사 훈련과 시간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당 구역 내 중복 용도 허용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군사활동과 충돌되지 않고, 안보 및 영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해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존 장려

○ 군사활동구역 내 해양이용행위(불법 행위) 감시 강화

## 8) 안전관리구역

□ (정의)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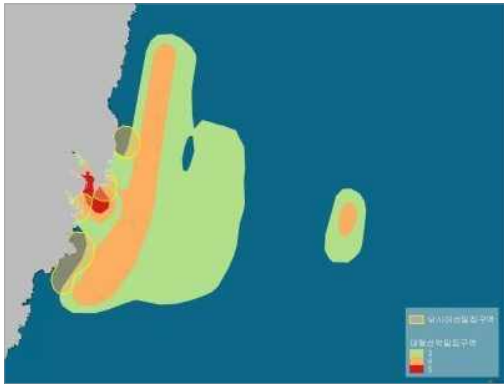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안전한 해양이용 및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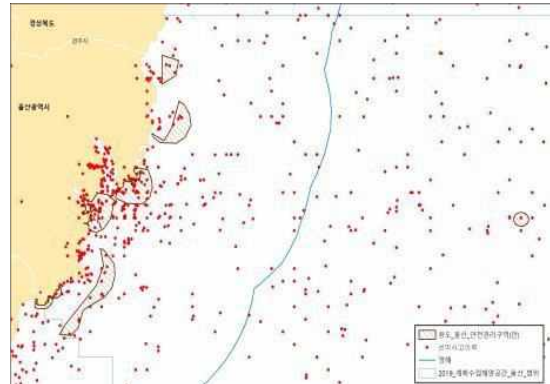
##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 시설 등 산업 및 기간 시설, 선박 통항 및 사고 위험 분석 등을 고려 설정

〈그림 3-53〉 낚시어선과 대형선박 중첩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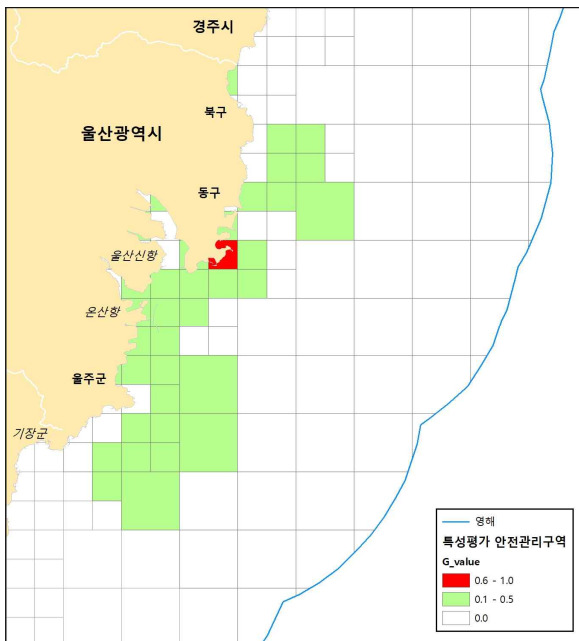


〈그림 3-54〉 사고이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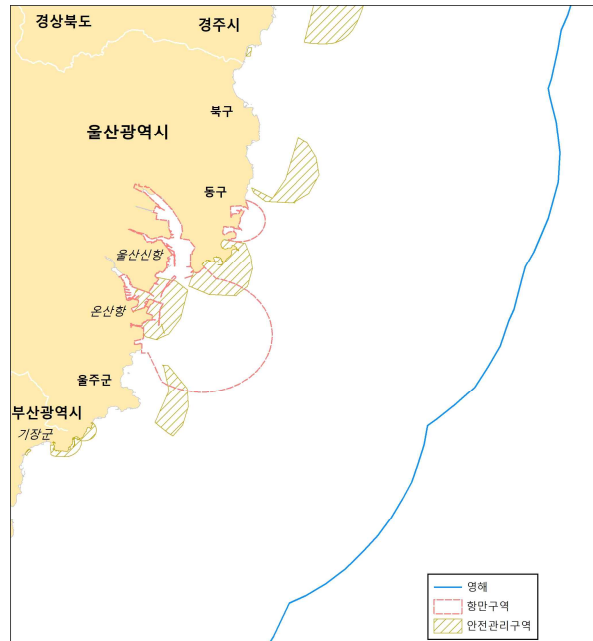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2019), (<https://www.data.go.kr/>)

〈그림 3-55〉 특성평가 결과



〈그림 3-56〉 안전관리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등 해양안전활동 지원
- 권장 해양 이용·활동 사항에 따른 행위 관리 사항
  - 안전부표, 안전경고문 설치 및 안전 순찰 활동, 해양안전 지식 보급, 해양안전 문화 확산 활동
  - 어선 종사자 및 해양 레저 활동객 등의 안전 역량 제고 및 교육 활동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등 해양안전활동 지원
- 주기적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사고 예방조치
  - \* 사고발생 해역 및 선박·어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 이용자 수,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위험성 정보 등 고려하여 실시
- 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안내·경고 등을 통해 해양이용자들이 미리 조심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저감 유도

9) 에너지개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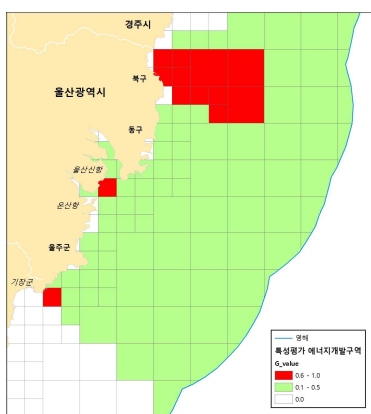
□ (정의)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지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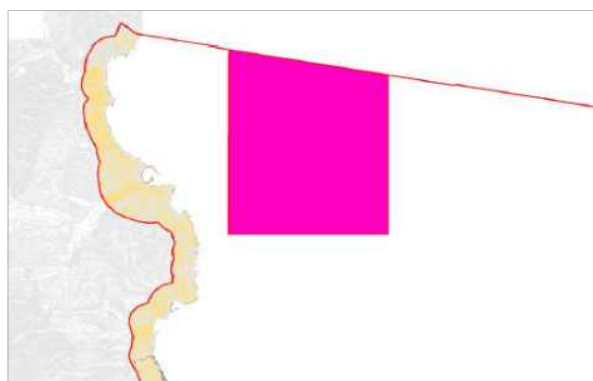
□ 입지조건, 제약조건,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해상풍력과 관련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경우 해상풍력상생발전방안('20.7.17.)에 따라 공공주도 집적화단지로 지정되거나,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경우(민간사업)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 가능

〈그림 3-57〉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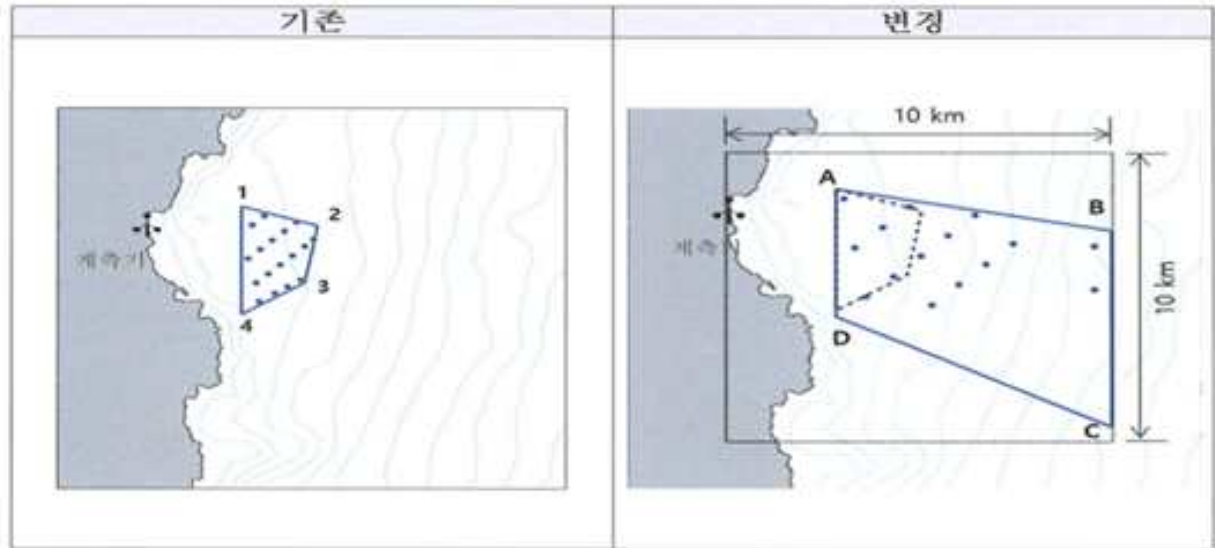


〈그림 3-58〉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산업시설구



자료 : 울산시, 2016, 연안관리지역계획

〈그림 3-59〉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발전사업허가 변경



자료 : 울산시 복구, 2021, 내부자료

〈 용도구역 미지정 〉

- 특성평가 값이 높은 지역은 북쪽에서부터 각각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18), 복구 정자항 앞 공유수면, 산업시설구), 울산화력발전소 주변해역, 기장 고리원전 및 관계시설 주변해역
-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발전사업 허가 해역은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미지정
  - \* 발전사업허가('18.09) 이후 발전사업허가 변경('21.5) 으로 면적 확대
- 울산화력발전소 주변해역 및 기장 고리원전 및 관계시설 주변해역은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미지정

(2) 공간 관리 방안

- 해양에너지 개발 추진 시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 및 주민 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 공존 가능한 해양이용 행위 시 안전성 확보 필수,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에너지 부존자원이 높은 공간의 해양활동(항행, 해양생태, 수산 등) 시 개별 활동과 상호작용 및 영향 검토
  - 해양에너지 개발과 여타 활동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절차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제4장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제4장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운영 배경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 구성·운영 필요
  - 특히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 계획의 실효성 제고

#### □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울산시청의 추천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주요 해양공간 이용, 보전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기능)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현안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하여 검토<sup>28)</sup>
  -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 □ 법적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조(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8)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제23조 참고

- 동법 시행령(제6조)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해양 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

\*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추진 경과

- 2019-20210년, 업무협의회, 설명회, 지역협의회 등 실시
  - 공간계획 마련 착수 : '19.6월
  -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 : '19.6월
  - 울산시청 담당자 제2차 사전설명회 : '19.6월
  - 공간계획 초안 마련 : '19.10월
  - 울산수협, 울산시 담당자 업무협의회 : '19.11월
  - 지역협의회 위원 추천 : '19.11.~'21.7월
  -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 : '19.12월
  -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 : '20.2월
  -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8월
  -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 : '20.11월
  -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 : '21.3월
  -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 : '21.6월
  - 울산시 제1차 지역협의회 : '21.7월
  - 울산시 제2차 지역협의회 : '21.9~10월
  -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21.10~11월
  - 울산시 공청회 : '21.11월

#### □ 울산 해역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원칙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 관련 민관산학의 이해관계자를 포괄\*

\* 특히 상충행위 관련 이해관계자(예. 어업인, 바닷모래 채취업자)를 모두 포함

- 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 특정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 구성 절차 및 경과

- 울산 해역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을 위한 기초 문헌연구
-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 : '19.12월
-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 : '20.2월
-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 : '21.6월
- 설명회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구성 : '19.12~'21.07월

○ 울산시 지역협의회 위원 명단

- 지역협의회 위원은 총 6개 분야의 민(7)·산(8)·학(4)·연(2)·군(2)·공(7)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 참조

##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 1)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19.06.03)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06.03. / 울산시청
- 참석자 : 울산시(수산자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표 4-1〉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공간계획제도 관련 내용</li> <li>- 향후 일정 및 지역협의회 관련 내용</li> <li>-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자체 권한 강화 필요</li> </ul>

〈그림 4-1〉 울산시청 담당자 제1차 업무협의회



2) 울산시청 담당자 제2차 업무협의회('19.06.14)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06.14. / 울산시청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울산시청(수산진흥과, 에너지산업과, 지역개발과), 울산 북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시 울주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표 4-2〉 울산시청 담당자 제2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청 담당자 제2차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해양공간계획 대상 관련 논의</li> <li>-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논의</li> <li>- 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li> </ul>

## 3) 울산수협, 울산시청 담당자 업무협의회('19.11.22)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1.22. / 울산수협, 울산시청
- 참석자
  - 울산수협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울산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장), 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 울산시청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울산시청(에너지산업과, 수산진흥과), 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표 4-3〉 울산수협, 울산시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수협, 울산시청 담당자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해양이용, 신규 해양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계획의 필요성 논의</li> <li>-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논의</li> </ul>

## 4)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19.12.23)

##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9.12.23. / 울산시청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울산시청(수산진흥과, 에너지산업과), 울산 북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시 울주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해양과학기술원(연구진)

〈표 4-4〉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논의</li> <li>- 어장이용개발계획 관련 적합성협의 논의</li> <li>- 부산-울산 해상경계 관련 논의</li> <li>- 지역협의회 위원 관련 논의</li> <li>- 울산항 항만구역 관련 논의</li> <li>- 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li> </ul>

〈그림 4-2〉 울산시 제1차 시·군·구 설명회



5)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20.02.14)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2.14. / 울산 전통시장 교육장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울산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울산시, 울주군, 울산 해양지방수산청, 해경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울산해양포럼, 울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울산 수산업 협동조합, 군,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해양과학기술원(연구진)

〈표 4-5〉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공간계획법에 관련된 논의</li> <li>-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련 용도구역 지정 논의</li> <li>-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논의</li> <li>- 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li> <li>- 지역협의회 위원 관련 논의</li> </ul>

〈그림 4-3〉 울산시 제2차 시·군·구 설명회



6)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20.11.13)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13. / 울산시청
- 참석자 : 울산시(수산진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표 4-6〉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광물개발구역 지정 관련 절차 논의</li> <li>- 울산-부산 공동수립구역 관련 논의</li> <li>- 교통안정특정해역 관련 공간 범위 조절 필요</li> </ul>

〈그림 4-4〉 울산시청 담당자 제3차 업무협의회



7)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21.03.05)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03.05. / 울산시청
- 참석자 : 울산시(해양항만수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표 4-7〉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정특정해역 관련 공간 범위 조절 필요</li> <li>- 울산-부산 공동수립구역 관련 울산시 입장 청취</li> </ul>

〈그림 4-5〉 울산시청 담당자 제4차 업무협의회



8)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21.0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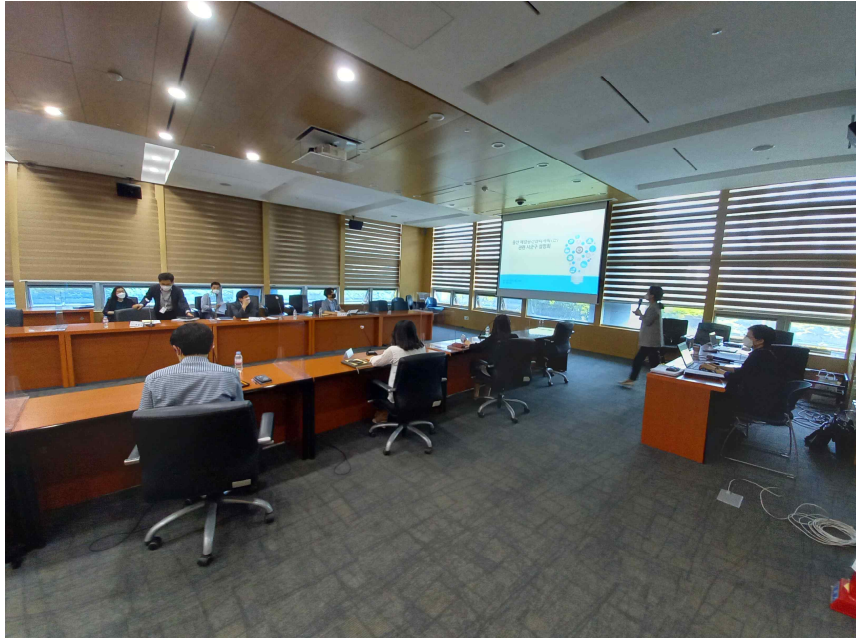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06.07 / 울산시청
- 참석자 : 울산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울산시, 북구, 동구, 울주군, 해경 등), 해양수산 개발원(연구진)

〈표 4-8〉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 범위에 EEZ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li> <li>-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용도구역 지정 논의</li> <li>-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에 대한 논의</li> <li>- 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건의</li> </ul>

〈그림 4-6〉 울산시 제3차 시·군·구 설명회



9) 울산 제1차 지역협의회('21.07.16)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07.16 / 울산시의회 희망홀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울산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울산시, 동구, 북구, 울주군, 울산해양지방수산청 등), 지역협의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한국자율관리어업,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울산해양포럼, 장생포고래박물관, 행복남구장생포부회장, 울산수산업 협동조합, GIG Korea진, 코엔스텍시콘,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울산연구원, 육군 등), 해양수산개발원(연구진), 해양과학기술원(연구진)

〈표 4-9〉 울산시 제1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시 제1차 지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항행구역에서의 조업활동 가능여부</li> <li>- EEZ 해상풍력 관련 논의</li> <li>- 해양관광구역 지정 확대 건의</li> <li>- 그 외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li> </ul>

〈그림 4-7〉 울산시 제1차 지역협의회



10) 울산시 제2차 지역협의회('21.09.28-10.05)

□ 개요

- 방식 : 서면 개최
- 대상자 : 울산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울산시, 동구, 북구, 울주군, 울산해양지방수산청 등), 지역협의회 위원

〈표 4-10〉 울산 제2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울산 제2차 지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화강 하구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의 우선순위 :어업활동) 건의</li> <li>- 주전 연안 지역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건의</li> <li>- 어업활동보호구역 확대 건의</li> <li>-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송전 선로에 대한 고려 필요</li> </ul>

###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이후 첫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주체
-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

####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구축방향】 해양공간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계획관리 체계 개편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는 해양공간관리계획 과정에서 과학과 참여에 의한 해양공간의 용도 파악을 통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보장하여야 함

#### □ 해양공간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 기반 구축

-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공간 이용·개발,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
    - ※ 법률 시행 이전에 구성한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준비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감시 기능 강화
- 해양공간관리 필요성, 여건, 과제, 참여·협력 등에 해양공간관리 관련 홍보

#### □ 해양공간관리 정책 이행 조직 및 기반 마련

- 시·도와 관련 연안 시·군·구는 해양공간계획 시행할 담당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배치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종합적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수행
- 해양공간계획과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등에 적합
-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에 따라지역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해양공간관리 역량 강화 및 인식 증진

- 해양공간관리가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 관련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 중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주민 등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 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방향 등 상세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자료 배포
  -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및 해양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

※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에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실천 사항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현황과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양공간 관리에 대해 점검 필요
  - 이행점검 대상은 울산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타 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 등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해양공간관리 능력 등임.

- 타 부서의 협조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발전의 주춧돌
  -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도입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정보의 분석, 관련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발전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표 4-11〉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이행점검 대상	세부 항목	방법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이용·개발사업 현황과 정해진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 (2)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3)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및 추진 현황 (4)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대장, 해양공간정보체계,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대상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대상 해역 내 면허어업권, 골재채취허가 등 면허 및 인가·허가 실적 (2) 대상 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여부 (3) 위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 실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대상 해양공간의 해양공간관리 능력	(1)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2) 해양공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3) 대상 해양공간의 현안 및 갈등 사례 (4) 해양공간계획체제 활용 여부 (5)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여부 (6)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담당 부서 자료, 관련 업무담당자 및 지역협의회 의견 등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 울산광역시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시에 활용한 기초 정보, 특성평가 결과, 해양용도구역 도면 등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 관리계획의 자체평가

○ 울산광역시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검토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기적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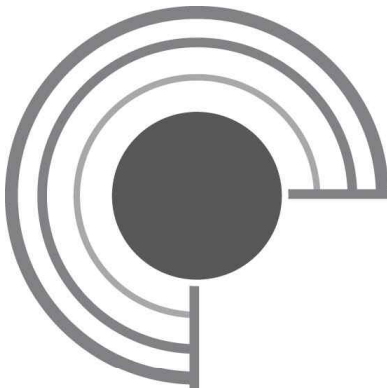
- 자체평가보고서는 해당 년도의 이행 실적 및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주기적 점검 결과도 첨부되어야 함.

〈표 4-12〉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p>I. ○○○○년 자체평가의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경 및 목적</li> <li>2. 관리계획 추진경과</li> <li>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li> </ol> <p>II. ○○○○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li> <li>2. 해양용도구역별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li> <li>※ 각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은 미이행 /부분이행 / 완료로 제시</li> <li>3.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li> </ol> <p>III. ○○○○년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평</li> <li>2. 평가대상 사업(업무)별 자체평가 결과</li> <li>1) 평가결과</li> <li>※ 자체평가 결과는 부적정, 적정, 평가유보로 제시</li> <li>2) 평가결과 조치계획</li> <li>- 자체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li> <li>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 방법</li> <li>3. 기타 건의 사항</li> </ol> <p>【참고】○○○○년 이행점검 결과</p>
--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 부 록

1. 울산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수요
2.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3.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4. 울산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결과
5.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희 결과
6. 울산 지역위원회 결과





## 부록 1 : 울산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수요

### 1)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성격에 따른 특성분석

- 울산광역시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10개로 이중 해양관광 부분이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 사업성격에 따라 항만, 관광, 수산 등 3개 분야로 구분되고, 울주군을 제외한 남구, 동구, 북구에 각각 3건씩 분포함.
- 이용 및 개발수요의 면적은 해양관광 부분에서만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 부분은 예산을 중심으로 수립
  - 전체 수요 중 대상지 규모가 면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4.1㎢가장 큰 규모를 보임.
-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예산 약 407억원 중 해양관광 사업이 약 399억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
  - 관광 사업이 39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산 사업이 7.6억으로 나타남.

〈부록 표 1-1〉 울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구분		항만	관광	수산	총합계
남구	개수	2	-	1	3
	면적(m <sup>2</sup> )	-	-	-	-
	예산(백만원)	-	-	760	760
동구	개수	-	3	-	3
	면적(m <sup>2</sup> )	-	4,079,119	-	4,079,119
	예산(백만원)	-	19,568	-	19,568
북구	개수	-	3	-	3
	면적(m <sup>2</sup> )	-	376,400	-	376,400
	예산(백만원)	-	20,357	-	20,357
울주	개수	-	1	-	1
	면적(m <sup>2</sup> )	-	-	-	-
	예산(백만원)	-	-	-	-
전체	개수	2	7	1	10
	면적(m <sup>2</sup> )	-	4,455,519	-	4,455,519
	예산(백만원)	-	39,925	760	40,685


2)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해역용도별 구분에 따른 특성분석

- 울산광역시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10개로 이중 울주군을 제외한 동구, 남구, 북구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 용도해역분류에 따라 어업활동, 해양관광, 항만항행 등 3개 분야로 구분되고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해양관광으로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인 7건으로 나타남.
- 전체 수요의 면적은 4.5km<sup>2</sup>이고 해양관광분야 수요가 전체 면적 4.5km<sup>2</sup>를 차지하고 대부분인 약 4.1km<sup>2</sup>가 동구에 집중
  - 전체 수요 중 대상지 규모가 면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4.1km<sup>2</sup>가장 큰 규모를 보임.
- 전체 사업비는 약 407억원이고 해양관광 사업이 약 399억으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차지
  - 시구구별로는 해양관광 사업이 분포하는 동구가 약 196억원, 북구가 약 204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음.

〈부록 표 1-2〉 울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구역)

구분		어업활동	해양관광	항만항행	총합계
남구	개수	1	-	2	3
	면적(m <sup>2</sup> )	-	-	-	-
	예산(백만원)	760	-	-	760
동구	개수	-	3	-	3
	면적(m <sup>2</sup> )	-	4,079,119	-	4,079,119
	예산(백만원)	-	19,568	-	19,568
북구	개수	-	3	-	3
	면적(m <sup>2</sup> )	-	376,400	-	376,400
	예산(백만원)	-	20,357	-	20,357
울주	개수	-	1	-	1
	면적(m <sup>2</sup> )	-	-	-	-
	예산(백만원)	-	-	-	-
전체	개수	1	7	2	10
	면적(m <sup>2</sup> )	-	4,455,519	-	4,455,519
	예산(백만원)	예산(백만원)	39925	-	40685

## 부록 2 :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D <input type="text"/>	
<b>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지역주민</b>			
2019090904-0			
<p>안녕하십니까?</p> <p>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울산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기 마련된 해양공간계획 보완 및 미 수립된 지역계획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p> <p>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울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양공간 활용과 현안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문결과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p> <p>귀하의 의견은 이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p> <p>※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희정 부연구위원 외 연구진</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사항 (주)리서치앤리서치(R&amp;R) 실사 담당자 : 김원미 차장 (02-3484-3087)</p>			
<b>응답자 기본 사항</b>			
응답자 성명	<input type="text"/>	연락처(유선)	<input type="text"/>
		연락처(핸드폰)	<input type="text"/>
면접 일시	___월 ___일 ___시		
<b>면접원 기본사항</b>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S/V 확인	검증원 확인
	ID _____	_____	_____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 만 19세 미만 설문중단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남구      2) 동구      3) 북구      4) 울주군 5) 그 외의 구 ☞ 조사 중단	
SQ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조사 중단	

## PART A. 울산 해양공간 인식

Q01.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Q02. 귀하께서는 현재 울산의 바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양식 및 수산업 등 어업활동을 위한 공간
- 2) 해수욕장, 마리나, 레저시설 등 관광·여가를 위한 공간
- 3) 산업단지, 조선소, 해양에너지(조력발전, 풍력발전) 시설 등 산업공간
- 4) 항만의 기능과 선박의 운항 등을 위한 공간
- 5) 어촌마을, 해안인접 주거지역 등 정주공간
- 6) 기타( )

Q0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울산의 바다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자원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항만, 산업단지, 조선소, 해양에너지 시설 등 산업자원
- 2) 어류 등 풍부한 수산자원
- 3) 어촌마을, 전통어구어법 등 해양역사·문화자원
- 4) 마리나,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관광자원
- 5) 해양 및 해안 생태·경관자원
- 6) 기타 ( )

Q04. 귀하께서는 울산의 바다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정 2) 대체로 부정 3) 보통 4) 대체로 긍정 5) 매우 긍정

Q05. 그렇다면, 귀하 자신은 울산의 바다와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 1) 전혀 무관 2) 대체로 무관 3) 보통 4) 대체로 관련 5) 매우 관련

Q06. 울산의 바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이용·개발을 통해 바다 환경이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변화 없음 2) 약간 변화함 3) 보통 4) 대체로 변화함 5) 매우 변화함

Q07. 다음은 울산의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0에서 10까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자신에게 중요한 정도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점일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 < 설명 >

- (1) 수산물 생산: 바다에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등을 얻을 수 있다.
- (2) 광물자원 제공: 바닷모래나 여러 광물을 얻을 수 있다.
- (3) 에너지 생산: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바다는 해양생물이 산란하고 사는 곳이다.
- (5) 오염 물질 정화: 바다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해준다.
-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바다는 낚시, 수영 등 사람들에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바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예술적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전통·문화로부터 혜택(어구·어법, 문화재, 종교 등)을 얻는다.
- (8) 기후 조절 기능 :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여 준다.
- (9) 재해 및 위험 관리 : 바다의 해빈·해안림·사주 등은 파도·해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바다는 영양염 순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11) 해상 교통 및 운송 서비스 : 바다는 해상 교통과 물류 활동을 지원한다.

#### 1) 귀하에게 중요한 정도

귀하에게 중요한 정도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광물자원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에너지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오염 물질 정화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8) 기후 조절 기능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2)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광물자원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에너지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오염 물질 정화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8) 기후 조절 기능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PART B. 울산의 주요 해양활동 간 갈등

### 주요 해양활동에 대한 설명

- ☞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바다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를 분석해서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요를 조정하고, 갈등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중 주로 어떤 활동들이 서로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설명/사례
어업 활동	<p>우리 생활에 집적 이용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바다에서 잡거나 기르는 활동을 말한다.</p> 
골재-해저광물 자원 채취	<p>골재-해저광물 채취는 해저의 표층 및 지질구조에 존재하는 모래, 자갈, 석유 및 천연가스,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 마그네슘, 금, 은 등을 채취하는 활동을 말한다.</p> 
신재생에너지 개발	<p>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양의 바람, 파도, 조석, 염도,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한다.</p> 
해양관광	<p>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레저 활동, 야생동식물 관찰 등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해양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 활동을 말한다.</p> 

주요 활동	설명/사례
<p>환경·생태</p>	<p>해양환경과 생태 보호 활동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 해양서식지 복원, 오염 관리 등을 말한다.</p> 
<p>연구·교육</p>	<p>연구 및 교육 활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해양조사,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얻는 정보와 지식과 관련한 활동과 바다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p> 
<p>항만·항행</p>	<p>항만·항행 활동은 항만의 개발, 유지, 운영하는 활동과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활동을 말한다.</p> 
<p>군사활동</p>	<p>군사 활동은 해양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p> 
<p>안전관리</p>	<p>안전관리는 해양 시설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p> 

**Q08. 귀하께서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울산의 바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게 이용 2) 조금 적게 이용 3) 변화 없음 4) 조금 많이 이용 5) 매우 많이 이용

**Q09. 울산의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복잡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단순해졌습니까?**

- 1) 매우 단순해짐 2) 조금 단순해짐 3) 변화 없음 4) 조금 복잡해짐 5) 매우 복잡해짐

**Q10. 아래의 표는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여러 활동들 중 몇 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 활동은 다시 더 세부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의 합이 100%가 되도록 세부 활동들의 중요한 정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업활동은 어선어업과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어선어업과 양식업이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50%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구분	세부 활동	비중(%)
1) 어업활동	(1) 어선어업	%
	(2) 양식	%
	합계	100%
2) 에너지 개발	(1) 풍력 및 조류 등	%
	(2) 조력발전	%
	합계	100%
3) 해양관광	(1) 해변관광	%
	(2) 낚시, 유람	%
	합계	100%
4) 환경생태	(1) 보호구역	%
	(2) 우수한 생태계	%
	합계	100%
5) 항만 항행	(1) 항만구역	%
	(2) 항로 등 항행구역	%
	합계	100%

Q11. 아래의 표는 해양을 이용·개발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활동들 중 어떤 활동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표입니다. 각 활동 간의 갈등 정도를 1~5점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은 갈등이 없거나 낮은 경우이고, 5는 갈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뜻합니다.

예) 어업활동과 골재광물 채취 활동이 같은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갈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1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 )점							
(3) 에너지개발	( )점	( )점						
(4) 해양관광	( )점	( )점	( )점					
(5) 환경·생태	( )점	( )점	( )점	( )점				
(6) 연구·교육	( )점	( )점	( )점	( )점	( )점			
(7) 항만·항행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8) 군사활동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9) 안전관리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PART C.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울산 해양공간관리 방향

###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바다를 이용·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해양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양공간계획제도는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를 분석해서 주요한 해양활동별로 사전에 공간을 할당하는 것으로, 육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해양 활동별로 공간을 할당하면 해양공간을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해양공간관리 여건 변화



####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 "해양공간(영해 EEZ)의 바람직한 용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하는 정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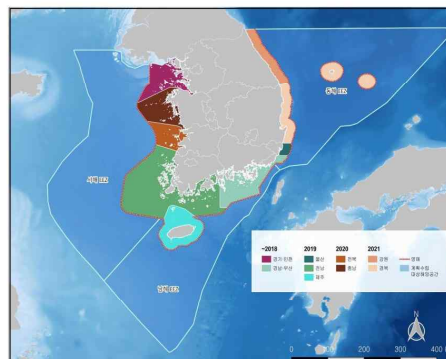
- 그동안 해양이용 수요 발생 시 후가에서 해양공간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유계계획(유계)' 제도로 파악·관리·선정
- 이용자에게 적절한 이용 공간, 행위권 부여·선정 등도 및 영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양가치 확대, 갈등 최소화
- 즉, 정부가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공간 용도를 인도할하는 체계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4월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설정·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9개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 수립 중입니다.

\* 9개 해양용도구역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 ('16~'17) 경기만 시범해역 → ('18) 부산·경남 → ('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 ('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이행하는 다른 수단으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울산의 해양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Q12. 귀하께서는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1)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내용을 알고 있다

Q13.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을 9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양의 용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해양공간적합성협의제도 (법제15조)

과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협의가 없더라도 다른 부처나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음

그러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의 도입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상 : 해양관광단지 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광물 골재자원 채취, 항만 및 어항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어장개발 등 해양의 이용개발에 관한 타부처 및 행정기관의 법정계획**

Q14. 귀하께서는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15. 귀하께서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가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16.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공간의 다양한 활동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기여 못 함      2) 대체로 기여 못 함    3) 보통      4) 대체로 기여    5) 매우 기여

Q17. 다음은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 시기에 각각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해주시요.

평가 항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도 높음				
1) 해양공간계획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1	-----	2	-----	3	-----	4	-----	5
2) 행정 조직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행을 위한 조직 정비 등)	1	-----	2	-----	3	-----	4	-----	5
3) 해양공간정보(해양공간정보의 수집·가공·관리 등)	1	-----	2	-----	3	-----	4	-----	5
4) 법률 및 제도의 정비(시행령 등 세부적인 규정 완비)	1	-----	2	-----	3	-----	4	-----	5
5)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주민 설명회, 지역협의회 등)	1	-----	2	-----	3	-----	4	-----	5
6) 관련 계획·제도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1	-----	2	-----	3	-----	4	-----	5



- Q23. 귀하께서 Q22에서 울산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 1)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                      2) 바다 환경이나 생태계에 변화를 줄 우려가 있음  
 3) 이용 및 개발 수요가 집중                          4)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  
 5) 기타( )
- Q24. 귀하께서는 최근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내용을 알고 있다
- Q25. 귀하께서는 해상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            2) 조금 찬성            3) 보통            4) 조금 반대            5) 매우 반대
- Q26. 귀하는 울산의 해상풍력 추진 시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어민의 생존권 침해(수산자원 감소, 조업구역 축소 등)  
 2) 사업 추진과정의 이해관계자(어민 등) 소통 부재  
 3)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영향과 피해에 대한 자료 부재  
 4)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 : 과거 유사 선행 경험(원자력 발전 등)에 의한 불신 형성  
 5) 기타 ( )
- Q27. 귀하께서는 기존의 해상풍력사업자와 주민의 소통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조금은 만족한다    3) 조금은 불만이다    4) 매우 불만이다    5)모르겠다.

## PART D. 이해관계자 참여 · 협력 및 인식 증진

###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지역협의회 역할

- ☞ 해양공간의 갈등과 훼손을 줄이고, 해양의 다양한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해양공간 통합관리제도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은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반이다.
- ☞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특성평가→용도구역(안) 마련→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의견 수렴 및 검토) ⇒ ②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③지역위원회 심의 ⇒ ④승인 신청(시·도지사→해수부) ⇒ ⑤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해수부→시·도지사) ⇒ ⑥고시 및 통보
- ☞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Q28. 귀하께서는 주민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가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28-1. Q28번의 1), 2) 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 것이다.  
2) 지역협의회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3) 기타 ( )

**Q30. 지역협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2개를 표시해주세요.**

- 1) 참여 시점 :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구성하여 운영 ( )  
2) 참여 대상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  
3) 참여 방식 : 온·오프라인 참여,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프로세스 구축 ( )  
4) 참여 결과 피드백 : 개선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는 방안 ( )

## PART E. 응답자 특성 문항

**DQ1. 귀하께서는 울산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까?**

-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20년 미만 4) 20~30년 미만 5) 30년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기능/숙련직  
5) 생산/노무직 6) 사무직 7) 전문/자유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무직/퇴직 11) 기타

**DQ3.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재학 포함)**

**DQ3.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재학 포함)**

-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 졸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3 : 울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부록 표 3-1〉 2021년도 울산 지역협의회 위원(기준 : 2021년 10월 26일)

순서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분야	추천기관
1	주민	박춘수	울산수산업 경영인연합회	회장	어업	울산수산업 경영인연합회
2	주민	김정래	울산어촌지도자협의회	회장	어업	울산어촌 지도자협의회
3	주민	강원보	한국자율관리어업	울산연합회장	어업	자율관리어업 울산연합회
4	주민	윤길용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어업	울산수산업 경영인연합회
5	주민	이정우	울산해양포럼	운영위원장	해양관광	울산해양포럼
6	주민	이만우	남구 도시관리공단 장생포고래박물관	관장	해양관광	남구
7	주민	양형관	-	행복남구 장생포부회장	환경·생태계	남구
8	산업	오시환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어업	울산수협
9	산업	최은옥	서남구수협	지점장	어업	서남구수협
10	산업	도상일	현대광업(주)	대표이사	골재·광물	한국골재협회
11	산업	최우진	GIG Korea	전무	에너지	시
12	산업	이희동	울산테크노파크	과장	에너지	에너지공단
13	산업	서상일	코엔스텍시콘	대표이사	에너지	시
14	산업	최현우	울산항만물류협회	회장	항만·항행	울산항만 물류협회
15	산업	서종철	울산항만운영(주)	대표	항만·항행	울산항만 물류협회
16	학계	이정학	울산과학대학교 (관광진흥위원회)	교수 위원	해양관광	시
17	학계	이학성	울산대학교	울산연안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장	환경·생태계	시
18	학계	이명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연구교육 (건축공학)	시

순서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분야	추천기관
19	학계	윤한삼	부경대학교	교수	연구교육 (토목공학)	시
20	연구	정원조	울산연구원	전문위원	연구교육 (해양건축공학)	울산연구원
21	연구	라운강	한국국토안전연구원	원장	안전관리	해양환경공단
22	군사	김민섭	육군 7765부대	작전과장	군사활동	육군
23	군사	조진욱	해군 제3함대	작전계획과장	군사활동	해군
24	공공	김희경	울산항만공사	물류전략실장	항만항행	울산항만공사
25	행정	전병오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안전관리	해양경찰서
26	행정	홍병익	울산광역시	해양항만수산과장	계획관리	시
27	행정	오정철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	계획관리	시
28	행정	이원숙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진흥과장	계획관리	동구
29	행정	오재환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장	계획관리	북구
30	행정	탁건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장	계획관리	울주군

## 부록 4 : 울산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결과

### □ 제1차 울산 지역협의회

〈부록 표 4-1〉 제1차 울산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장생포 고래박물관 이만우	○ 울산 고래 생태 고려 필요 - 관광 구역 혹은 연구교육보전구역으로 지정 검토 필요	○ (신규) 고래 관찰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교육보전구역으로 구획하였음. - 고래 출현 밀집도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 2단계* 까지를 연구교육보전구역으로 제안 *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일정하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 - 다만,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해당 공간이 도면에 표시되게 되면 혼란을 가장한 어민의 의도적 포획 우려	반영
수협 오시환 중앙수산 조정위원회 윤길용	○ 타 용도구역에서 어업활동 가능 여부 - 항만항행구역 등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어업활동 가능 여부 질의	○ (답변) 타 용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어업활동 가능 - 해양공간계획은 행위를 강제하는 계획, 법이 아니기 때문에, 타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어업활동 가능 - 다만, 타 법률에 의한 어업활동의 제한 등은 기존 법에 따라 적용	-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박재남	○ 항만항행구역 내 면허어장에 대한 확인 필요 - 울산 항만구역 내에는 면허어장이 존재하지 않음	○ (기존) 울산항 항만구역 내 면허어장 미존재 확인 - 공간계획 중 항만항행구역 내 면허어장이 존재하는 공간은, 기존 울산항 항만구역 외측으로, 교통안정특정해역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확인함	-
울산시	○ 어업활동 보호구역 확대 필요 - 항만항행구역 중 어업활동 특성이 높은 공간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고려 필요	○ (기존) 교통안정특정해역은 법 부칙 4조에 따른 조치구역으로, 항만·항행구역으로 반영해야 함 - 다만 해수욕장, 면허어장, 채굴권,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 해양관광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개발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신규) 항만항행구역 중 어업특성이 높은 경우(어선밀집, 인공어초 등) 관리구역으로 설정함	반영
	○ 향후 EEZ 공간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수렴 필요	○ (답변)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EEZ에 대한 의견수렴 예정	-
GIG Korea 최우진	○ EEZ에서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방법 질의	○ (답변) 에너지 개발 시 지역 수용성 확보 선행 필요	-
코엑스 헥시콘 이왕림	○ 해저 케이블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지나는 경우에 대한 질의	○ (답변) 해양공간관리는 수면에 대한 계획으로, 만약 케이블로 인해 어업, 항행 등에 재한을 받는다면 협의 필요	-
울산 동구	○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구역에 대해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 해상풍력상생발전방안(20.7.17.)에 따라 공공주도 집적화단지 지정되거나 민간사업의 경우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경우 반영 * (시·군·구 설명회(21.06.07)) 이후 제출 의견	미반영

□ 제2차 울산 지역협의회

〈부록 표 4-2〉 제2차 울산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코엔스 헥시콘 서상일	○ 해상풍력 송전 선로 고려 필요 - 향후 EEZ 해상풍력 발전 개발시 송전선로가 영해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 필요	○ 1차 지역협의회 검토 의견과 동일 - 해양공간관리는 해양공간(수면)을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 만약 케이블 설치로 어업, 항행 등에 제한을 받는다면 협의 필요	-
수협 오시환	○ 에너지 개발 구역 지정시 수용성 확보 필요	○ (답변) 에너지 개발은 지역의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	-
	○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어업활동) 확대 필요	○ (기존)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안)으로 반영된 공간의 어업특성이 높은 경우(어선밀집, 인공어초 등) 관리구역으로 설정함	기반영
울산 동구	○ 주전항 일원을 해양관광구역으로 변경 - 주전 보밀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 중,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 (기존) 면허어장(울산북구제31호 마을어업(바다식))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규) 보밀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 계획, 어촌뉴딜300사업을 고려하여 관리구역으로 설정	일부 반영
울산시	○ 태화강 하구 내 관리구역(어업활동) 지정 필요 - 종묘채포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23척)이 존재	○ (기존) 해양생태계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가 존재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 (신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94호(2016.06.03.)에 따라, 태화강 하구 바지락 종패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구역으로 설정	반영
	○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추가 - 진하해수욕장, 나사해변의 경우 마을어장이 존재	○ (기존) 진하해수욕장, 나사해변에 지정된 해양관광구역과 마을어장과의 공간이 중첩되지 않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미반영
	○ 관리코드 FH-520222-05의 중첩용도에서 “항만항행” 삭제 필요 ○ 관리코드 TO-520222-01이관리구역 상세정보에 미표기	○ 수정 반영	반영
GIG Korea 최우진	○ EEZ 계획 수립시 의견 수립 필요	○ 1차 지역협의회 검토 의견과 동일 -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EEZ에 대한 의견수렴 예정	

## 부록 5 :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장소 : 2021.11.10.(수) 13:30/울산광역시 의회 1층 시민홀
- 주요내용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련 주민 의견 수렴

〈부록 표 5-1〉 공청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수협 오시환	○ 향후 관리계획 변경시 어업인들의 의견 반영 필요	○ (답변) 향후 공간계획 변경시 절차를 걸쳐 수용성을 확보한 뒤 해양공간관리계획 추진 예정	-
울산대학교 이학성	○ 태화강 하류에 지정된 관리구역(바지락)은 관련 수질 및 퇴적물 조사에 따라 조건부 지정 필요	○ (답변) 공간계획 수정시 내수면 어업 허가시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 반영 예정	-
자율관리 어업 연합회 강원보	○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24개)의 의견 수렴 필요	○ (답변) 지역협의회, 공청회 등에서 어업인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 중	-
세광종합기술 김성준	○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 자료 수집(과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을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답변) 자료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종합 db 구축 -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 관계기관 협의결과

○ 일시 : 2021.10.28.(목)~11.29.(월)

〈부록 표 5-2〉 관계기관 협의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 울산화력발전소, 기장 고리원전 및 관계시설 주변해역에 대해 에너지개발구역(안) 제외 필요	○ 수용 - 안전관리구역으로 변경	반영
	○ 기장군 인근 해역의 안전관리구역 제외	○ 수용	반영
	○ 기장군 인근 해역의 어업활동 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제외	○ 미반영 : 원안 유지 - 해당 공간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핵심활동이 동일하며, 현행 특성평가 기법상 권역별 낚시어선의 주활동 공간, 규모 등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향후 일관성 있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규정 및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음 * 부산시 등 관계기관 의견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수록 예정	미반영
국방부 시설기획과	○ 세부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와 재협의 필요	○ 본 계획(안)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리 방향을 수록한 것으로 개별 이용·개발계획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님	-
	○ 향후 풍력발전기 등 군사작전에 제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공유수면 점·사용시 본 해양용도구역 결정 협의와는 별개로 반드시 관할부대 사전 협의가 필요	○ 해양공간계획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 부록 6 : 울산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 □ 심의 개요

- 기간 : 2022. 3. 29.(화) ~ 4. 6.(수)
- 위원 : 울산 해양공간관리지원위원회 위원 12명(위원장 시장님)
- 안건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심의
- 방법 : 서면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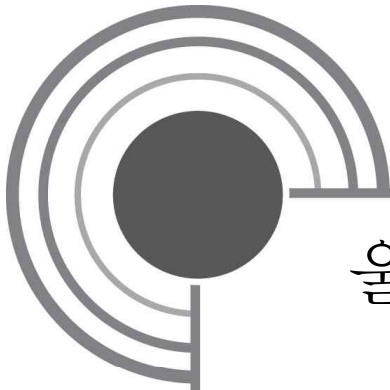
### □ 심의 결과

- 참여위원 : 12명(전원 참여)
- 심의결과 : 가결\* (동의 11명, 부동의 1명\*\*)  
 \* 「울산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회의)에 따라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부동의 의견 : 울산 북구 앞바다 인근 안전관리구역(안) 지정의 경우, 해상풍력 관련 사업 확정 및 추진 시 추후 지정 등 재검토(김정익 북구 부구청장)

〈부록 표 6-1〉 울산 지역위원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북구	○ 울산 북구 앞바다 인근 안전관리구역(안) 지정의 경우, 해상풍력 관련 사업 확정 및 추진 시 추후 지정 등 재검토	○ 수용 - 안전관리구역 미지정	반영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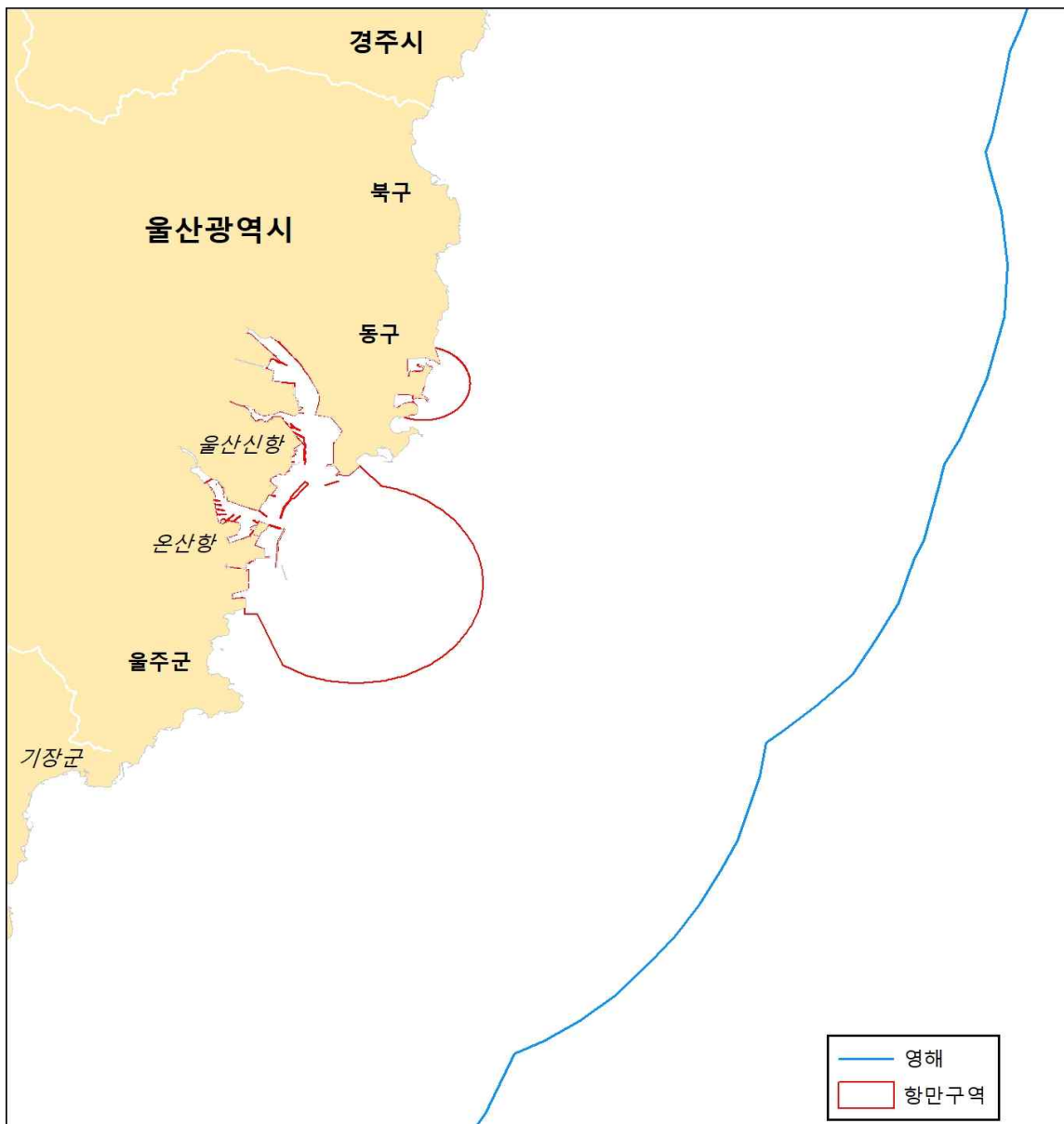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계획설명서

### 1. 해양공간관리계획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1,376.6km<sup>2</sup> (항만구역 112.6km<sup>2</sup>, 항만구역 외 1,264.0km<sup>2</sup>)
- \* 면적은 관할해역 주장 범위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인접 시도의 육지부의 관할해역이 포함되는 계획 설명 범위(도면)와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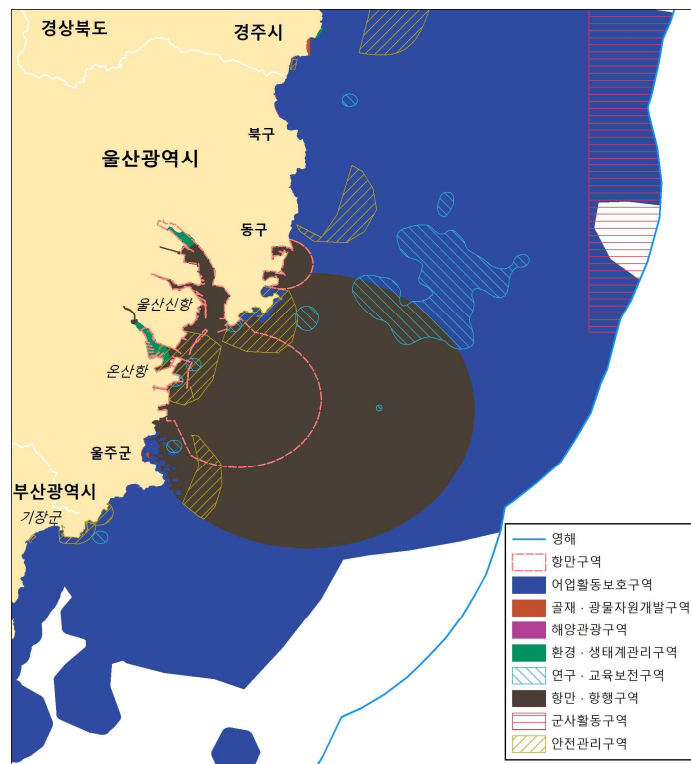
## 2. 해양용도구역 결정(변경) 설명서

(단위 : km<sup>2</sup>)

울산		면적(km <sup>2</sup> )	비중(%)	
합계		1,376.64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840.80	61.0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0.41	0.03	
	에너지개발구역	-	-	
	해양관광구역	0.40	0.0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3.60	0.26	
	항만·항행구역	369.06	26.81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61.71	4.48
		군사활동구역	107.46	7.81
		안전관리구역	68.37	4.97
	(중복구역)		(218.51)	(15.87)
소계		1,233.31	89.59	
유보해역		143.33	10.41	

\* 유보해역 : 특정 해양이용 행위의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을 용도 유보(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7호)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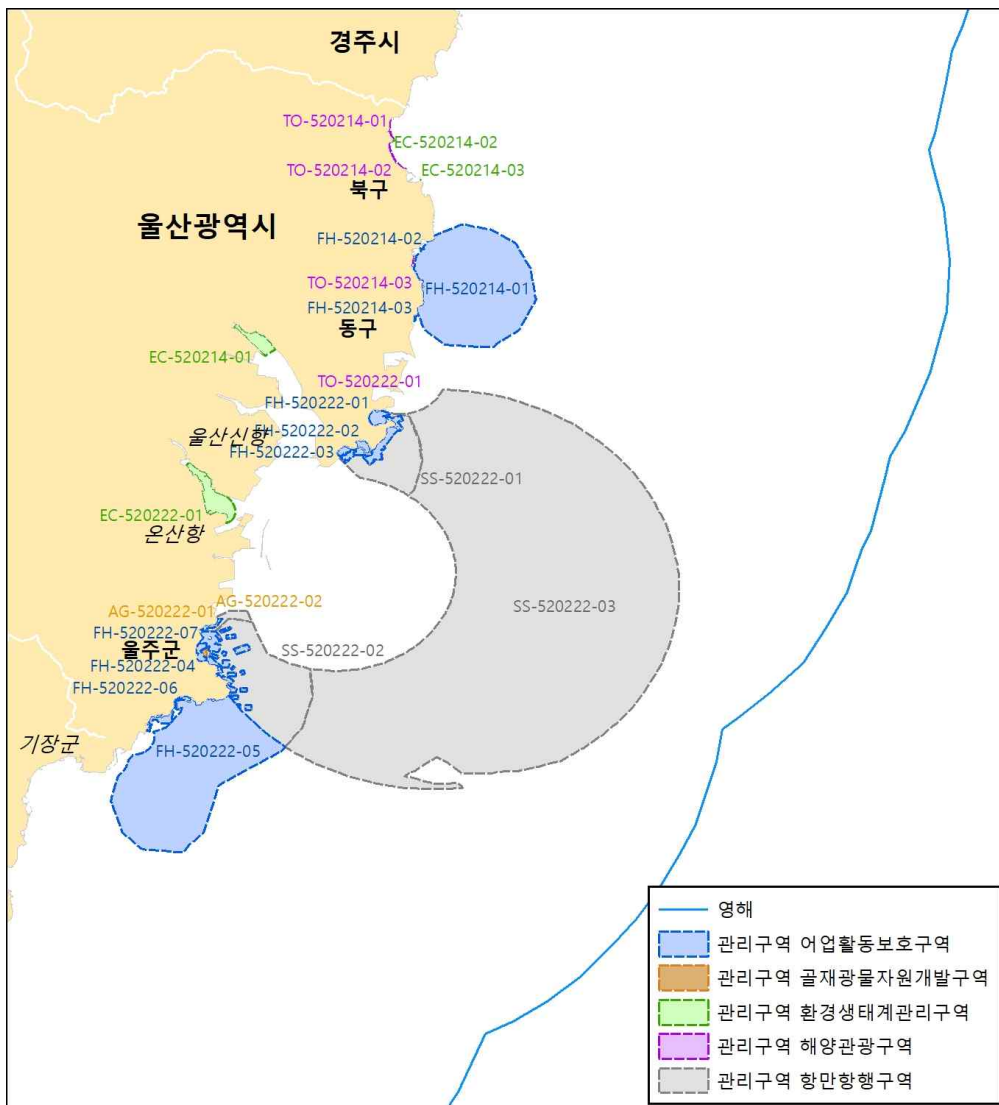


<울산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 3.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설명서

○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 23개소

- 어업활동보호구역(10개소),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2개소), 해양관광구역(4개소), 환경·생태계관리구역(4개소), 항만·항행구역(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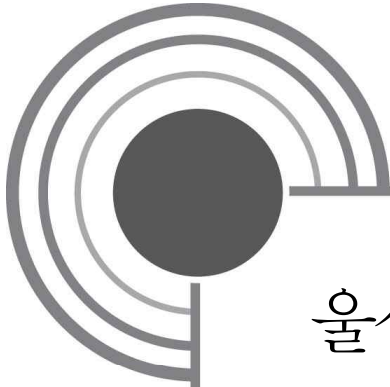
<울산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구분		면적 (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어업활동 보호구역 (10개소)	FH-520214-01	29.0	해양관광 (낚시어선 밀집구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 및 협동양식장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 밀집구역이 존재
	FH-520214-02	0.001	해양관광 (당사해양 낚시공원)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 및 협동양식장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당사해양낚시공원시설이 존재
	FH-520214-03	0.04	해양관광 (보밀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어촌뉴딜 300사업)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이 위치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보밀항 해양연안체험공원 조성 계획, 어촌뉴딜300사업 진행
	FH-520222-01	1.74	항만항행 (교통안 전특정해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맨손, 나잠)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FH-520222-02	0.49	항만항행 (교통안 전특정해역) 해양관광 (방어진항 어촌관광구역 지정 추진)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국가어항이 존재하며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방어진항 관광어항 육성 계획(어촌관광구역 지정 추진)
	FH-520222-03	0.41	항만항행 (교통안전 특정해역)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 및 복합양식(미역, 우렁챙이)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어촌뉴딜사업(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 예정지
	FH-520222-04	0.35	골재광물 (채굴권) 해양관광 (해수욕장구) 항만항행 (교통안전 특정해역)	①어업활동 ②골재광물 ③해양관광 ④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방어진-100217, 2016.04.02 ~ 2036. 04.01, 고령토) 설정지역 <input type="checkbox"/> 솔개해변(해수욕장구)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FH-520222-05	37.41	해양관광 (낚시어선 밀집구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 패류양식(전복, 소라 등), 복합양식(미역, 다시마)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 밀집구역이 존재

구분		면적 (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222-06	0.01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관광 (가두리 낚시체험장)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 패류양식(전복, 소라 등), 복합양식(미역, 다시마)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송정방파제 내항 가두리낚시 체험장 존재
	FH-520222-07	2.41	항만항행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양관광 (낚시어선 밀집구역)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미역 등), 패류양식(전복, 소라 등), 복합양식(미역, 다시마)이 위치하며 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 밀집구역이 존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2개소)	AG-520222-01	0.09	항만항행 (교통안전 특정해역) 어업활동 (조업활동)	①골재·광물 ②항만항행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217, 허가 기간 : 2016.04.02 ~ 2036.04.01.)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 <input type="checkbox"/> 조업활동이 활발한 구역
	AG-520222-02	0.05	해양관광 (해수욕장, 해수욕장구) 항만항행 (교통안전 특정해역)	①골재·광물 ②해양관광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217, 허가 기간 : 2016.04.02 ~ 2036.04.01.)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솔개해변(해수욕장구)·진하해수욕장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에 위치
해양관광 구역 (4개소)	TO-520214-01	0.06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신명정자해변(해수욕장구)이 존재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함
	TO-520214-02	0.09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강동몽돌해변(해수욕장구)이 존재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함
	TO-520214-03	0.06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주전몽돌해변(해수욕장구)이 존재하며 낚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함
	TO-520222-01	0.05	어업활동 (마을어장) 항만항행 (교통안전 특정해역)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일산해수욕장(지정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구)이 존재하며 낚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 내에 위치

구분		면적 (km <sup>2</sup> )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4개소)	EC-520214-01	1.09	어업활동 (종묘 채포어업) 항만항행 (무역항)	①환경·생태계 ②어업활동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태화강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연안해역기능구(해양생태계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종묘채포어업 허가를 받은 구역(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94호)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
	EC-520214-02	0.01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환경·생태계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울산시 기념물(강동 화암주상절리)과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
	EC-520214-03	0.001	어업활동 (마을어장)	①환경·생태계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울산시 기념물(곽암)과 연안해역기능구(경관보호구 및 해양문화자원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마을어장(전복 등)이 위치
	EC-520222-01	2.41	항만항행 (무역항, 교통안전 특정해역)	①환경·생태계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천연기념물 및 절대보전 무인도서(목도), 울산시 기념물(처용암), 연안해역기능구(해양문화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를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
항만·항행구역 (3개소)	SS-520222-01	7.38	어업활동 (조업활동) 해양관광 (낚시어선, 어촌뉴딜)	①항만·항행 ②어업활동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하여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조업활동이 활발한 구역 <input type="checkbox"/> 낚시어선 활동이 많고, 어촌뉴딜사업(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
	SS-520222-02	16.87	어업활동 (조업활동, 인공어초)	①항만·항행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하여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조업활동이 활발한 구역으로, 인공어초가 존재
	SS-520222-03	229.02	어업활동 (조업활동)	①항만·항행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위치하여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조업활동이 활발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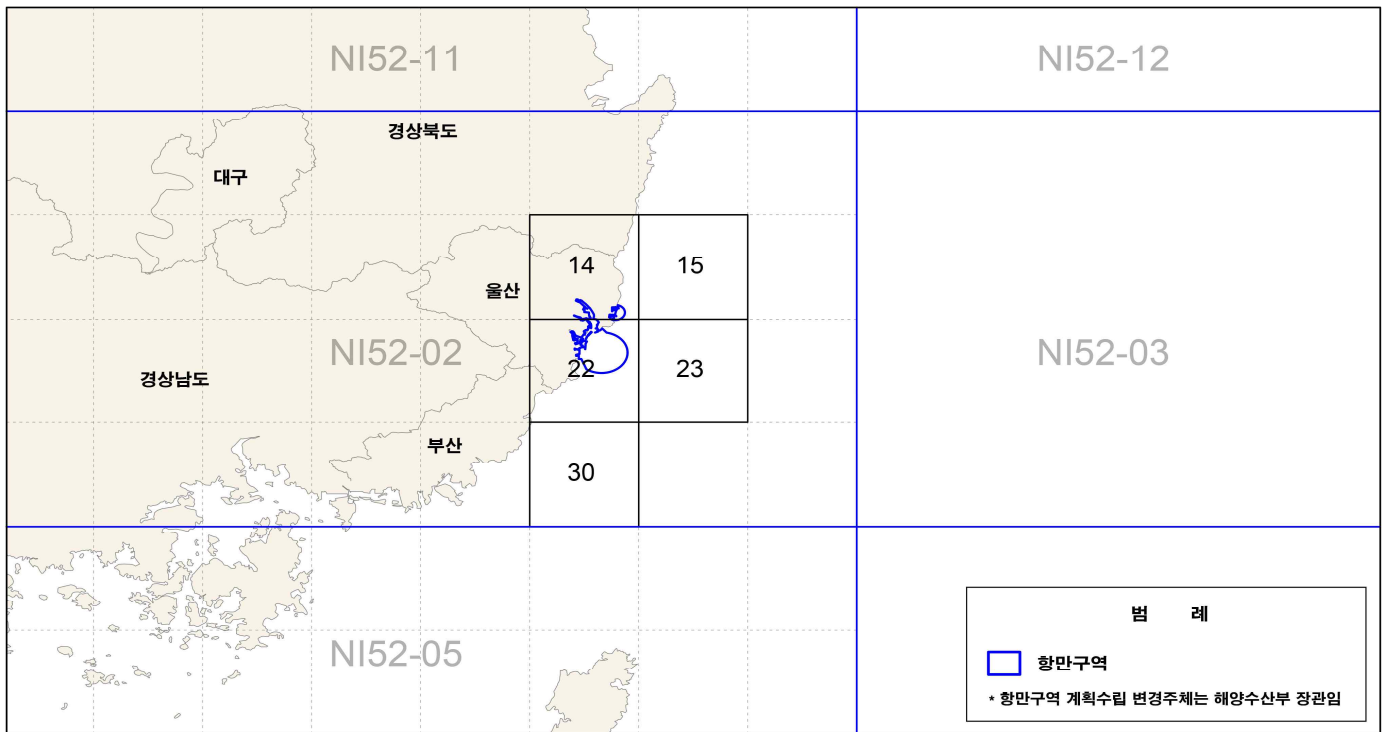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도





# 울산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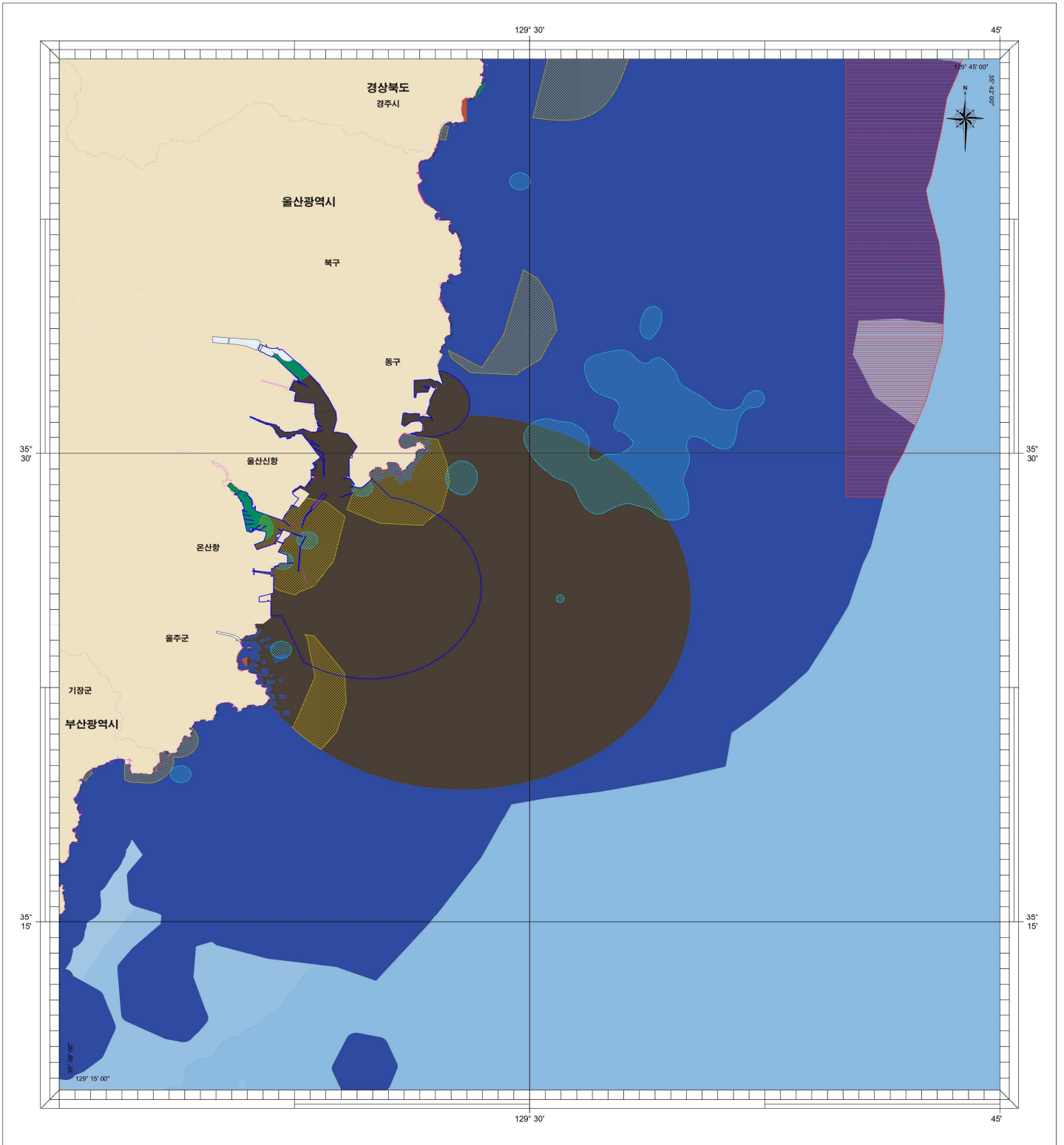


## ※ 해양공간관리계획 관련 참고사항

1. 본 도면은 해양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최신 자료 및 상세한 정보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http://www.ms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총괄도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항만·항행구역
	공재·관광지원개발구역		군사활동구역
	해양관광구역		안전관리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방만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전차제도해안선
			지역장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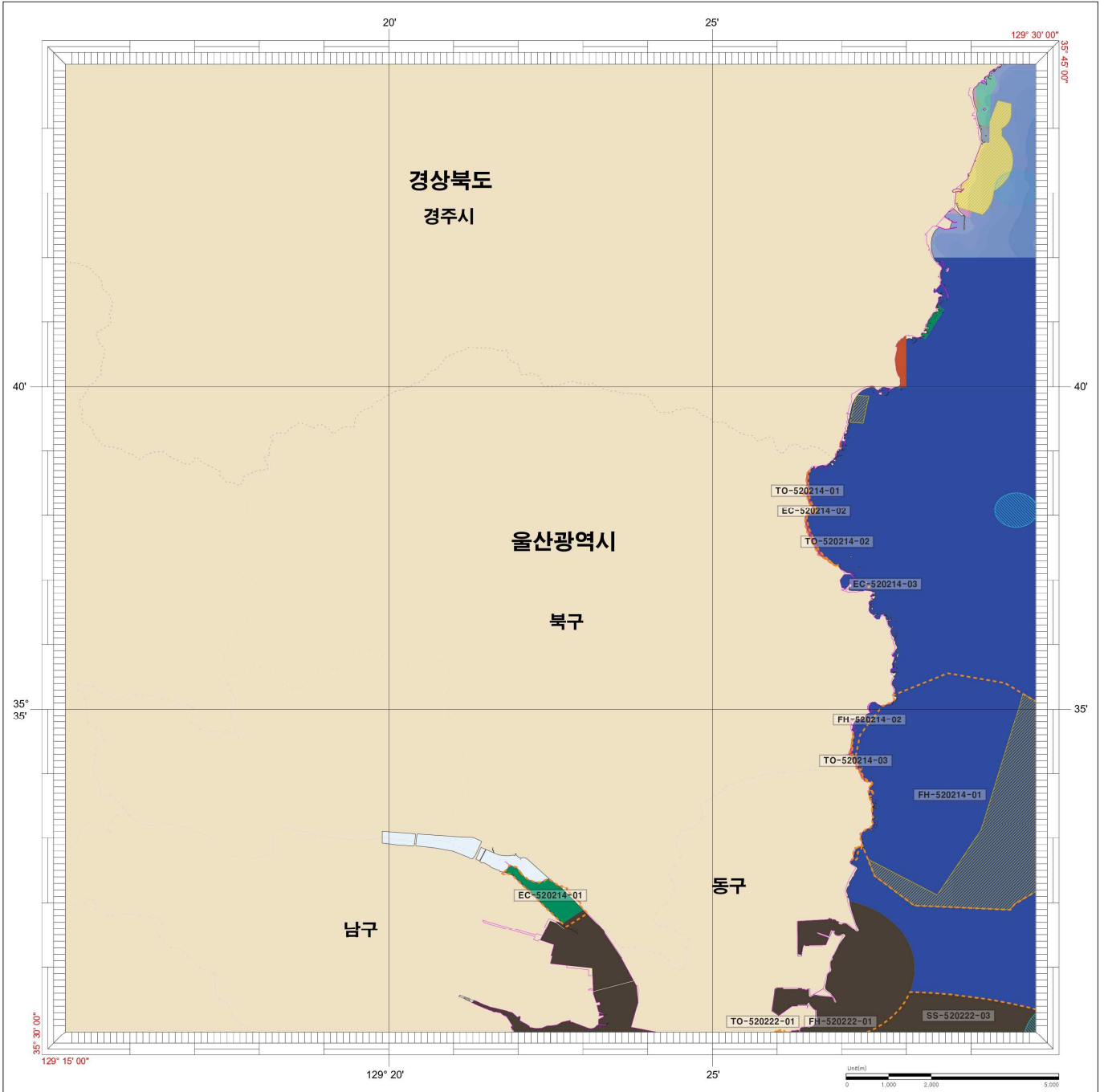
※ 해양공간관리계획 관련 참고사항

- 본 도면은 해양활동지역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양활동지역에 관한 최신 자료 및 상세한 정보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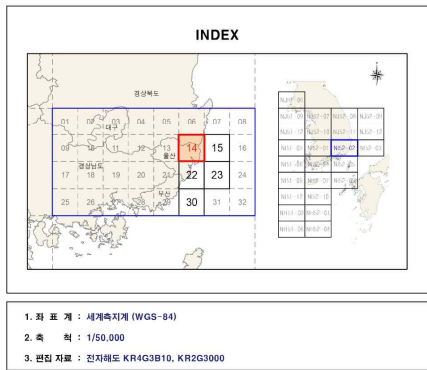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아염동초구역
	광해·양분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해안선
	지적경계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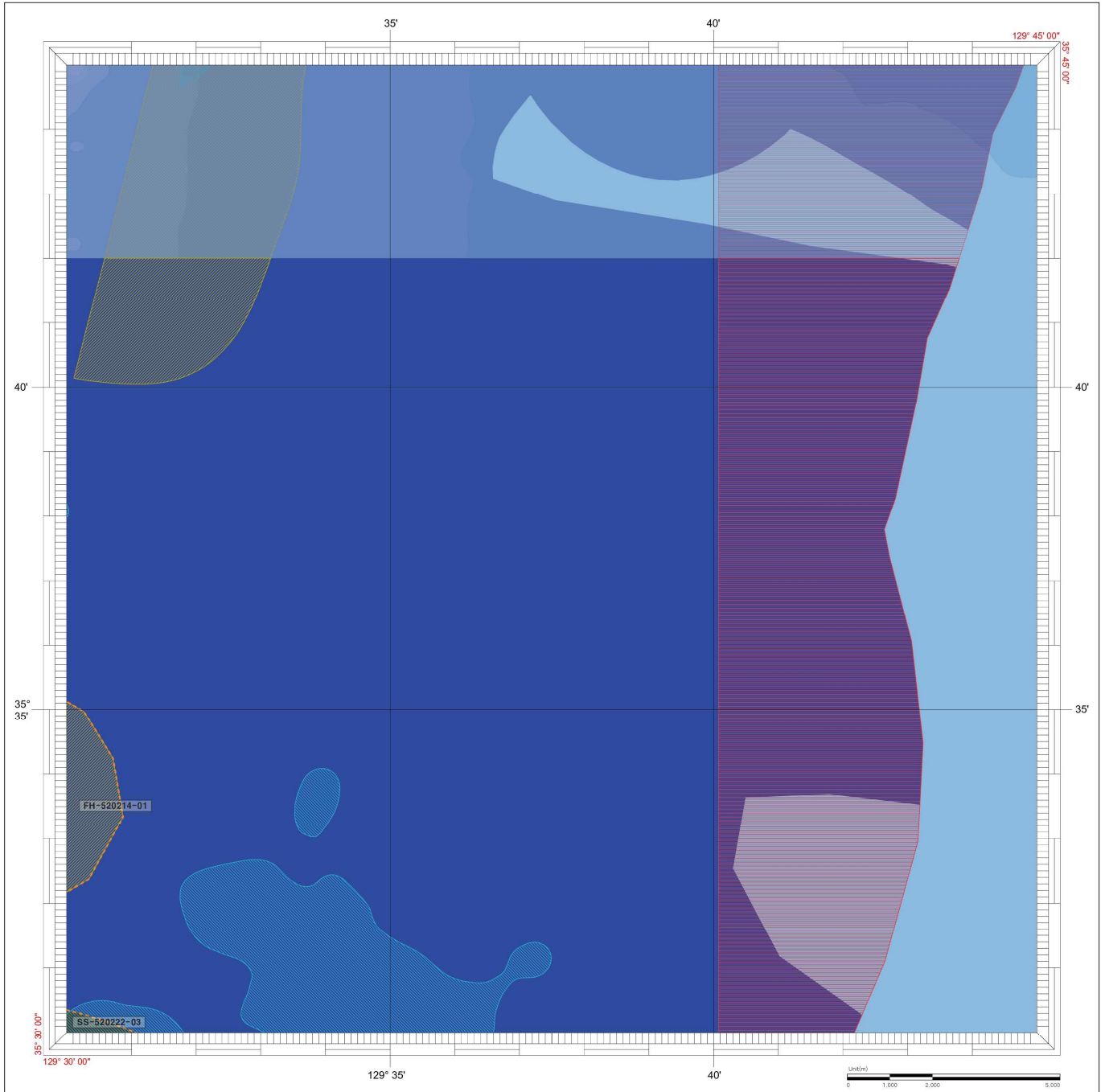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중형용도	관리의 목적	상세 설명	비고
아염동초구역	TH-520214-01	29,000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염동초구역	TH-520214-02	0.001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염동초구역	TH-520214-03	0.01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염동초구역	FH-520222-01	1.74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만·항행구역	SS-520222-03	299,637	항만·항행	항만·항행	항만·항행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관광구역	TO-520214-01	0.06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관광구역	TO-520214-02	0.09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관광구역	TO-520214-03	0.06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관광구역	TO-520222-01	0.05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항만·항행구역	SS-520222-03	1.09	항만·항행	항만·항행	항만·항행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관광구역	EC-520214-02	0.01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관광구역	EC-520214-03	0.001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수출한 해안선과 경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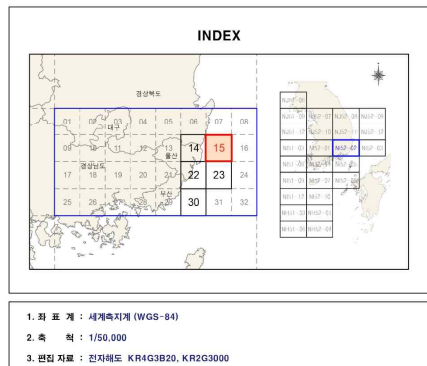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관광·관광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해안선
	지적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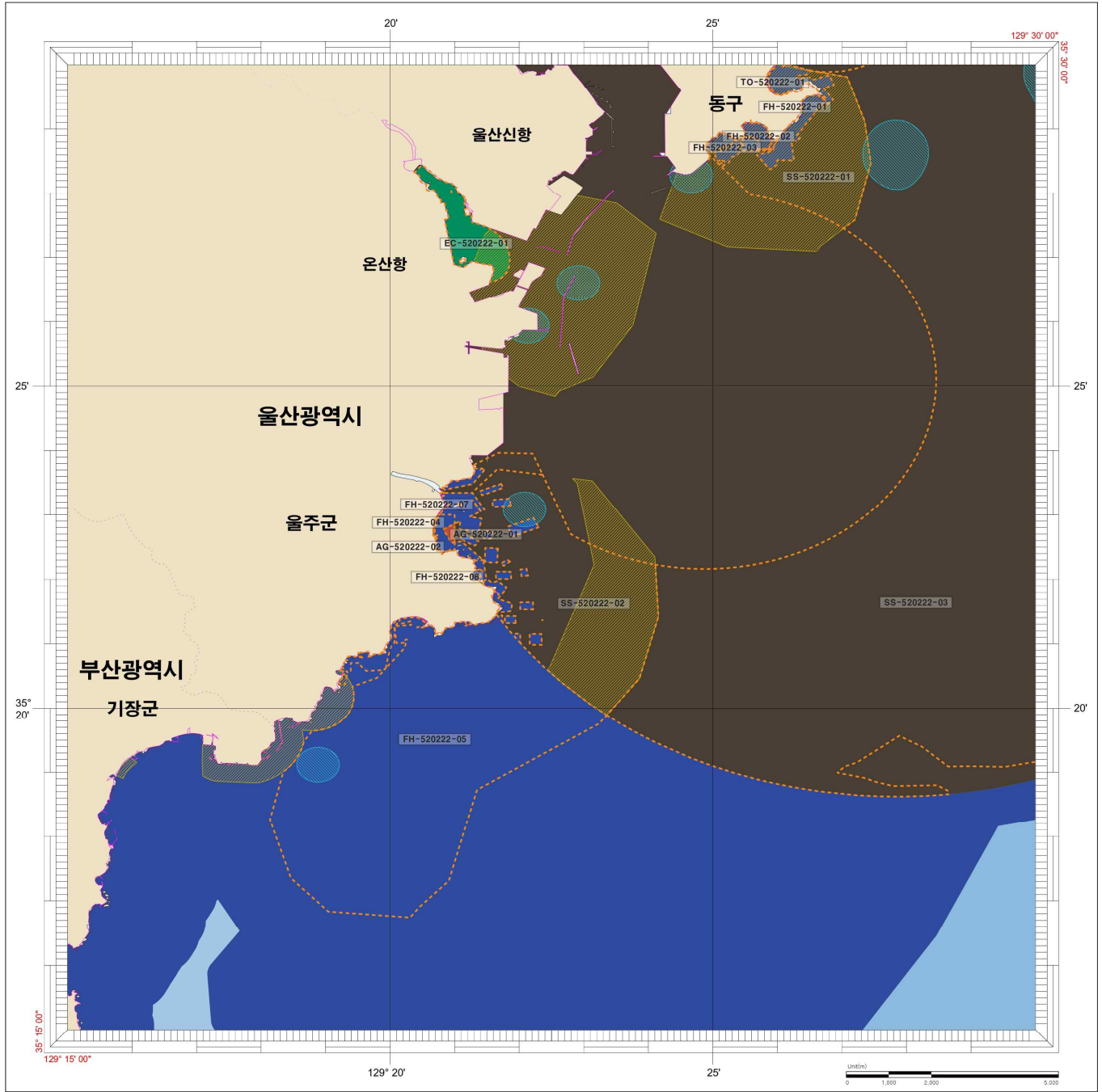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형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비고
어업활동보조구역	FH-520214-01	29.00	어업활동 수역관리용	1	어업활동(선박 등)과 관광영양업이 위치하며, 어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조구역으로 지정	
항만·항행구역	SS-520222-03	229.69	항만활동 항만활동용	2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항만활동용 구역으로 지정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생겼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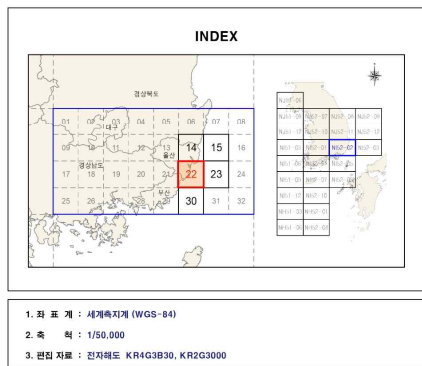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 범례

	어항용도구역
	관광·관광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지적경계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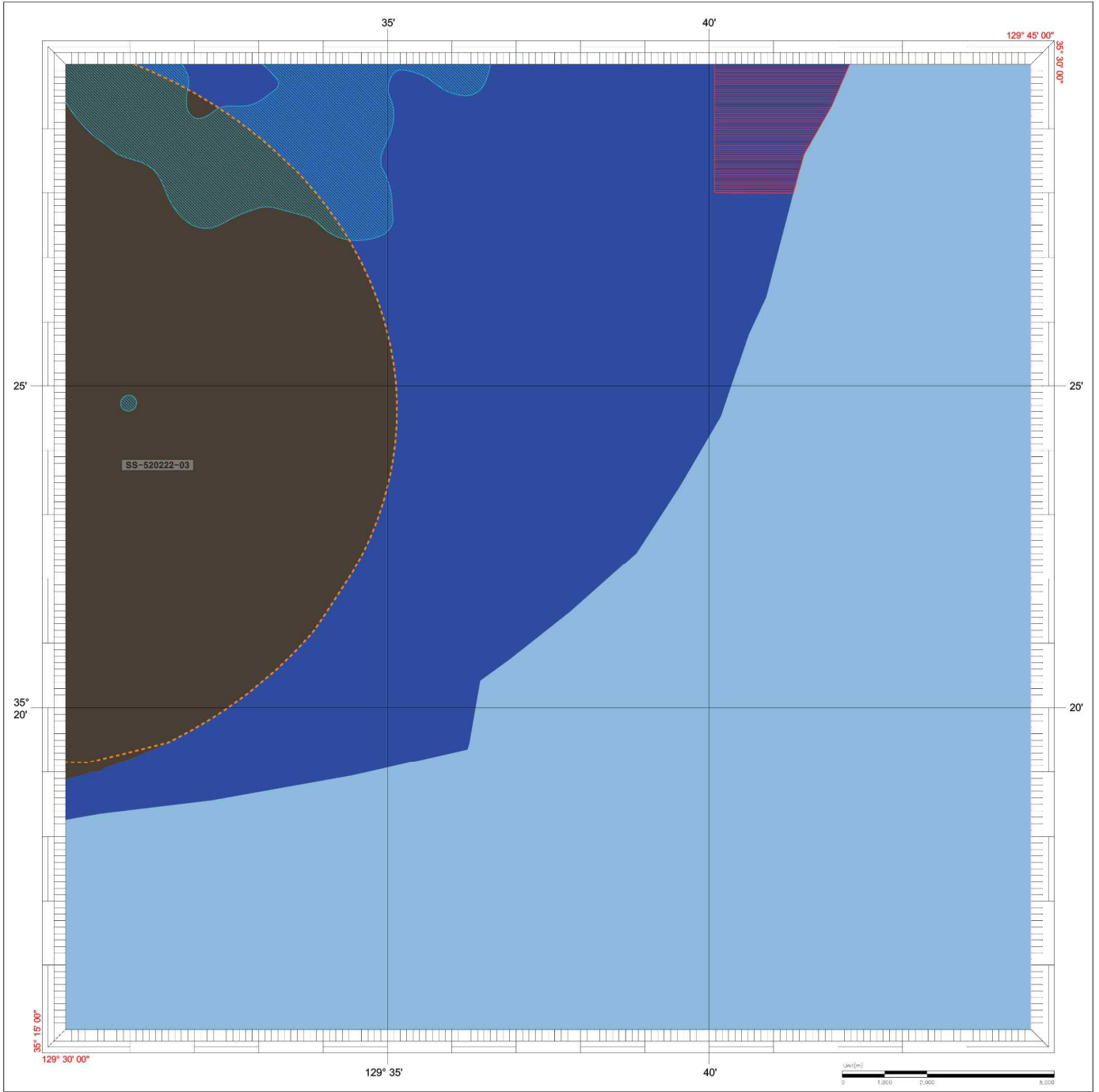
###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구역	면적(㎡)	종류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비고
공해·오염방지구역	AS-100222-01	6,038	오염방지	1	1. 1차원, 2차원, 3차원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한다. 2. 유해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한다.	
	AS-100222-02	6,038	오염방지	1	1. 1차원, 2차원, 3차원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한다. 2. 유해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한다.	
어항용도구역	FA-100222-01	1,744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FA-100222-02	1,744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어항용도구역	FA-100222-03	6,411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FA-100222-04	9,306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어항용도구역	FA-100222-05	39,443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FA-100222-06	6,231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어항용도구역	FA-100222-07	2,443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FA-100222-08	7,336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항만·항행구역	HA-100222-01	16,884	항만	1	항만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환경을 개선한다.	
	HA-100222-02	229,882	항만	1	항만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항만 환경을 개선한다.	
어항용도구역	FA-100222-09	6,231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FA-100222-10	2,443	어항	1	어항의 기능을充分发挥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항 시설을 확충하고 어항 환경을 개선한다.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당에서 수출한 예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예안선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관제도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예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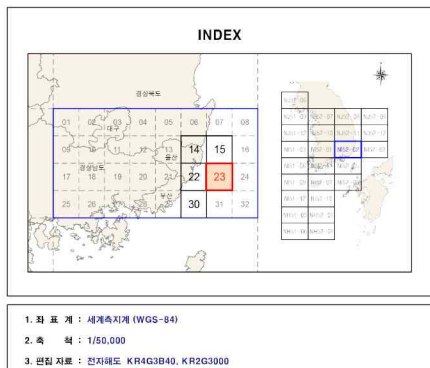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호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생태계관리구역
	인구·교육보전구역
	항만·공업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해안선
	지적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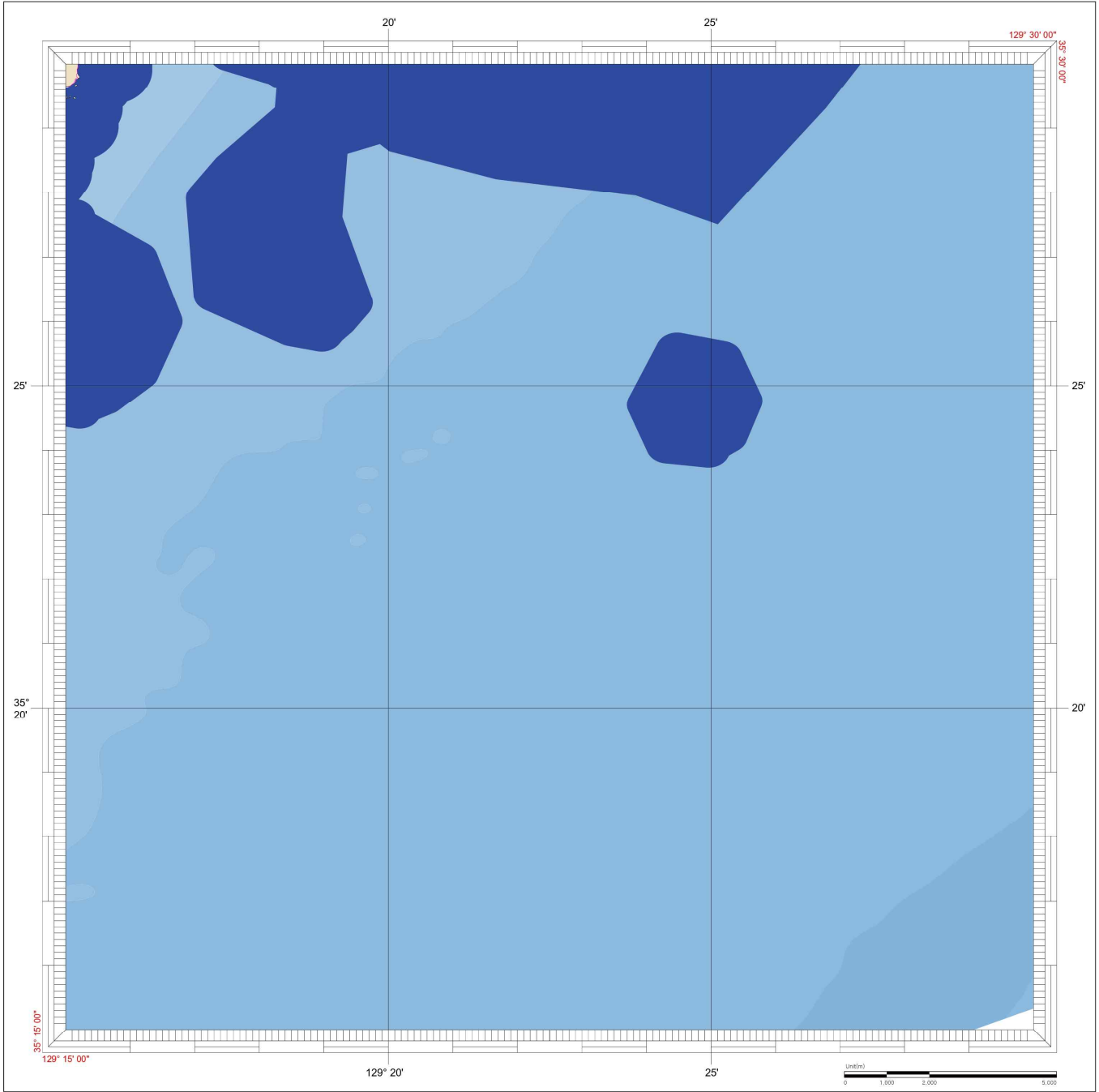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	우선순위	상세설명	비고
항만·관광구역	SS-520222-03	299,821	우선순위가 낮은 구역 (소요면적)	이 관리구역	1	국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우선순위가 낮은 구역 (소요면적)	이 관리구역	2	국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우선순위가 낮은 구역 (소요면적)	이 관리구역	3	국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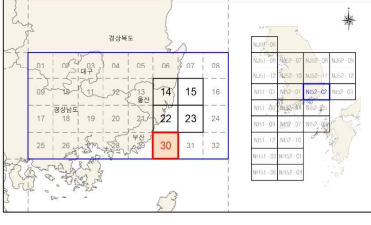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  어업활동보호구역
-  공재·공용저항계급구역
-  해양관광구역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연구·교육보전구역
-  항만·항행구역
-  군사활동구역
-  안전관리구역
-  전지제도해안선
-  지역경계
-  관리구역

**INDEX**



1. 좌 표 계 : 세계측지계 (WGS-84)
2. 축 척 : 1/50,000
3. 편입 자료 : 전지제도 KR2G3000, KR4G3B30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횡등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비고

※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